KINU 연구총서 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 이금순 · 김국신 · 홍 민

KINU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 수 암·이 금 순·김 국 신·홍 민

KINU 통일연구원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ISBN 978-89-8479-666-9 93340

가 격 ₩11,00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 ix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3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9

Ⅱ.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 13
1. 부패의 개념·유형과 동기 ····· 15
2.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논의 ····· 30
3. 부패와 분석 대상 북한주민의 권리 ····· 44

Ⅲ. 북한부패의 요인 ····· 49
1. 경제시스템과 부패 ····· 51
2. 시장과 부패 ····· 63
3. 비사회주의 행위 통제와 부패: 법률적 근거 ····· 73

Ⅳ.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부패 실태 ····· 89
1. 부패와 법 앞에 평등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91
2. 부패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 ····· 102
3. 부패와 이동 및 거주이전의 권리 ····· 109
4. 부패와 비차별권 ····· 123

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부패 실태 ····· 127
1. 부패와 근로권 ····· 129
2. 부패와 식량권 ····· 140
3. 부패와 교육권 ····· 154
4. 부패와 건강권 ····· 166

Ⅵ.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평가 ····· 187
1.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효과 ····· 189
2. 뇌물에 대한 인식과 인권인식과의 상관성 평가 ····· 196

Ⅶ. 결론 ····· 201

참고문헌 ····· 2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15

표 목 차

<표 Ⅰ-1> 심층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 10
<표 Ⅱ-1> 이익의 영역 ····· 27
<표 Ⅱ-2>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을 검토하는 과정 ····· 35
<표 Ⅱ-3>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상의 권리 ····· 45
<표 Ⅱ-4>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상의 권리 ····· 47
<표 Ⅲ-1>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 분류 ····· 76
<표 Ⅲ-2>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침해한 범죄 ····· 77
<표 Ⅲ-3>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77
<표 Ⅲ-4>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78
<표 Ⅲ-5>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78
<표 Ⅲ-6> 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단속대상 ····· 78
<표 Ⅲ-7> 이동권 관련 처벌 근거조항 ····· 80
<표 Ⅲ-8> 거주이전자유권 관련 처벌 근거조항 ····· 80
<표 Ⅲ-9> 외부 녹화물 관련 처벌조항 ····· 81
<표 Ⅲ-10> 휴대전화 관련 단속조항 ····· 82
<표 Ⅲ-11> 장사단속 관련 조항 ····· 82
<표 Ⅲ-12> 부패 관련 처벌조항 ····· 84
<표 Ⅳ-1> 휴대전화 단속관련 뇌물사례 ····· 104
<표 Ⅳ-2> 휴대전화 사용관련 처벌 실태 ····· 106
<표 Ⅳ-3> 외부영상물 시청 및 유통 관련 처벌 실태 ····· 108
<표 Ⅳ-4> 여행증 발급관련 뇌물 실태 ····· 112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부패, 국가의무와 인권과의 상관관계 ····· 38
<그림 Ⅱ-2> 부패, 거버넌스와 인권과의 상관관계 ····· 40

요 약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고위층 엘리트로부터 중하위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 부를 축적하려는 부패행위가 북한사회 내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패는 다층적으로 북한주민의 생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부패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부패와 북한주민의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에서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을 주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부패와 인권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에 만연해 있는 부패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패행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을 존중할 3가지 차원의 국가의무, 직접적 인과관계·간접적 인과관계·원격적 인과관계 등 3가지 차원의 부패와 인권과의 인과관계, 부패와 거버넌스와의 상관관계 등 부패행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

둘째, 경제난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작동변화와 시장 확산이 부패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비사회주의 일탈행위와 통제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부패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대별하되, 주요 대상권리를 설정하고 북한부패 실태와 세부 권리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내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부패는 1차적으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를 통하여 사적이익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이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도 '부패 → 부절적한 거버넌스 → 인권에 대한 부정적 효과 → 부패 현상 심화'라는 3각의 악순환 관계가 구조화되고 있다. 부패가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고착화시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북한당국의 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원칙이 북한주민에게 적용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는 2가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부패는 '엘리트와 일반주민 사이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2차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부패는 '일반주민들 사이의 차별'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부패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뇌물을 공여할 수 있는 능력 여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권리차원에서 차별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행위 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부패는 가용성, 접근성, 질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북한주민들의 사회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직권 남용, 특히 횡령행위는 일반주민들의 사회권 신장에 배정되어야 할 재원의 가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횡령 등 부패행위로 인한 가용성 저하는 교육권, 식량권, 건강권의 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접근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가용성과 경제적 접근성의 저하는 전반적으로 일반주민의 사회권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취약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의 사회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저해하고 있다.

부패와 인권침해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직접적 침해, 간접적 침해, 원격적 침해라는 부패와 인권침해의 3가지 인과관계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하나의 부패행위가 연쇄적으로 다른 인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는 우선적으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부패의 동기, 통제기제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 억압이라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민들은 사회 단속이 강화되어 중간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비차별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동의 자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통제를 완화시키는 간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동통제 완화는 비공식 유통경제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식량권에도 일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가 비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뇌물수수'라는 부패행위를 통해 사적이익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의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뇌물수수라는 부패행위는 그 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식량권의 가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는 일부 구성원들의 식량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동의 자유와 처벌의 면제는 자유권에 대한 통제를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서 볼 때 부패는 분명히 일반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 복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불균형적 복합형태'라는 것은 부패가 부정적·긍정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상황을 의미한다.

부패행위가 일정 정도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적 속성에 따라 긍정적 영향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체제 구축과정에서 사회와 주민에 대한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통제에 따른 영향을 무력화시키거나 완화시키려는 비용(뇌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기적으로 부패가 북한사회의 '자발적인 자유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사회권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부패행위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연관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은 부패에 대해 부정적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뇌물을 공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실상황과 연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 조사과정에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뇌물에 대해 일상적인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뇌물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업과 같은 행위로 북한주민에게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뇌물을 통해 자기만 편하게 생활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심화되어도 인권인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부패로 인해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저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 확산 →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 → 인권인식의 형성에 대한 긍정적 기여'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패와 인권을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해나가야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북인권정책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부패가 개혁·개방과 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각종 관행과 제도를 시정해나가도록 촉구해나가야 한다.

주제어: 부패, 인권, 반부패협약, 국가의무

Abstract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Am et al.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from high ranking elites to mid-to-low ranking elites, corruptive behaviors deriving private benefits through abnormal activities and amassing personal wealth are prevalent within North Korean society. Corruption is widespread in North Korea and is a factor that affects the livelihood and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on multiple layers. Research on North Korea's corruption hitherto has been conducted to a certain extent. However, specialized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North Korea's corruption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done marginally. After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as adopted on October 31, 2003 in UN, international society began to take notice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society asserts in particular that we make comprehensive approaches linking corruption and human rights. We will take a look at the reality of widespread corruption in North Korea and analyze its influ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international debates on the three dimensions of na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the three dimensions of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governance.

Second, we study the operational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resulted from the economic crisis and the expansion of markets in order to examine primary factors that influence corruption. Also, we analyze the chief causes of corruption within the correlation between anti-socialist deviant behaviors and regulations.

Third, we classify the rights broadly in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xt, we set up the main target right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lity of corruption in North Korea and the target rights.

Key Words: Corruption, Human Right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State Responsibility

Ⅰ. 서론

1. 연구목적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배급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일반주민에 대한 배급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일부 기업소를 통한 배급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하위 엘리트들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배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배급체계를 통해 일반주민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난의 행군을 거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는 계획경제가 기형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시장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불법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인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고위층 엘리트로부터 중하위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 부를 축적하려는 부패행위가 북한사회 내에 만연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경제가 파탄 상태로 악화되면서 중앙·지방·하부단위에서 부패현상이 거의 일상화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이러한 북한 내 심각한 부패상황은 국제사회의 평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라는 척도를 통해 전세계의 부패상황을 평가하여 왔다. 북한은 그동안 부패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수집 등의 사유로 '부패인식지수' 산정 대상국가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런데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는 처음으로 북한을 대상에 포함시켜 부패상황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2011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전체 183개국 가운데 소말리아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받았다. 소말리아에 이어 182위로 평가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분류되었다.[1]

[1]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1, 국제투명성기구

북한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은 금년 8월 장성택의 중국 방문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에게 5가지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특히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에 대한 공동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이 북한에서 겪는 실질적 애로사항이 분명하게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그러한 5가지 애로사항 중 하나로 '상관지구 간의 연계와 협조 강화'를 들었다. 여기서 '상관지구'란 '북한과 중국의 지방정부'를 지칭한다. 원 총리는 북한 지방정부 관리들로부터 각종 급행비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중국기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북한 지방정부 관리들의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음성적 방법으로 중국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되어야 양국 지방정부 간에 합의한 대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

북한 내 부패수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채원호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북한관료들의 부패는 일상적·관행적이었다. 부패의 일상화와 관련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5.1%였다. 북한의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뇌물이나 접대를 제공받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95%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3]

<www. transparency.org> (검색일: 2012.8.27).

2- 『조선일보』, 2012년 8월 20일.

3- 채원호 외,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2006).

이렇게 북한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패는 다층적으로 북한주민의 생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장마당 등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하부단위에서의 부패현상은 북한주민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러한 부패현상이 사회변화와 구조적 연관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에서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을 주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와 국제투명성기구는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패와 인권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4]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의 부패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지만 부패현상이 북한주민의 삶, 특히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의 부패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부패와 북한주민의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의 부패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4- 대표적인 업적으로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2009);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Integrating Human Rights in Anti-Corruption Agenda: Challenges,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2010); Martine Boersma,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ntwerp; Portland, OR: Intersentia, 2010) 등을 참조.

Rights Practices for 2011)를 들 수 있다. 동 보고서의 북한 관련 보고서 중 'Section 4'(공적 부패와 정부 투명성, Official Corruption and Government Transparency)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북한의 부패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 미 국무부는 부패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법률상 공직 부패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지, 북한당국이 그러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얼마나 자주 처벌을 받지 않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부문에서 부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보안일꾼의 부패가 만연해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군부로의 식량전용과 뇌물이 정부와 보안일꾼 내 부패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도 2009년부터 『북한인권백서』에서 '부패와 인권'이라는 독립적인 소절을 새롭게 설정하고 부패와 인권을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부패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에 만연해 있는 부패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패행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구체적으로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이다. 둘째, 인권이 반부패활동에 미치는 예방효과의 측면이다. 현재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본 과제에서는 후자의 측면보다는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부패현상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패개념과 부패유형,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동기 등 부패 일반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2003년 유엔에서 반부패협약이 제정되었지만 부패에 대한 합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협약에서는 부패행위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 장에서는 부패개념과 부패행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패와 인권을 통합된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을 존중할 3가지 차원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바, 부패가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부패와 인권과의 3가지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부패와 북한인권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평등, 비차별 등 기본적인 인권원칙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원칙의 관점으로 부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규정된 구체적 권리별로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각 권리에 대해서는 조약에 기반한 유엔 기구(Treaty-based Bodie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 내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사실상 계획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경제난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작동변화와 시장 확산이 부패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

하여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 시기 부패현상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북한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부패 실상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앙차원, 지방차원, 하층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패 실상과 특성을 분석하되, 장마당 등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하부단위에서의 부패현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면서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이러한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일탈행위를 단속하는 중하위 통제엘리트들도 생계와 축재를 위해 단속권을 활용하여 부패행위에 개입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비사회주의 일탈행위와 통제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부패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 제5장에서는 북한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대별하되, 주요 대상권리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북한사회의 현실을 볼 때 어떠한 유형의 부패행위가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유형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권리별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국제인권조약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발표하는 일반논평을 참조하기로 한다. 다만, 부패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한 분석 및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과제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국한하여 부패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3가지 인과관계, 국가의무와 거버넌스 등을 적용하여

부패와 북한인권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뇌물에 대한 인식 및 부패행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고 북한에 이러한 논의를 적용할 때의 적실성을 검토하고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와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사례를 위한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 등 부패와 인권을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부패행위 및 유형과 관련하여 유엔 반부패협약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 내 부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17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금년도에도 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조사를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부패에 대해 일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Ⅰ-1>과 같다.[5]

5- 심층인터뷰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사례 No.) 방식으로 인용한다. 그리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북한인권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등록번호 (예: NKHR201200069) 형태의 각주 방식으로 인용한다.

표 I-1 심층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사례 No.	성별	나이	탈북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북한에서 학력	면접일 2012년
1	여	40대	2002	함경북도 새별군	약사	대졸	5.4
2	남	30대	2005	평양	지배인	대졸	5.10
3	남	50대	2007	황해남도 해주	보안원	대졸	5.16
4	남	30대	2008	황해남도 남포	지배인	대졸	5.17
5	남	40대	2005	자강도 중강군	세관원	대졸	5.17
6	남	50대	2004	평양	외화벌이 일꾼	대졸	5.30
7	남	30대	2010	양강도 혜산	지배인	대졸	6.20
8	여	20대	2010	평양	의사	의대졸	6.22
9	남	30대	2007	평양	연구원	대졸	7.3
10	남	20대	2011	함북 온성군	교원	대졸	7.11
11	남	50대	2007	함경북도 새별군	보안원	고등중학교 졸	7.11
12	여	60대	1998	함경북도 무산군	관리원	대학 중퇴	7.13
13	여	50대	2003	함북 회령시	교환수	고등중학교 졸	7.17
14	여	40대	2009	강원도 평강군	군인	고등중학교 졸	7.19
15	여	60대	2006	함북 나진시	장사	전문학교 졸	7.24
16	여	40대	2006	함북 회령시	노동자	고등중학교 졸	8.1
17	여	40대	2002	함북 온성군	급양관리소 경리	전문학교 졸	8.1

셋째, 2010년 이후 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 실시한 북한인권 관련 조사를 위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북한주민들은 각종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단속과 이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뇌물을 제공하고 처벌을 면제받았거나 처벌 강도가 낮아진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북한 내 부패의 요인을 분석하고, 통제엘리트의 부패개입 가능성과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부패를 촉발할 수 있는 북한 내 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북한소설, 강연자료 등 북한 원전에서 부패 관련 행위를 언급한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여섯째, 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 등 유엔 문건, 국제투명성기구 등 관련 기구의 자료, 언론 보도와 북한 관련 소식지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Ⅱ.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부패의 개념·유형과 동기

부패는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에서 "본래의 순수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써 두루 사용되고 있다.[6] 자연현상에서는 어떤 물건이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된 상태, 인간 사회현상에서는 인간이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였거나 법규·제도가 문란한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하여온 부패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관점을 달리 해왔고, 평가 기준 역시 개별국가들의 사회·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해 차별성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부패는 정치·행정학자들의 학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개념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강조하는 초점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1960년대 냉전 시기 서방 학자들은 대체로 부패를 민족국가의 내부문제로 설정하였고 정치발전·행정발전·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부패개념을 규정하였다. 즉, 부패가 특정한 국가 내부에서 경제성장, 행정효율성 및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한편,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비정부기구의 역할 강화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계층적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전통적 행정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기업·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동 협력하면서 국가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틀로서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6-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9), p. 13.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부패문제를 전세계적인 인류공통의 문제로 인식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가. 부패의 개념

부패란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국가의 법 또는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부정·비리·권력남용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적이익(private gain)을 추구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뢰(trust)의 남용이나 위반의 개념에 초점을 두는 정의도 존재한다.[7] 이와 같이 부패개념은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다양한 부패개념에 대해 하이덴하이머(Arnold J. Heidenheimer)의 분류를 원용하고자 한다. 하이덴하이머는 다양한 부패개념에 대해 공직중심·시장중심·공익중심 3가지로 부패개념을 분류하여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8]

첫째, 공직중심으로 부패를 정의(Public-Office-Centered Definitions)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부패는 공직자가 규범에서 일탈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7- Martine Boersma,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ntwerp; Portland, OR: Intersentia, 2010), p. 8;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0~11.

8- Arnold J. Heidenheimer, "Terms, Concepts, and Definitions: An Introduction," Arnold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New Brunswick, NJ: Transactions Books, 1993) pp. 3~14; 전수일, 『관료부패론』, pp. 14~23 참조.

공직자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특수한 공적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뢰 등 사적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를 부패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나이(J. S. Nye)는 부패를 가족·친지들에 대한 관심 또는 금전 및 신분상 이득을 위하여 공적 역할의 규범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행위, 뇌물, 연고자 등용, 공금횡령 등을 통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9] '직무와의 연계성', '사적인 이익추구', '위법성' 등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부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중심의 정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10] 그런데 공직중심 개념에 주목하여 협의로 부패를 규정할 경우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 행하여지는 많은 비리들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시장중심으로 부패를 정의(Market-Centered Definitions)하는 시각이다. 이는 공직자들을 관리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명백하게 표명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에서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로 부패를 설명하는 시각이다. 크레베런(Jacob van Klaveren)은 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대한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할 경우 부패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소득을 추구할 경우 공직자의 소득의 크기는 공공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소득은 시장에서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대중의 수요곡선 상에서 자신의 소득이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내는

9- Joseph S. Nye,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XI, 2 (June 1967), pp. 417~427에서 발표된 내용을 편집한 Arnold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p. 966.

10- 박중훈·최유성,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9) pp. 10~11 참조.

그의 재능에 의해 결정된다.[11]

이는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원용하여 부패를 설명하는 입장과 연결된다. 즉, 통제기제가 없는 경우 합리적 행위자인 공직자는 시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지대추구 행위를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행위를 부패로 규정하는 시각이다.[12] 지대추구 행위란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점적인 지위의 확보행위로서 수입량 제한, 보호관세, 뇌물, 공갈과 은폐 등의 합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포괄한다. 또한 로비나 뇌물의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억제에 따른 이전소득, 보조금, 이권, 특혜 등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3] 이와 같이 부패는 지대를 추구하는 데서 하나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 관료는 국가정책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진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지대가 창출되고 특정한 집단에 분배된다. 그런데 관료는 지대를 창조하고 분배하는 데서 일정한 자의성을 개입시킬 여지가 있으며 자의성을 오용할 때 부패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14]

셋째, 공익중심으로 부패를 정의(Public-Interest-Centered Definitions)하는 시각이다. 이는 공직중심 정의가 너무 협소하게 부패를 규정하는 반면, 시장중심 정의는 부패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개념이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부패를 정의하는 데

11- Jacob van Klaveren, "The Concept of Corruption," in Arnold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p. 26.

12- 박중훈 외,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6), p. 4 참조.

13- 사공영호,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2010.12), pp. 6~8.

14-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pp. 14~24.

공공이익을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리드리히(Carl Friedrich)는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인 또는 가족·친지들을 위하여 금전, 급속한 승진, 지위, 사치 등의 사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이익을 손상하는 모든 행위를 부패로 규정한다.[15] 공익중심의 정의에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부도덕한 행위도 부패의 한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시각의 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 중 본 과제에서는 주로 공직중심 시각으로 북한의 부패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은 장마당 등 시장활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중심 시각은 상대적으로 적실성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공익중심 개념도 후술하듯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현상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공직중심 시각도 북한 내 부패의 경우 사적이익과 조직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이 혼재한다는 점에서 북한부패현상을 설명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으나 후술하듯이 가장 근접한 시각이라고 본다.

나. 부패행위의 유형

부패행위는 규모와 수준, 부패행위의 주체에 따라 대규모 부패와 소규모 부패, 정치부패와 행정부패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통치차원에서 부패가 작동하는 수준 및 범위에 따라 대규모 부패와 소규모 부패로 구분할 수 있다. 대규모 부패는 법에 의한 통치가 근본적으로 부정

15- Carl J. Friedrich, *The Pathology of Politics: Violence, Betrayed, Corruption, Secrecy and Propaganda* (New York: Harper & Row, 1972), pp. 127~141에서 발표된 내용을 편집한 Arnold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p. 15.

되고 있는 군부 권위주의정권, 일당독재하의 전체주의국가 또는 체제 전환의 과도기에 처해있는 국가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최고위층 정치인과 정부의 관리들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법·규범을 공정하게 제정·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기득권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왜곡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대규모 부패가 만연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광범위하게 자행된다.

한편, 소규모 부패는 주로 국가기구가 견제와 균형에 의한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에서 발생한다. 정부 고위층이 비교적 책임행정 및 투명성을 추구하는 반면, 일부 중하위 관료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지칭한다.[16] 북한의 경우 규모와 수준 모두 전방위적으로 부패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규모와 수준이라는 구분은 북한의 경우 무의미하다. 다만 규모와 수준은 북한주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규모 부패의 경우 자원의 왜곡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사회권 전반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규모 부패의 경우 일반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므로 자유권, 사회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후술하듯이 주로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소규모 부패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정부부패(government corruption)는 부패를 범하는 행위자에 주목하여 정치부패와 행정부패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부패(political corruption)[17]와 행정부패(administrative corruption)는 정부부패의

16-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Governance, Corruption, and Conflict* (A Study Guide Series on Peace and Conflict, 2010).

17- Wikipedia, Political Corruption,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al_corruption>

양 측면으로서 흔히 3가지 용어가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정부부패의 주도적인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관료로 인식되고 있지만 때로는 기업인과 민간단체들이 강력한 주도세력이 되어 이들의 부패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부패는 선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정권을 교체해 가는 다원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주로 선거와 입법 활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패를 의미한다. 선거과정에서 금전 살포 또는 정치인과 기업인 사이의 부적절한 정치자금 거래가 정치부패의 전형적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정부의 공직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전거래도 흔히 정치부패의 사례로 논의되고 있다. 입법 활동과 관련된 정치부패는 의회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의원들이 일부 지역이나 기업에 유리하도록 편향적인 투표를 할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특히 기업이 정치인이나 정부 관리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규를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는 경우 이러한 부패를 지칭하기도 한다.[18] 행정부패는 정책집행 측면과 연관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 관리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경우 이를 흔히 행정부패라고 부른다. 즉, 행정적 형식주의(red tape)를 이용하여 영업자격 획득, 면회 취득, 세금 확정, 세관 통과 등과 관련된 업무에서 뇌물을 받는 행위를 지칭할 경우가 많다.[19]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

(검색일: 2012.7.12).

18- World Bank,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A Contribution to the Policy Debat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0) pp. 1~4.

19- 행정적 형식주의는 행정 절차가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요구되므로 문서에 의한 서면주의, 다인장주의, 획일주의적 관료병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종, 『부패학-원인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pp. 219~220 참조.

치인과 국가 관료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구별되어 정당 및 선거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차원의 부패와 국가기관의 행정절차와 관련된 행정적 차원의 부패를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 자체가 관료화되어 있고 당 관료들이 국가기구의 고위 관료직을 겸직하여 행정관료들도 정치화되어 있어 정치인과 관료의 구분이 무의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일인지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정치부패보다는 행정부패, 특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절차 집행과정의 부패행위가 부패현상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가? 부패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패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3년 10월 3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반부패협약을 중심으로 부패행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물론 유엔 반부패협약에서도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유형화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조문상으로 부패행위를 적시하고, 이러한 부패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반부패협약에 명시된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물수수(bribery, 제15조, 제16조) 행위이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무원, 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부패행위이다. 급행료(speed money), 증회(贈賄, grease payments), 불법적 리베이트(kickbacks), 사례금(baksheesh), 스위트너(sweetners), 매수(pay-offs)로 알려진 뇌물은 두 당사자를 포함하는 부패형태이다. 이에 따라 뇌물은 적극적 뇌물과 소극적 뇌물이라는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뇌물수수는 뇌물제공자

(bribe-payer)에 의해 저질러진다. 소극적 뇌물수수는 뇌물 수취자, 즉 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둘째, 공금 횡령(embezzlement, 제17조)이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 타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공무원의 직위를 활용하여 위탁된 재산, 공적·사적 자금,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물을 고의로 착복·횡령·유용하는 부패행위이다. 이는 뇌물수수와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와 달리 두 당사자를 포함하지 않는 자발적 부패형태(autocorruption)이다.

셋째,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trading in influence, 제18조)이다. 이는 당사국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는 부패행위이다. 이는 뇌물수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소극적 당사자로 구성된다.

넷째, 직권 남용(abuse of functions, 제19조)이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이나 단체를 위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그 임무수행에 있어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를 위법하게 남용하여 공적 행위 또는 부작위를 범한 부패행위이다.

다섯째, 부정축재(illicit enrichment, 제20조)이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적법한 수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산을 고의로 증식하는 부정축재를 범한 부패행위이다.[20]

유엔 반부패협약에 적시된 부패행위 유형 이외에도 정치·행정학에서는 독직, 친족등용, 연고자 후원 등의 부패행위도 부패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21] 첫째, 독직(graft)이란 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

20-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ited Nations, 2004); Martine Boersma,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p. 58~62.

정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뇌물수수 행위와 달리 관여하는 범위가 매우 넓고 획일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둘째, 친족등용(nepotism) 혹은 정실주의(favoritism)는 실적보다는 연고관계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가 개인의 사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자기와 연고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된다. 셋째, 연고자 후원(patronage)은 인사채용 또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보다도 파당적 지원에 근거를 두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거나 선거활동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정부의 공직을 할당해 주는 후원행위는 매우 합법적인 정치활동일 수도 있으나 쉽게 부패의 수단으로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22]

뇌물, 공금횡령 및 직권남용은 유엔 반부패협약과 정치·행정학에서 공통으로 부패행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자들은 친족등용, 정실주의 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는 반면, 유엔의 반부패협약은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 및 부정축재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반부패협약 상의 5가지 부패행위를 중심으로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반부패협약에 적시된 5가지 부패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북한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아직까지 반부패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도 형법과 행정처벌법에서 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21- 백완기, 『행정학』 (서울: 박영사, 1996), p. 625; 전수일, 『관료부패론』, pp. 51~56.
22- 전수일, 『관료부패론』, p. 56.

두고 있다. 형법과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부패 관련 조항을 통해 북한 당국이 부패행위로 적시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상으로 보면 반부패협약에서 제시하고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3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제242조(뢰물죄)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6조(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7조(관리일군뢰물죄)
관리일군이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뢰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은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다음으로 행정처벌법에서도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3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제40조(횡령행위)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36조(직권람용행위)
관리일군이 세도와 전횡을 부렸거나 특전, 특혜를 요구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38조(뢰물행위)
뢰물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중계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은 뇌물, 횡령, 직권남용을 부패행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뇌물과 직권남용은 형법과 행정처벌법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부패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법과 행정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횡령은 행정처벌법에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2가지 부패행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적인 형량이 노동단련형이라는 점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부패행위의 유형은 북한의 문헌과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의 중요성을 집중 강조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경계해야 할 현상으로 "국가사회재산을 류용하거나 탐오랑비하는 현상, 뢰물행위와 상적 행위를 비롯한 부정부패행위" 등을 적시하고 있다. 즉, 횡령과 뇌물을 주요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23]

다. 부패의 동기

부패가 북한사회, 특히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통하여 추구하는 동기(목적)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집단주의 이념과 생산의 국유화로 인해 관료들이 부패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는 동기가 자본주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철은 『북한 관료부패 연구』에서 '이익의 영역'이라

23- 현웅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주요기능," 『정치법률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 18;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통일연구원, 2008), p. 386.

는 개념을 사용하여 부패의 동기를 유형화하고 있다. 이익의 영역은 크게 개인과 조직, 이익의 성격에 대해서는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II-1 이익의 영역

〈내용〉	국가	조직	개인
경제적		①	③
비경제적		②	④

여기서 ①~④가 관료부패의 영역인데, ①은 조직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②는 조직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 ③은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④는 개인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이다. 그런데 각 유형에는 여러 종류의 관료부패가 존재할 수 있으며, 경험적인 수준에서 각 관료부패는 ①~④ 유형 중 한 유형에만 속한다기 보다 중첩된 양상을 보일 수 있다.[24]

첫째, 조직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로 자재조달 목적의 뇌물 공여, 공장·기업소의 직원 복지를 위한 기관 간 물물교환(특히 식료품과 생필품 해결을 위한 기관 사이의 비합법적 물물교환), 외화벌이 사업소 간 수주 경쟁, 허위보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업소 간 호혜(보건부 간부 아파트 건설, 그런데 자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재를 소유한 기업소로부터 자재를 받는 대신 완공 후 이들 기업소에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직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로 조직 옹호를 위한 후원자의

24- 김성철, 『북한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3.

영입, 지역주의에 근거한 비공식적 집단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식 후원-수혜관계를 의미한다.

셋째,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로 공공자원의 횡령(유통분야에 관여하는 관료가 배급품을 빼돌리는 경우, 공장간부가 제품화가 용이한 각종 자재를 횡령하여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있을 때 해먹자), 주민생활과 관련한 수뢰(통행증 발급, 근무처 배정과 이동, 인사 관련 수뢰) 등을 들 수 있다. 횡령과 수뢰는 중하위 관료들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자행되는 부패행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개인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로 여성의 성적 유린, 생산목표와 관련한 책임회피를 들 수 있다.[25]

이상에서 보듯이 부패의 동기(이익의 영역)라는 기준에서 조직과 개인이라는 부패 수혜의 대상, 경제적 성격 여부라는 2가지 기준으로 북한의 관료부패를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2가지 기준은 일정 수준 현재의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데, 김성철이 지적하고 있듯이 중첩된 형태를 띨 수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에 따른 북한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자본주의 체제와 다른 이익 추구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적 사회조직 원리에 의해 조직의 이익을 위해 관료가 비리에 개입하는 것이다. 사적 또는 개인적 부패는 불법적이고 비밀스러운 부패행위를 통해 사적인 이익이 추구되고 수집된다. 반면 집단부패는 대규모 집단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원을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행위를 말한다.[26] 이와 같이 사적이익의 취득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 또 다른 목적이 존재한

25- 김성철, 『북한관료부패 연구』, pp. 36~55.

26-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pp. 28~29.

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패동기 유형을 북한에 적용할 때 동기유형이 중첩되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부패를 통한 이익의 추구라는 동기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조직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 조직소속 근로자의 생계', 즉 배급의 제공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도 '조직이익 + 개인이익'의 결합이라는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사적이익의 취득이라는 부패 일반론과 달리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부패는 조직차원의 부패와 개인차원의 부패, 이러한 양자 형태의 복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27]

이익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의 행군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동기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배급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작동하여 시장이 확산되면서 부패형태와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제한된 자원 아래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하면서 수혜 계층의 차별(양극화)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하위 통제엘리트들도 수혜 차별화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하위 통제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활용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부패행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려는 개인적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일반주민들은 시장을 통한 자체 생존과정에서 생활 편익 추구를 위해 통제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뇌물을 활용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료와 인민의 생존을 위한 부패 연루와 시장화의 결합이 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개인 장사, 개인 부업 등 사적 부문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통제엘리

27- 이서행,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의 한계," 『한국부패학회보』, 제10권 1호 (한국부패학회, 2005), p. 136.

트들의 인민들에 대한 통제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관료들은 시장 활성화를 활용하여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친화형 부패행위'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관료부패의 특징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은 '생계유지형 부패'가 특징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는 '생계유지형 부패'와 '시장친화형 부패'의 공존구조에서 점차 '시장친화형 부패'가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28] 시장친화형 부패가 확산되면서 관료들의 부패 개입 목적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부를 축적하는 상황으로 변이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익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장친화형 부패가 확산되면서 비경제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가 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논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인권정책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는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패와 인권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은 2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이다. 부패를 저지른 이들은 구금을 피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부패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은 힘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억압하기 쉽다. 사회적 약자들은 더 착취당하고 효율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패는 배제와 차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는 특

28-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pp. 377, 380.

수한 위험에 처한 집단들의 역량강화나 이들 취약집단이 권력남용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인권은 부패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권상황이 열악한 사회에서는 부패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부패행위에 인권을 접목할 경우 부패행위 발생 기회가 줄어들고 부패행위에 개입한 자들이 적절하게 제재 받을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인권적 접근과 반부패정책이 연계될 경우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부패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접근권이 강화되면 부패가 공익에 끼치는 악영향을 쉽게 인지하게 되고 반부패운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구체적인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부패행위가 발생할 때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누가 부패로 인한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인권 상황은 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적 접근이 반부패운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2가지 상관성 중 북한의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반부패활동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서인 유엔의 반부패협약에서 부패와 인권의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문에서 협약의 당사국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대하여 야기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부패는 민주주의,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간접적으로 인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조약에 기반을 둔 유엔 인권기구와 유엔 특별절차에서는 부패가 만연해 있을 경우 국가가 인권의무를 수행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12일 몰다바에 대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와 2006년 10월 20일 콩고에 대한 유엔 아동권위원회의 최종검토의견서에서 심각한 부패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패는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위협하고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공정성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며, 경제를 왜곡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민주제도의 안정성과 사회의 도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한다.[29]

가. 부패와 인권침해의 상관관계

부패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부패와 인권침해의 인과관계가 단선적으로 연계될 수는 없다. 부패행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인권침해의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 3가지 인과관계를 통하

29- Martine Boersma and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p. 7~9, 25~26.

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부패가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direct violations)으로 작용하는 상관관계이다. 부패행위가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용될 때 부패는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와 연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판사에게 뇌물을 주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여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부패행위로 인해 국가가 개인들이 향유할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동하게 만들 경우 부패는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면 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할 경우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입학을 위해 공립학교 선생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할 경우 부패는 교육권을 침해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부패가 인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indirect violations)으로 작용하는 상관관계이다.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부패는 인권침해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패가 직접적 침해요인은 아니지만 부패행위로부터 유발되는 특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궁극적으로 권리의 침해로 연결되는 행위에 기여하는 근본요소가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침해상황에 대해 구체적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다른 나라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 폐기물이 특정 지역에 적치될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뇌물의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뇌물이 특정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뇌물수수행위가 없었다면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폐기물의 불법 반입이 없었기 때문에 폐기물로 인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뇌물수수 → 폐기물의 불법적 반입 → 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연결구조에서 뇌물은 간접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직접적 연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패는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사건의 연결고리에서 필수 기여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행위는 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부패가 인권을 침해하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사례에 대해 여성권과 아동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패한 관리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여성이나 아동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도록 서류를 제공하거나 인신매매 행위를 눈감아 줄 경우 부패행위는 여성권과 아동권을 침해하는 간접적으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한 부패가 없었다면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라는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패행위는 간접적으로 권리 침해를 유발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부패가 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부패행위에 대한 폭로를 방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발견된다. 부패한 관리가 부패행위를 폭로하려는 내부고발자 혹은 부패사건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투옥시켜 침묵하도록 만들 때 부패행위는 표현의 자유, 고문 혹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부패가 원격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remote violations)으로 작용하는 상관관계이다. 이 경우 부패는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부패는 보다 원격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와 인권침해와의 인과

적 연계를 실질적으로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선거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는 경우 사회적 불안정과 시위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시위행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적 참여 권리는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사회적 시위에 대한 억압은 심각한 인권침해(생명권,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금지, 집회의 자유 등)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부패가 그러한 소요나 억압을 초래한 유일 요소나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연결구조에서 선거부패는 보다 원격적 방식으로 권리침해와 연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30]

표 II-2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을 검토하는 과정

1단계: 부패행위의 판별
2단계: 인권에 대한 국가의무의 판별
3단계: 희생자의 판별
4단계: 부패행위와 위해(harm) 사이의 인과적 연계 평가
5단계: 초래된 손해(damage)에 대한 국가 의무의 평가

나. 부패와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및 거버넌스

위에서는 인과관계의 유형을 중심으로 부패행위와 인권침해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부패행위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가의무를 제약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30- Martine Boersma and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p. 29~31.

먼저 부패행위와 구체적인 인권침해와의 연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국가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인권에 대한 3가지 차원의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인권을 존중(respect)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연계된다. 예를 들어 고문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의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주거권과 관련하여 국가는 강제 혹은 자의적 퇴거명령을 삼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국가는 인권을 보호(protect)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가 제3자(사회의 구성원들, 개인 혹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를 의미한다. 국가는 개인 혹은 비정부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하려는 욕구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피해자가 법적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보호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패 발생가능성은 높아지고 인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만일 국가가 어떤 관행을 범죄로 규정하거나 혹은 형벌 조항을 집행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될 부패행위가 방지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영화과정에서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건, 운송, 전신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민영화는 부패의 기회를 증폭시키고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셋째, 국가는 인권을 실행(fulfil)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관할권 내의 주민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부패가 발생하면 부패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권을 향유하도록 국가가 실행해야 할 의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부패로 인해 상실되는 금전이 의약품을 구입하고 학교의 시설을 구비하고 식량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사회권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 프로그램은 식량, 주거, 보건, 가난한 자를 위한 취업 등 취약집단의 사회권을 실행하도록 기획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모니터링이 취약하며 부적절하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곳에서 부패의 개입여지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부패행위는 사회프로그램의 적절한 집행을 제약함으로써 취약집단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31]

이상에서 보듯이 인권 침해는 국가가 이러한 3가지 수준의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부패는 3가지 국가의 의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인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31-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pp. 25~26; Martine Boersma and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p. 27~29.

그림 II-1 부패, 국가의무와 인권과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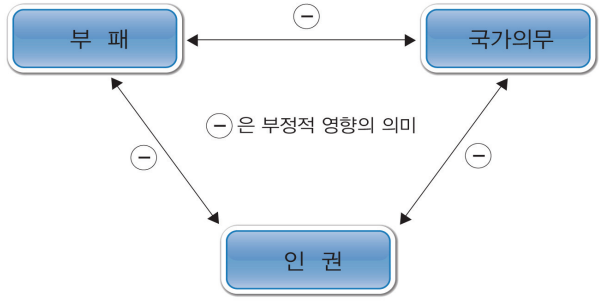

특히 부패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권의 향유와 관련하여 국가가 수행할 의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권을 '점진적으로'(progressively)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이다. '점진적'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의무를 회피하는 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관할권 내 모든 주민에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점진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퇴행적 조치'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충당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용자원을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패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패한 관료에 의해 기금이 도난당하거나 건강관리, 교육, 주거에 대한 접근이 부패에 의존할 때 국가의 자원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최대한으로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공금횡령은 인신매매와 성적·노동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자원을 할당할 때 인권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의무가 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수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권규약 2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부패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32]

이상에서 살펴본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부패행위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는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부패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협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법치·민주주의·인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부패·바람직한 거버넌스·인권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여 부패와 관련된 새로운 담론을 전개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부패와 거버넌스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 2개 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세계은행은 기본적으로 부패퇴치, 시장자율화, 경제·사회 자원관리에서의 책임성, 재산권 보장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적제도 확립 등을 목표로 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접근하였다.[33] 한편, 유엔 개발계획은 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창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목표로 한 정치적 차원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유엔 총회가 2003년 10월 반부패협약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반부패활동을 지원하면서 부패와 인권을 거버넌스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강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인권의

32-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pp. 45~49.

33-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서울: 한울, 2008), pp. 166~168 참조.

존중을 지향하고 '부적절한 거버넌스'(bad governance)는 반대의 결과(인권의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부패가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낳고 '부적절한 거버넌스'가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상관성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II-2 부패, 거버넌스와 인권과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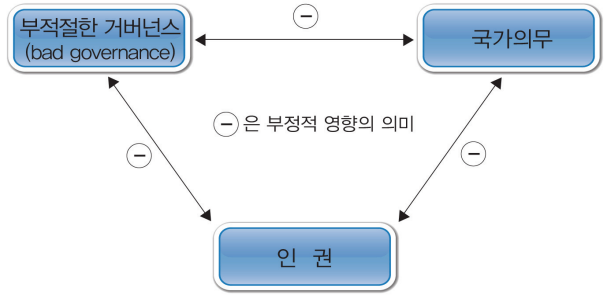

출처: Martine Boersma,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p. 8~9.

다. 부패와 인권원칙: 평등과 비차별

(1) 부패와 차별의 상관성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패는 이러한 인권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게 저해함으로써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핵심 인권원칙으로 평등(기회균등), 비차별을 들 수 있다. 즉, 부패는 접근, 비차별, 기회 등의 핵심 인권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먼저 인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차별에 대해 “인종, 피부,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 견해, 국가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지위와 같은 토대(ground)에 기반을 둔 구별(distinction), 배제(exclusion), 제약(restriction)이나 선호(preference)로서 평등한 견지에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인정받고 향유하며 행사하는 것을 무력화하거나 손상시킬 목적(purpose) 혹은 효과(effect)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정의에 입각하여 부패와 차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은 구별, 배제, 제약, 선호 등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패행위는 구별, 배제 혹은 선호를 낳게 된다.

둘째, 차별은 인종, 피부, 성과 같은 토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데, 차별의 토대는 다양하다. 부패도 차별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는 차별을 낳게 되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차별적 행위는 차별적 목적이나 효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부패는 차별적 목적을 갖고 있고 정의상 차별적 효과를 낳게 된다.

넷째, 차별은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과 같은 인권의 인정, 향유, 행사를 무력화시키거나 손상을 주는 결과를 야기해야 한다. 부패는 이러한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부패가 초래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 여권, 비자와 같은 공적 서류를 신청하거나 세관에서 화물통관수속을 할 때 뇌물을 주고 특권적 대우를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특권적 대우가 다른 권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뇌물에 의해 통관수속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친척으로부터 화물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가족의 권

리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비자절차 수속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특정인이 비자를 다른 사람에 비해 빨리 획득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비자 발급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개인은 관리에게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데 특정인이 관리에게 뇌물을 바친다면 그 사람이 뇌물을 주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특권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합리성 혹은 정당성이 결여된 부패로 인해 동일한 사안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차별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34]

(2) 부패와 취약집단의 인권

부패와 차별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부패는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부패는 취약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패는 소수자, 원주민, 이주 노동자, 장애인, 난민, 죄수 등의 취약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이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커지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보건, 법집행과 사법부문에 종사하는 관리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관리에게 소규모의 뇌물이 제공되더라도 취약집단은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커다란 악영향을 받게 된다. 나아가 대규모 부패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존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에 막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인권은 특정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공공서

34-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8, para 7; Julio Bacio-Terracino, "Corruptio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January 2008), p. 33.

비스에는 법률 지원, 학교 교육, 보건서비스, 식수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하면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위협하게 된다. 즉, 부패는 국가가 보건, 주거, 식수,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공공계약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부패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취약집단과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이 부패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건과 교육서비스부문에서의 부패는 가난한 사람들이 적절한 건강관리와 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제약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부패가 취약집단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특히 횡령행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횡령이 발생할 경우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횡령행위는 취약집단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식량프로그램상의 횡령행위가 발생하면 식량프로그램에 할당되어야 할 자금이 감소하여 질이 떨어지는 낮은 가격의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식량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횡령행위로 인한 사회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실행은 사회적 취약집단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횡령행위가 식량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상관성은 교육권, 건강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횡령행위는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인권에도 상관성을 갖게 된다. 교도소 수감자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횡령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수감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책정된 자금이 줄어들게 되어 횡령행위는 수감자들의 구금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도소 운영을 위해 책정된 자금에 대한 횡령은 고위 장관 수준에서부터 교도소 담당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도소 내 횡령행위는 수감자의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3. 부패와 분석 대상 북한주민의 권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패는 다양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인권선언과 북한이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공인된 권리에 초점을 두고 부패와 구체적 북한주민 권리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반부패 협약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부패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약에 기반을 둔 유엔 기구의 '일반논평'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를 중심으로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일반논평을 통하여 특정 권리에 대한 공식 견해를 표명하여 오고 있는데, 일반논평의 대상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상의 권리

- 생명권(6)
- 고문 혹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잔혹한 대우 및 처벌(7)
- **표현의 자유(10)**
- **공정한 재판권(13)**
- **사생활존중권(16)**
- 가족권(19)
- 사상의 자유(22)
- 소수자의 권리(23)
- **이동의 자유(27)**
- 남녀평등(28)
- **비차별(18)**

* 괄호는 논평번호
* **굵은 글씨로 표기한 것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권리를 의미**

그리고 일반논평의 해석 대상의 권리 이외에도 종교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권리 이외에도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연구[35]에서는 정치참여권을 핵심 권리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주로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패와 북한주민 인권의 상관성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부패가 정치참여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정치부패는 입법가들이 규범과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도외시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정치참여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35- Martine Boersma and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p. 38~39.

체제에서는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후보자가 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중심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행위를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후보자를 선정하는 피선거권의 경우에도 당에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을 통하여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부패행위는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북한은 당 중심의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당원이 될 경우 대의원 후보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뇌물을 주고 입당을 하는 경우 뇌물은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원격적 요소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체제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참여권은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권에 대해서는 이동의 자유(북한 내 이동, 탈북, 여권발급)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 법 앞에 평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생명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 존중권, 소수자 권리, 고문 등은 현재 북한 내 부패 현상과 연계성이 미약하므로 본 과제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일반논평을 통하여 특정 권리에 대한 공식 견해를 표명하여 오고 있는데, 일반논평의 대상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상의 권리

- 적절한 주거권(4)
- **적절한 식량권(12)**
- **교육권(3)**
- **건강권(14)**
- 식수권(15)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평등(16)
- **노동권(18)**
- 사회보장권(19)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의 비차별(20)**

* 괄호는 논평번호
* **굵은 글씨로 표기한 것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권리를 의미**

사회권 중 식수권과 남녀평등, 사회보장권은 북한주민의 실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층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배분과정에서의 부패행위로 이러한 권리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해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여성권과 아동권도 부패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권리가 많지만 위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권리와 부패의 연계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와 국경관리, 경찰, 사법성원의 부패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이러한 연계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패와 아동권과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입양절차 동안 보호되어야 할 권리, 인신매매와 성착취로부터의 보호권,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교육권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되, 교육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패와 아동권의 상관성을 부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현재 북한당국은 공식적으로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무상의무교육이 현장에서 사실상 붕괴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차별, 접근, 교육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부패행위가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북한부패의 요인

북한 내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정치적 요인으로 수령 중심의 일인지배체제, 조선노동당 중심의 국가체제에 따른 권력의 독점과 집중에 따른 권력의 부패개입 가능성과 이러한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른 부패개입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배급체제의 기형적 작동과 시장의 확산, 자체적 생존 모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요소의 확대로 인해 부패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첫째, 경제시스템의 기형적 작동, 둘째, 자체 생존과정에서의 시장 확산, 셋째, 이에 따른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3가지 차원에서 부패행위 발생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시스템과 부패

가. 계획경제시스템 붕괴와 부패

1990년대 경제난의 핵심은 대외 의존적 에너지 수급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한 공급과 생산의 급격한 위축이었다. 이런 위축은 계획경제시스템의 전반에 커다란 타격을 주며 주민 생필품 공급과 식량 배급의 중단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생계차원에서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대다수 주민들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게 되었고 국가는 이것을 허용 또는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교환에 대한 일종의 의도된 묵인정책을 통해 국가의 공급 및 배급 부담과 책임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 왔다.

이에 따라 계획경제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교환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 계획경제가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강제하던

교환관계가 유명무실화된 것이다. 계획경제가 보장하지 못하는 식량, 상품, 화폐, 정보, 자원, 기술, 인간, 운송 등 '물질-에너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고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새로운 교환관계의 형성은 국가, 관료, 인민 사이에 기존과는 다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6]

1990년대 경제난은 국내 생산의 급격한 위축과 국내 자원 동원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했다. 또한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 환경의 변화는 외화벌이 사업도 위축시켰다. 결국 외화벌이 사업 확장을 통해 수령통치의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외화벌이 경로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 대외거래를 통해 팔 수 있는 국내 물자를 최대한 수령통치의 관리·통제 영역 안으로 끌어 들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군부를 비롯한 중요 권력기관들의 외화벌이 사업 확장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이들 권력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국내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여 외화벌이 사업에 나섰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공급과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기존에 당과 내각 무역기관에서만 하던 대외무역을 주요 권력기관과 하부단위로 대폭 허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 외화벌이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외화벌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 상납하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과 별도로 나머지는 관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최소한의 계획경제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은 개별 단위의 의무와 부담으로 전가되었고 수령통치 재원 마련을 위

36- 홍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p. 54.

해 특권화된 엘리트 및 권력기관의 국내 자원 수탈과 외화벌이과정에서의 부패가 묵인되기 시작했다.[37]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 첫째, 최고지도자와 상층 권력엘리트 및 당·정·군 권력기관 사이에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었다. 상층 권력엘리트 및 당·정·군 권력기관들은 수탈적인 국내 자원 동원과 확장적인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최고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이전하고, 최고지도자로부터 다양한 특권(후술하는 정치자본)을 부여받게 되었다. 최고지도자는 상층 권력엘리트와 권력기관에게 국내 자원의 점유와 외화벌이 독점권을 허가해 주는 특권을 부여해주었다. 이들 상층 권력엘리트와 당·정·군 권력기관들은 이런 점유 및 독점권을 통해 얻은 자금을 특권에 대한 보답으로 상납하고 충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최고지도자와의 특수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최고지도자와 상층 권력엘리트 및 당·정·군 권력기관 사이의 관계는 사회 전반에 부패를 광범위하게 확장·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38] 수령이 부여한 국내 자원에 대한 점유와 독점권은 관료계층 전반에 부패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특권과 부패행위가 연관되면서 선호부서가 변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생명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부서가 막강해지고 있으며 물자를 받을 수 있고 돈을 다룰 수 있는 부서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다.(사례 7)

둘째, 상층 권력엘리트 및 당·정·군 권력기관의 특권화된 자원 점유

37- 이와 관련해서는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79~82;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 해남, 2002), pp. 30~31; 홍민,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통일연구원, 2006), pp. 120~121 참조.

38- 이와 관련해서는 홍민,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현대북한연구』, 제9권 제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pp. 69~70 참조.

와 외화벌이 독점은 중하위 관료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각 기관, 지방의 당 및 인민위원회, 인민보안부, 공장·기업소 등 중하위 관료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과 주민들의 시장 활동 등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관·조직의 운영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들은 국내 자원 동원과정에서의 실무 관료로서, 그리고 시장 활동의 중요 지점을 통제·관리하는 권한 행사를 통해 자신이 속한 기관·조직의 유지와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개인적인 물질적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생존해 나갔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자신의 상부 기관·조직이나 상사에게 상납하는 방식으로 특권을 유지·확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39]

셋째, 중하위 관료들과 일반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이다. 공장·기업소의 가동 중단과 식량 및 생필품 공급의 중단은 주민들에게 노동할 기회와 동기를 빼앗았다. 주민들차원에서는 생존을 위한 시장 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불법적인 시장 거래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 거래까지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후술하듯이 시장 거래를 관리·감독·지도·단속하는 중하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직장이탈과 시장 활동에 개입해 뇌물을 받는 방식으로 대가를 챙겼다.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위해 뇌물을 주고 이들 관료들의 묵인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장경제는 국가, 관료, 인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국가, 관료, 인민 사이에는 시장과 '생존'을 둘러싼 이해

39- 중하위 관료들의 시장활동 개입을 통한 특권 유지·확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p. 325~326 참조.

관계와 교환관계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자신의 생존과 이해를 위해 서로가 공존하는 '게임의 규칙'이 형성되었다. 이는 법적·제도적 원칙을 이탈하거나 벗어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기형적 계획경제 운영과 부패의 재생산

북한에서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혼란과 왜곡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명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을 둔 계획화는 관료적 과정을 통해 수직적으로 아래 단위로 하달된다. 아래 단위들에서는 하달된 불안정한 계획을 수습하고 달성하기 위해 관료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조정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패는 계획경제의 계획을 조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행정경제위원회의 지방공업부의 계획과는 연간의 계획을 총화해 내년도 계획을 할당 받기 위해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간다. 그때 뇌물이 될 만한 것을 잔뜩 가지고 간다. 일종의 로비활동이다. 그러면 도는 뇌물을 많이 가져온 시·군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계획을 주고, 그렇지 않은 시·군에게는 계획을 많이 할당하게 된다.[40]

나아가 불명확하고 왜곡된 정보에 기반해서 작성된 계획은 계획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확실성과 결합되면서 관료들 사이의 담합·흥정 등 비공식적 관계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계획경제의 실질적인 작동은 공식적인 계획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료들 사이의 위계, 지위, 연줄, 호혜 등 다양한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40- 양문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p. 95.

이루어져 왔다.[41]

이와 같이 정보의 빈곤과 왜곡, 계획 전반의 파행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비공식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형적 계획경제 운영 아래 형성된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는 고난의 행군 이후 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연계되면서 조직의 운영을 위한 부패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구조가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이에 대응하는 비공식적 관계와 부패관행을 유발하는 연결망이 구성되는 것이다. 계획 절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자원과 서비스를 정치적 결단이나 연줄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유리하게 왜곡시킨다. 정치적 지위와 연줄을 통해 공적 자원과 서비스를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위해 남용하였다는 점에서 '부패'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부패행위 동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난을 전후한 부패행위 동기에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개인적' 이해차원의 남용보다는 '조직적' 이해차원의 남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이 속한 기관·조직의 목표나 이해를 위한 행위에 가까웠다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을 기관과 조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42]

경제부문에서 나타나는 본위주의 현상은 주로 계획경제시스템 자체

41-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p. 258.

42- 여러 탈북자 증언을 재구성하면 권력을 이용한 '레드-칼라'(red-collar) 범죄의 변화 추이는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에는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자재 부족과 생산의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소, 기관차원의 자재축장과 개인 착복의 성격이 강했고, 주위의 평가도 기관차원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간부들의 개인적·집단적 이해차원의 부패는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여기서 개인적 이해차원의 부패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201~204 참조.

가 갖는 문제에서 파생하여 주로 자기 조직·단위·기관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관료들의 기관본위주의적 행위는 주로 계획경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수습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차원에서 나타났다. 이런 기관본위주의는 "당적, 국가적 립장을 떠나서 자기 기관, 기업소의 일시적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국가계획과제 수행에서 기관, 기업소 호상간의 련계와 협조를 거부하거나 등한히 하며 협동생산에 잘 응하려 하지 않으며 자재와 설비를 사장해 두고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의 <공명>과 <명예>, <출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의 리익을 꺼리낌 없이 침범하는"[43]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이다. 즉 기관의 이해가 국가이익에 우선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관본위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계획 수행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관료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비공식적 교환과 호혜적 연줄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관료 개인의 이해가 개입되면서 뇌물이나 착복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전까지 '경제범죄'라고 하면 주로 이들 경제부문 간부들의 뇌물이나 착복 등을 뜻하는 것이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계획과제에 급급해 하는 '본위주의'로 비춰지며 결과적으로 자기단위의 이해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44] 이런 의미에서 기관본위주의는 관료들과 기관·기업소의 생존의 논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행위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 양쪽에 걸쳐있는 '회색지대'에 속하

43-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119~120.

44- 북한에서 통제와 폐쇄성으로 인해 가족주의가 왜곡되어 '비도덕적 가족주의'적 요소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는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p. 23.

는 행위로써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이전에 관료세계에서 나타났던 부패 현상의 많은 부분은 바로 계획경제 운영의 원칙과 실제 사이에 존재하던 괴리 속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사회에 국가이익보다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기관, 지역, 가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이 만연해지게 되었다.[45] 이와 같이 경제난으로 계획경제가 기형적으로 작동되면서 개인과 조직이익이 결합되는 부패행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관·조직을 위한 행위도 있지만 개인적 이해를 추구하는 부패관행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익과 조직이익이 결합되는 부패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기관·조직을 위한 행위와 개인을 위한 행위는 사실 일치되거나 동시에 충족될 수도 있고, 이 둘 사이의 우선순위와 비중은 다르지만 이 둘을 충족시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부패행위들이 많다. 또한 개인적 이해에 기반을 둔 부패행위를 '조직의 선'(good of the organization)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할 수도 있다. 조직, 당, 국가의 목적에 자기 자신의 이해를 일치시키려는 행위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부패행위가 개입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온 측면도 있다.[46]

45- 이러한 현상은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화라고 개념화되고 있다.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는 밴필드(Edward Banfield)가 남부 이탈리아 연구에서 개념화 했다. 자신이 속한 소집단(가족, 조직)의 이익과 가치를 국가나 사회 전반의 이익·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Edward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Christopher Colclough, "Structuralism verus Neo-Liberalism: An Introdution," *States or Market? Neo-Liberalism and the Development Policy Debate* (Oxford: Clarendon Press, 1991); John Toye, *Dilemmas of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7); Diego Gambetta, Sicilian Mafia: *The Business of Private Prote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46- Stephen Lovell, Alena V. Ledeneva and Andrei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Negotiating Reciprocity from the Middle Age to the*

이와 같이 북한 내에서 조직이익과 개인이익이 결합된 부패행위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정치자본'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본은 사적인 소유가 금지된 사회에서 공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점유·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47] 정치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기관·조직을 위해서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든 재화와 서비스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자본이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사실상 그것의 활용이 조직을 위해서인지 개인을 위해서인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정치자본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이 둘의 중첩된 영역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본을 기초로 한 개인화된 관계들은 사회적 위계나 국가기구의 어떤 수준에서든 조직 이해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 개인 이해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자본은 기형적 계획경제의 작동과 맞물릴 때 부패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특히 관료들 간에 불확실한 계획경제의 현실을 공감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는 관료적 '이타주의'와 자신의 생존과 자기보존을 위한 '보상'이라는 인식을 낳게 한다. 이러한 인식이 부패행위 자체에 대한 불감증을 낳고 부패행위가 만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s, p. 4.

47-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망 형성과 관련하여 '정치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본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관료적 지위를 보유한 사람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재화를 점유·활용하고 주택, 자동차, 병원, 학교 등과 같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보다 포괄적으로 지위를 자원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유리하게 하거나 여타의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Pierre Bourdieu,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6.

계획경제의 붕괴와 생존을 위한 새로운 비공식 관계의 형성과 이러한 관계를 통한 개인이익과 조직이익의 결합을 통한 부패행위 유발과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시스템은 중앙, 도, 지방의 위계구조로 조직되어 있고 각 조직별로 중앙집권적 지도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당에서 하달되는 정책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중앙조직이 도의 조직을 관리하고 도의 조직이 하부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운영 형태이다. 이와 같이 상부조직은 하부조직을 지도하는 외에 정책감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앙차원에서 과제가 하달되면 중앙조직은 정책감시를 활용하여 하부단위에 뇌물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받은 뇌물은 본인 몫과 본인의 상급자에게 상납해야 하는 몫이 동시에 포함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한국과 달리 뇌물은 이러한 개인적 착복과 동시에 조직을 움직이는 수단의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뇌물을 받는데 현재 북한의 경우 자신의 착복과 더불어 기관의 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의 일환으로 뇌물을 받고 있다. 즉, 현재 북한의 뇌물은 '개인의 착복 + 기관의 과제수행을 위한 자본'이라는 2가지 기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부문에서 뇌물이 일상화되고 근절되기 어려운 본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각 조직별로 할당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뇌물이 활용되고 있다.

인민보안부 사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조직 관리과정에서 부패행위가 개입되는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민보안부차원의 과제가 하달되면 인민보안부는 하부단위 조직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매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민보안

부는 정책감시를 활용하여 도 보안국에 뇌물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민보안부도 김정일을 호위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위를 위한 건물이 필요하여 건물을 신축하라는 과제가 할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게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민보안부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하부단위별로 재원을 할당하게 된다. 인민보안부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비용이 필요하므로 하부단위에 과제를 주는데 이를 '세외부담'이라고 한다. 하부단위에 감사 갈 때 받는 돈의 반은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반은 '세외부담'으로 중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세외부담은 중앙에서 하부단위까지 연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하고 이것이 이제는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사례 7)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에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 단위와 개개인의 살림살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기관·조직의 생존과 관료들 자신의 특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주민 시장 활동에 대한 약탈적 기생을 통한 부패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과 자원은 자신의 정치자본(특권, 직위, 권한)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상부로의 상납금과 자기 기관·조직의 운영비로 활용되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재투자된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를 자신의 직위나 기관·조직의 이름으로 부정적으로 전유하는 것이다.[48]

48- 간부들이 직권을 이용한 사적이익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해남, 2002), pp. 38~40;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pp. 213~237 참조.

이러한 대리인을 통한 재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의 축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한다. 도 보안국의 경제감찰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돈을 착취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은 '확대재생산', '복수직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인은 주로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경제감찰을 담당하였는데, 부패를 통한 부의 축적 사례로 바지락 양식 사업을 들었다. 바지락 1톤의 수출가격은 850달러이다. 그런데 씨바지락 1톤은 150달러에 사오는데, 생산할 때는 8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씨바지락 값 1톤 가격과 비용 등을 제하더라도 5톤 정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즉, 5,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2년 '국방위원회 명령 0029호'라는 수산자원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규정이 하달되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외화벌이 단위에서 국가 규정대로 운영하는 기업소는 없다. 국가 규정에는 자기 종업원들을 채용해서 자기 종업원들이 뿌리고 자기 종업원들로 캐라고 하지만 수백 명 자기 종업원의 밥을 먹여서 사람들을 채용할 수는 없다. 그때마다 가두인민반 노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채용증명을 보자 해서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소들은 경제감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경제감찰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 기업소에 1,000달러를 주면서 "이거 씨조개 묻어서 우리 지은 사업도 많고 하니까 돈이 좀 있어야겠어"라고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준다. 그러면 1,000달러 투자해서 생산철이 되면 15,000달러 내지 20,000달러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사례 3)

이러한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약탈과 기생, 부패 고리는 경제 전반의 물질적 재분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생계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일반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관료들이 약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생존권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 및 계층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시장 활동에 머물고 있는 반면,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하여 부를 챙기고, 이와 결탁된 돈주와 같은 거물장사꾼들 역시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위배하는 동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실행의무를 저해하게 된다. 특히 일반주민의 사회권에 충당되어야 할 자원의 가용성을 떨어뜨리고 일반주민들의 경제적·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시장과 부패

북한에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은 주로 시장세력과 공적 지위의 연계, 공생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시장과 공적 지위의 연계 및 부패

북한에서 시장행위가 확산되면서 부패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정치자본'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정치자본은 공적 지위를 통해 주택, 자동차, 병원, 학교 등 공공적 재화에 대한 점유·활용과 서비스를 향유하는 능력을 뜻한다.[49] 북한에서 정치자본은 직위를 통한 특혜 또는 특권을 향유하는 것에 해당

49- Pierre Bourdieu,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p. 16.

하며, 이런 정치자본은 가계의 출신성분과 가족적 세습에 의해 전수된다. 북한의 경우 빨치산 혁명전통을 정점으로 한 출신과 가계에 따라 정치자본의 소유 수준이 현격하게 차별화된 사회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할 때 정치자본의 의미가 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서의 부패와 정치자본의 상관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부패는 시장의 활성화 현상 속에서 정치자본의 소유와 영향력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정치자본은 소극적으로는 직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배급과 공급의 혜택을 뜻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관료적 직위와 특권을 통해 개인 및 기관·조직의 이익과 지대를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관료들은 1990년대 이후 정치자본을 활용하여 시장경제에 개입하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적이익을 획득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은 기존의 사회적 권력 관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50]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당·정·군의 관료들은 자신이 소유한 정치자본을 통해 시장경제를 전유하는 방식에 있어 진화를 거듭해 갔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확산과정에서 정치자본과 더불어 '시장세력'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부패행위 개입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시장이 불법적 영역으로 통제되는 가운데 당·정·군의 주요 권력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무역회사를 꾸리고 외화벌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 기관들은 자기 기관의 운영과 생존을 명분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정당화해왔다. 그리고 중하위 관료들은 주로 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를 명분으로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방식

50- 경제적 거래의 사회적 배태성(embeddedness)에 대해서는 박찬웅, "시장과 배태: 경제적 거래의 사회적 배태성," 『한국사회학』, 제44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10), p. 49.

으로 시장과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왔다.

2000년 이후 시장 활동에 대한 제도적 허용이 늘어나면서 당·정·군 기관들은 대내외 시장 거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그 영역도 크게 확장되고 있다. 사실상 굵직한 대외 무역 거래에 당·정·군의 주요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대내외 시장 규모도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51] 이와 함께 중하위 관료들의 시장 이해관계도 다양화되고 있다. 단순히 주민 시장 활동에 기생하는 방식을 넘어 시장 활동과 거래의 뒤를 조직적으로 봐주거나 주택 건설이나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인 시장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사실상 주민들의 시장 활동은 위축되었지만 기존의 당·정·군 중심의 외화벌이 사업과 대내외 시장 거래는 큰 타격 없이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사실상 북한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이들 당·정·군 산하 무역회사들의 대내외 시장을 연결하는 무역 거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시장 거래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기관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의 용인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52] 이들이 들여오는 수입 물자와 자금은 국내 시장으로도 유입되어 국내 시장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53] 또한 중

51- 이와 관련해서는 이정철, "북한 구획 경제의 한계와 가격 제도 개혁," 『통일경제』, 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2010), p. 94.

52- 가령 군의 외화벌이 사업만 예를 든다면,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외화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국방공업과 외화벌이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1), p. 200.

하층 관료들 역시 국내 돈주와 상업자본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국내 시장경제의 상층을 차지하며 중요한 시장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당·정·군의 모든 관료들이 북한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실제적 세력이란 점에서 이들은 '시장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시장교환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패와 연루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시장세력'은 시장을 생계 근거로 활동하는 일반 주민과 매대상인 및 보따리 상인들과 같은 일반적인 시장 일상생활 영위층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에 위치시키고 시장을 통해 일상을 영위하는 일반주민과 상인들을 시장세력으로 보지만, 그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 북한의 '시장세력'은 대내외 시장 및 시장교환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를 통해 생존과 이윤, 기득권과 지위 등을 유지,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어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 및 집단(기관, 조직)을 총칭하여 정의할 수 있다.[54]

이들 시장세력은 생계차원에서 시장 활동을 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비롯하여, '돈주'를 비롯한 크고 작은 상인계층들, 이들의 활동에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중하층 관료들, 당·정·군 기관 외화벌이 회사들과 그 관료들, 이들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활동하는 무역지도원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교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53- 북한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들어오는 외화의 자금 흐름과 관리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북한의 경제구조와 작동원리는 물론 권력구조와 작동원리까지 파악할 수 있다.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수은북한경제』,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2008), p. 21.

54- 홍민,『화폐개혁 전후 북한의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 동학: 후계 정치지형과 시장 권력과의 상호관계 및 변화구도』(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6), p. 60.

챙기는 중앙 및 지역의 상층 관료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시장 세력들은 사적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전유(appropriation)하는 데 있어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조직, 조직 대 조직, 조직 대 지역, 지역 대 지역 등의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유지·변형하면서 상호 공생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전유에 있어 부문별, 지역별 협력·공생체계를 형성하기도 한다.[55] 시장세력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 물자, 운송, 에너지, 인간, 기술, 정보 등의 물질-에너지 흐름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패행위에 개입하게 된다.

나. 시장세력들의 결탁방식과 부패

시장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시장세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탁방식에 따라 부패행위의 개입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상층에는 당·정·군 기관들의 외화벌이사업 회사들이 있다. 당 39호실, 38호실, 당재정경리부, 당조직지도부 등[56]에 소속된 외화벌이 기관들과 내각, 군,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주요 도급기관 및 주요 특수기관 등의 산하에 있는 외화벌이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들은 북한의 내부 자원들에 대한 독점적 수취 권한과 수출입권을 활용해 무역을 통해 국내외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

55- 홍민, "북한 시장 일상생활연구-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박순성·홍민 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 360.

56- 중앙당 39호실에는 대성총국, 경흥지도국, 락원지도국, 금강지도국, 대흥지도국 등의 무역회사들이, 38호실에는 호텔, 상점, 백화점, 식당 등이, 또 당 재정경리부의 무역회사, 식당, 상점, 농목장, 공장들, 당조직지도부 행정부문에서 관리하던 조선민족보험회사, 727지도국, 2호지도국, 수도건설총국, 조선원예총회사 등 경제단위들, 당 민방위부의 114지도국 등이 있다. 김광진, "북한 외환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p. 25.

으로 수익을 챙긴다.[57] 이들 회사들의 국내 수출원천 동원, 대외 시장 거래, 수입품 국내 유통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은 국내외 시장교환을 직간접적으로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중앙당 외화벌이의 경우 국내적 유통과는 별도 김정일 통치자금 조달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출을 위해 국내 자원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이 관련 담당 일꾼이나 지역기관에 의해 유출되어 시장으로 나가고 있어 국내 시장과 완전히 절연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58]

이들은 강력한 권력을 지닌 중앙엘리트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후견과 보호, 독점적 지위 속에서 시장을 전유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규모와 파급력이 큰 시장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국내외 수출입과 시장 유통과정에서 국가기관 명의와 '와크'(무역 허가권)를 통해 동원하는 자원, 물자, 운송, 인간, 정보 등의 규모 측면에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와크'를 매개로 한 구체적 부패행위 발생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보통 회사와 권력층을 끼고 하는데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오더를 주는 물량이 있고, 이를 '와크'라고 한다. '와크'로 통칭되는 물량이 내려오면 북한 내부와 짜고 할당물품의 구입 가격을 속여 차액을 챙겨서 서로 나누어 갖는다. 즉, 국가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구매 가격을 속이는 것이다. 중국에서 실제 구매가격이 1,000원이면 국가에 가격을 올릴 때는 2,500원이나 3,000원

57- 기관별 '회사'의 운영과 시장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9), p. 48.

58- 이와 관련 대흥지도국 산하 5호관리부에서 금, 송이버섯이나 지방 특산물 수매과정에서 당 관료들을 통해 상당한 양이 중간 유출되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2009년 5호관리부 수매담당 일꾼 출신 탈북자 인터뷰 내용.

으로 올린다. 1,000개를 구입하는 데 중국 현지에서 1백만 원이지만 1,000개를 구입하여 북한에 보낸 후 2백 5십만 원이나 3백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면 1백 5십만 원이나 2백만 원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 표준약관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물품 구매 가격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국가에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한 번도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외화벌이 일꾼이 가격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외화벌이 일꾼들은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는 물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물품을 찾아 국가에 신청하면 자신들이 가격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 챙길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외화벌이 단위에서 구매해서 보내는 물품의 가격은 계속 유지시켜 준다. 따라서 계속해서 챙겨 착복할 수 있다. 10만 달러를 챙기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사취한 돈을 자신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자신의 뒤를 보아주는 고위층에게 상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59]

이들의 활동이 사실상 국내 시장의 가격구조와 유통 물량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큼 국내 시장의 존속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시장은 수출입을 통한 지대 실현을 매개해 주는 경제적 공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뇌물은 이 기관들의 외화벌이 지대 실현에 기생하는 시장 상품 유통 피라미드 안에 산재해 있는 여러 단계의 시장 참가자들의 이윤에서 나온다.[60]

둘째, 이들 당, 정, 군 기관의 회사 밑에 소속되어 자금과 인원을 동

59-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

60- 최봉대, "북한의 시장 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한반도포커스』, 7·8월호, 제1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p. 13.

원하고 현장에서 무역 활동을 하는 '돈주'들이 있다. 이들은 '돈주'들은 자신의 자금과 음성적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을 보태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는 대신 무역지도원으로 채용되어 회사의 보호 아래 영업을 한다. 이들 무역지도원은 할당된 계획분을 회사 회계연도에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은 자신의 몫으로 챙긴다.[61] 이 돈주들은 몇 단계를 거쳐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놓여 있는 시장의 공업품이나 식량 소매장사, 또는 기업소의 부업선 선장 같은 외화벌이 원천 생산자까지 연결되어 있다.[62] 이들은 당, 정, 군의 무역회사와의 공생관계 속에서 이들 기관과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뇌물 등 부패행위자로 가담하게 된다.

셋째, 도당, 시·군당 및 인민위원회, 보안서 등 지역 권력기관들과 현장 일꾼들이다. 이들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장을 통해 시장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 이들 기관과 지역 시장 사이에는 시장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 시장관리소 소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 시장에 대한 검열 권한 등을 명분으로 권력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된다. 시장관리소장은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당 간부와 행정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검열을 피하거나 인사상의 신임을 얻고, 지역당 간부와 행정간부들은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특혜를 시장을 통해 누리게 된다.

또한 이들 지역 당·정·치안 기관들의 현장 간부들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이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받거나 아예 소상인 및 중간상인들의 후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

61-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p. 49.

62- 최봉대, "북한의 시장 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p. 13.

권력기관들은 해당 지역 내 있는 '힘없고 빽없는' 곳 – 협동농장, 지방공장, 수산사업소 – 을 타겟으로 비리노트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정기적으로 고기와 금품을 상납 받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개인 또는 기관이 착복을 해오고 있다. 이밖에 이들 협동농장이나 지방공장에 대해 각종 사적지 및 전적지 건설 지원, 사회노동 지원의 명목으로 필요할 때마다 '갈취'를 하는데, 여기엔 법질서를 담당하는 보안일꾼도 참여한다.[63] 이들도 보안국이나 시·군 보안서 일꾼들은 밀무역꾼들과도 결탁하여 이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재산을 불리기도 한다. 이들이 상납 받거나 갈취한 물품이나 농산물 등은 시장으로 유통된다. 이들 지역의 권력기관들은 시장이나 힘없는 농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약탈'을 상호 묵인하거나 공모하면서 시장을 통해 지역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시장세력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위로부터 시장을 통제할수록 오히려 중·하위단위 권력기관의 부패는 확산되고 있다. 즉, 시장을 통제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많아질수록 감독·통제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들의 힘은 커지고 "뜯어 먹는 게 많아진다." 결국 지역의 보안기관이나 여타 권력기관은 사실상 시장에 기생하면서 시장의 근절을 바라지 않는 '시장세력'의 핵심으로서 자신들의 먹이 사슬구조를 보다 강화시켜나가고 있다.[64]

넷째, 생계차원에서 시장 활동을 하는 대다수 주민들이다. 공식적인 매대를 통해서든, 비법적인 장사를 통해서든, 가내 개인 사업이든, 이들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 시장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다. 사실상 이들은 수적으로는 가장 많을지 모르지만 가장 낮은 판매 이윤 속에서

63- 홍민, "범죄의 사회적 구성과 주민 생계윤리,"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202~203.
64- 홍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p. 60.

권력기관들의 통제와 수탈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언제든 시장 활동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며, '비법'의 굴레에 의해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또 북한 시장의 전체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위에서 열거한 시장세력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적고 힘이 없으며 가장 주변적인 사람들이다. 사실상 이들은 북한 시장의 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확산을 주도하는 힘 있는 주도 세력이 아닐 수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비법'의 굴레에 걸리지 않으려고 뇌물 등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65]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장결탁 방식은 권력과 후견 아래 외화벌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뇌물, 횡령 등 부패행위가 개입하는데, 이러한 부패행위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강화시키고 투명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전반적 인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행위로 인해 한정된 자원이 특정 소수 특권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사회권 향유를 위한 자원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장결탁 방식은 주로 개인 대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뇌물수수자, 뇌물제공자 모두 뇌물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의 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 현상에 대한 부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인권인식이 형성되는 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

65 홍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p. 61.

3. 비사회주의 행위 통제와 부패: 법률적 근거

이상에서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부패의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비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의 법률적 근거에 주목하여 부패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사회주의 현상이 부패와 연관되는 것은 규제와 규제의 적용을 통한 단속과 처벌이 부패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만연하고 정부관료가 이를 적용하는 데서 자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들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료들은 뇌물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66]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가치와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인해 자체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사회주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비사회주의 행위가 확산되면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오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식규범에 위배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왔다. '비사회주의 행위'들은 광범위하게 규정할 때는 북한의 법률질서에 위반하는 제반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잠재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하여 행위양식으로 구체화되는 일탈행위, 일탈행위의 위법성 여부, 나아가 일탈행위와 범죄행위가 지향하는 사회변화를 모두 포

66- Paolo Mauro, "Why Worry About Corruption?" *Economics Issues 6* (IMF, 1997), p. 4.

함하는 의미로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해석할 수 있다.[67] 또한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사회적 일탈행위, 경제적 위법행위, 범죄행위, 반체제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다양한 통제인력들의 부패 개입 영역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비사회주의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으로는 사회주의체계의 근간이 되는 배급제도가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이다.[68]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수해 등 자연재해로 더욱 악화되어 주민들의 기본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식량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기업소들도 공급자재 부족뿐만 아니라 기본설비시설 훼손 등으로 가동이 거의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소에 출근해도 일거리가 없고 식량이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면서, 개인들은 새로운 생존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국가배급체계 대신 개인들 간의 상거래를 통해 식량 및 생필품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토대로 한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개인들의 사적인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북한당국은 비사회주의 현상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들을 운용하여 왔다. 또한 확산되는 비사회주의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사안별, 시기별, 지역별로 보안기관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동시에 단속기관들 간 상호 견제시스템도 구축하여 왔다.

67-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은 '사회구성원이 그들의 도덕, 규범, 법적, 규정을 침해하는 모든 의식, 가치관, 행위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 p. 5.

68- 최대석은 사회주의적 요소의 발생배경으로 계획경제의 파탄과 배급제의 붕괴, 변경무역의 확대와 시장의 등장, 지식과 정보유통을 통한 의식의 변화를 들고 있다. 최대석 외, 위의 책, pp. 24~35.

북한 형법 제10조에서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개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들을 다음 <표 Ⅲ-1>에서 알 수 있듯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문화, 행정질서,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민보안단속법을 통해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들을 통제하고자 한다(인민보안단속법 제1조)는 명분하에 매우 광범위한 단속대상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형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사회적 교양을 통해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인민보안단속법 제5조). 그렇지만 형법에도 명백하게 범죄자의 처리원칙에서 사회적 교양을 언급하고 있다.[69]

아래의 형법과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실제 처벌의 정도는 개인의 신분 및 배경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단속기관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의 내용이 사회적 교양에서부터 노동단련, 무보수 노동, 노동단련형, 교화형, 사형까지 매우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과정과 처벌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속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부패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69- 형법 **제2조(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표 Ⅲ-1 북한 헌법에 의한 범죄 분류

분 류	유 형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반국가범죄
	반민족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침해한 범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침해범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서울: 국가정보원, 2010), pp. 314~367.

아래의 표에서는 북한에서 만연하고 있는 소위 '비사회주의 현상'과 관련된 처벌 관련조항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수의 조항들은 일반적인 국가들이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권리들을 북한당국이 제한함으로써,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행위들에 관련된 것이다.

표 Ⅲ-2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 조항

유형	범죄명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국가재산훔친죄(89), 국가재산속여가진죄(92), 국가재산횡령죄(93),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94), 국가재산강도죄(95), 국가재산공동탐오죄(96),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97), 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98)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외국화폐매매죄(104), 외화관리질서위반죄(105),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산죄(106),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죄(109), 개인의 상적행위죄(110), 무역 또는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111), 고리대죄(118), 로력착취죄(119),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120),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죄(129),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죄(130), 계약규률위반죄(131),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132),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133), 비법적인 경제관리죄(134),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꾼죄(135), 부동산관리질서위반죄(140),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죄(149), 상품공급질서위반죄(156), 상품판매질서위반죄(157), 량정질서위반죄(158),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밀주죄(159), 개인의 밀주죄(160), 생산물의 비법처분죄(161), 전력사용질서위반죄(165), 가격제정질서위반죄(170), 난방열도용죄(171),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172)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토지람용, 페경죄(173), 토지류실죄(174), 산림람도벌죄(178), 과실산불죄(179),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한죄(180)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로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한죄(188)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190),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죄(191)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330~348.

표 Ⅲ-3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 조항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류포죄(193), 퇴폐적인 행위를 한죄(194),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195), 허위정보입력, 류포죄(203), 치료거부죄(208), 의료사고죄(209), 비법의료죄(210),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215),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216), 비법마약사용죄(217), 마약밀수, 밀매죄(218)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348~352.

표 Ⅲ-4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 조항

유형	범죄명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집단적소동죄(219), 법일군의 직무집행방해죄(221), 허위풍설날조, 류포죄(222),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224), 증명서매매죄(225), 출판질서위반죄(226), 경비근무질서위반죄(228), 비법국경출입죄(233), 비법국경출입협조죄(234), 뢰물죄(242), 봉인손상죄(243)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직권람용죄(246), 월권행위죄(247), 직무태만죄(248), 물질적부담을 시킨죄(249), 국가기관권위훼손죄(251),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252조), 사건과장, 날조죄(253), 비법석방죄(254), 부당판결, 판정죄(255),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죄(256), 관리일군뢰물죄(257)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353~359.

표 Ⅲ-5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 조항

불량자적행위죄(258), 패싸움죄(259), 매음죄(261), 음탕한 행위죄(262), 직권참용죄(263), 미신행위죄(267), 미신행위조장죄(268), 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죄(274)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359~362.

표 Ⅲ-6 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단속대상

( ): 조항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9),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설비, 자재, 생산물을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 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는 행위,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가격을 어기는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를 비법적으로 빼내거나 승인없이 음식물 매대 같은 봉사시설을 갖추어놓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으로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 농기계, 부림소관리를 바로하지 않거나 비료, 농약 같은 영농물자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외화벌이기지를 꾸리지 않고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관리 질서를 어기는 행위, 비법적으로 전열기를 쓰는것 같은 전기를 랑비하는 행위, 종업원의 출퇴근정형을 제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계획된 로력을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는 행위,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 점을 치는 것과 같은 미신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날조, 외곡하거나 요언을 퍼뜨리는것 같은 행위,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류포하거나 콤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 라지오가 달린 록음기의 등록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패싸움을 하거나 또는 녀성을 희롱하거나 남의 옷에 더러운것을 발라 놓는 것 같은 불량자적행위, 장사,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밖에서 물건을 팔

고 사는 행위, 비법적으로 밀수, 밀매하거나 허가없이 국경을 넘나드는것 같은 행위, 도적물건을 숨겨주거나 또는 팔아주거나 사는 행위,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 인쇄설비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인민반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륜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또는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는 것 같은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 산림을 람도벌하는 행위와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충고를 주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반항, 모욕하는것 같은 행위(40)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130~133.

위의 <표 Ⅲ-6>에서 보듯이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감찰 직무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안원들은 이러한 다양한 직무를 활용하여 뇌물을 받게 된다. 특히 노동단련대는 감찰과에서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가게 된다.

> "감찰과 사람들의 직무가 뭐냐면 무직업자, 일탈행위 하는 이탈자, 그 다음에 깡패 행위, 패싸움, 이런 행위들을 형벌 적용을 안 하고 규정에 의한 노동단련대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장사를 명목으로 해서 직장이탈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단속해서 단련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서 자기가 성과를 얻어먹는 것 보다는 …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때문에 돈은 다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무마시켜 주죠."(사례 3)

북한 내 부패현상을 인권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정권리중심으로 현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특정 사안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명백하게 여행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을 근거로 여행증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동을 통제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을 통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Ⅲ-7 이동권 관련 처벌 근거조항

분류	범죄명	관련법률	양형
반국가범죄	조국반역죄	형법 제62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반민족범죄	민족반역죄	형법 제67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법국경출입죄	형법 제233조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인민보안단속대상	비법적으로 밀수, 밀매하거나 허가없이 국경을 넘나드는것 같은 행위	인민보안단속법 제28조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밀수, 밀매하거나 허가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인민보안단속대상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공동생활질서를 어긴 행위	려행질서를 어긴행위	행정처벌법 제167조	려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하였거나 국경을 넘나든다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132, 178, 324, 326, 355.

표 Ⅲ-8 거주이전자유권 관련 처벌 근거조항

분류	범죄명	관련법률	양형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죄	형법 제149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분류	범죄명	관련법률	양형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부동산관리질서위반죄	형법 제140조	부동산관리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인민보안단속대상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단속법 제33조	인민보안기관은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일반행정질서를 어긴 행위	거주, 퇴거, 숙박, 결혼등록질서를 어긴행위	행정처벌법 제132조	거주, 퇴거, 숙박, 결혼등록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돈 또는 물품을 받고 비법적으로 숙박을 시킨 경우에는 2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132, 172, 339, 341.

표 Ⅲ-9 외부 녹화물 관련 처벌조항

분류	범죄명	관련법률	양형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류포죄	형법 제193조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같은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을 반입하였거나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퇴폐적인 행위를 한죄	형법 제194조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차매체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형법 제195조	반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인민보안단속대상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류포하거나 콤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지오가 달린 록음기의 등록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단속법 제22조	인민보안기관은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류포하거나 컴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지오가 달린 록음기의 등록리용 질서를 어기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131, 348~349.

표 Ⅲ-10 휴대전화 관련 단속조항

분류	범죄명	관련법률	양형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류포죄	형법 제193조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을 반입하였거나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 348.

표 Ⅲ-11 장사단속 관련 조항

분류	범죄명	관련법률	양형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인의 상적행위죄	형법 제110조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량정질서위반죄	형법 제158조	량곡수매, 수송, 가공, 수급,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의 밀주죄	형법 제160조	개인이 장사할 목적밑에 량곡으로 술, 맥주를 만든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죄	형법 제125조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였거나 조직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상품판매질서위반죄	형법 제157조	상품을 안면, 무더기 또는 그 성질을 고쳐 팔았거나 혹은 값을 속여 팔았거나 상점매대를 리용하여 개인의 물품을 판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량정질서위반죄	행정처벌법 제158조	량곡수매, 수송, 가공, 수급,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334, 337, 342~343.

사법처리과정에서 법기관 인력들의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북한의 양형기준에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70]가 포함되며, 많은 공로를 세운 자에 대해서는 양형을 가볍게 하도록 하는 규정[71]도 부패개입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가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재량권도 갖고 있다.[72] 또한 사회적교양 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범죄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이는 주로 특정계층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뇌물 등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73] 또한 특사와 대사라는 제도를 통한 형벌면제, 형기단축 및 만기전 석방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의 여지가 있다. 북한당국도 법기관 인력들의 부패현상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형법에 포함시키고 있다.[74]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난 이후 형식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 시장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비사회주의 활동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당국이 비사회주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편으

70- 형법 제38조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 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 같은 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71- 형법 제40조 형벌량정을 가볍게 보는 조건, 7.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72- 형법 제42조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 수 있다.

73- 형법 제49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
형법 제50조(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 효과)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한다.

74- 형법 제254조(비법석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로 법제화를 강화하였다. 배급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붕괴하여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형적 배급시스템의 작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통제기제 실행 관료들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강화된 법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시장화와 이에 따른 비사회주의 확산과 이를 통제하려는 법제화의 강화는 강권기제 실행 관료의 부패행위를 유혹하는 활동 영역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개별법령에는 해당 관료들의 지도통제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75]

북한당국은 뇌물수수 등 부패현상을 저지하기 위해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다. 형법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중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와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들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벌법을 통해서도 횡령, 직권남용, 뇌물죄 등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의 기형적 작동, 시장의 확산, 통제기제의 강화라는 구조적 요인 속에서 4장과 5장에서 보듯이 부패행위는 감소되기보다 오히려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Ⅲ-12 부패 관련 처벌조항

범죄	범죄명	처벌근거법률	처벌내용
뇌물	뢰물죄	형법 제242조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뢰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관리일군뢰물죄	형법 제257조	관리일군이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뢰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은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75-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범죄	범죄명	처벌근거법률	처벌내용
뇌물	뢰물행위	행정처벌법 제138조	뢰물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중계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직권남용	직권람용죄	형법 제246조	관리일군이 리기적목적으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263조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직권람용행위	행정처벌법 제136조	관리일군이 세도와 전횡을 부렸거나 특전, 특혜를 요구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횡령	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죄	형법 제274조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리득금을 국가 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횡령행위	행정처벌법 제140조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pp. 156, 173, 357, 359, 360, 362.

이상에서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법제화와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통제를 매개로 한 부패개입 유발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북한은 공식 법률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포고문'을 내려 법을 초월하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제적·사회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포고문에 따른 통제기제의 작동과정에서 부패개입 가능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부패행위가 확산되면 이를 통제하는 기관의 위상과 그 기관 내 부서별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난 이후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법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법기관의 역할 확대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단속 회피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뇌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감찰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역할 확대는 부패의 확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법기관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 재판소가 있다. 이것도 선호 순위가 있는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경제난 이후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기관으로 보위부를 인식하는데, 돈과 결부된 권력은 검찰이 가장 세고 부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 일반 뇌물행위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일반 보안원은 자기 분야를 벗어나도 감찰 통제를 해서 뇌물을 챙길 수 있지만 보위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보위부 관할의 범죄 이외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제한되어 폭넓게 챙길 수 없다. 일반 사회 구조 속에서 뇌물행위와 연관시키면 검찰, 인민보안부, 보위부, 재판소의 순서로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도 보위부가 받아들이는 뇌물 액수와 도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뇌물 액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도 보위부에서 하나 챙긴다면 도 검찰에서는 세 개를 챙기고 있다. 검찰은 일체 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검찰의 감시 역할에서 경제난 이후 두드러진 특징은 외화 관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법적 통제부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아

래 형법상으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형량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장마당 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면서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북한이 이를 법률로 규제하려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 조항만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검사들 자체가 그러한 역할 공간을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다.(사례 7)

> "예를 들어 공장에서 국가에서 계획경제에서 보장해 주는 게 없으니까 지배인은 그 직원들 1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죠. 임대방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검사가 경제감찰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검사한테 나눠 주는 거죠. 검사한테 고이면 여러 가지 제재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검사가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은 국가 정책을 위해서 한 거다 하면서 무마를 해 주는 거죠. 얼마 전 인터넷상으로 나무를 팔았던 사람을 공개처형 했던 게 보도되었는데, 이 사람이 1년 전에는 애국자가 됐다가, 왜 1년 후에는 처형이 되는 그거는 검사의 중요한 잣대로 판단이 되는 거죠. 검사한테 잘못 표적이 돼서 찍히면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무역을 많이 해서 100만 달러를 벌어서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먹은 게 없느냐 …. 그 사람이 그만한 일을 하려면 검찰한테 들어가는 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검찰이 이제 정책 관여 범위가 확장이 됐어요. 검찰이 사법처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가 다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돌격대 활동, 상무 활동에도 다 관여하는 거죠."(사례 7)

이와 같이 검사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부패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검찰감시법에 따라 검찰은 인민보안기관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검찰감시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뇌물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감시법〉
제8조: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현상**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는 재정, 설비, 물자, 품질 감독기관을 비롯한 행정경제부문의 감독통제기관이 검열, 단속, 통제와 처리 사업을 법의 요구대로 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수사관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이 한다.

그런데 경제감찰의 경우 보안기관과 검찰의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경제감찰과정에서 검찰보다 보안기관이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 "보안기관의 경제감찰 80% 정도가 검찰의 경제감찰과 똑 같습니다. 차이점은 우리는 정상적인 검열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단속이 안 됐다고 해도 뭐가 좀 잡히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서 검열을 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제기가 들어와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차이점이예요."(사례 3)

이와 같이 경제난 이후 보안기관에서 경제감찰과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 "경제감찰에서도 예심도 하고 수사도 합니다. 감찰일꾼이라는 게 다 수사원이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의료사고 같은 거 …. 의료사고에서 사람 죽인 거는 사고인가 의료사고인가 해서 그런데는 경제감찰이 들어가거든요. 수사과가 안 들어가고 …. 또 국가 전기를 자기네 집으로 끌어오다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사례 3)

Ⅳ.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부패 실태

1. 부패와 법 앞에 평등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앞에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수의 인권협약과 각 국의 국내법으로 명시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법제도 맥락하에서 부패는 "사적인 사법인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부적절 혹은 불공평한 사법결정을 초래하는 행위(acts) 혹은 부작위(omissions)"로 규정될 수 있다.[76] 즉 부패는 재정적 혹은 물질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직업적 야망 강화와 같은 비물질적 이익을 포함하여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뇌물, 갈취, 협박, 영향력 행사, 사법절차 남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법기관의 부패는 판사, 경찰, 검사 등 사법절차의 각 개별 단계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매우 광범위한 행위들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판사는 범인의 유죄판결로 연계될 수 있는 증거들을 배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받게 될 수 있다. 법원 직원들은 사건을 기각하거나 혹은 신속한 심의처리를 위해 우호적인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증거를 변경하도록 매수될 수 있다. 즉 보안기관원이 단속 단계에서 뇌물을 받은 대가로 특정행위를 묵인해 줄 수 있다. 검사는 사건을 기소처리하지 않거나 증거를 불공평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사법절차에 관련된 인력들이 부패에 연관되면, 사법절차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패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due process)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76-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p. 35.

정치권력이 사법인력의 임명, 임금 및 처우관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위협, 협박, 뇌물을 통해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 재판의 독립성, 권한, 공평성 등이 사실상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의 영향력은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과제에서는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패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법절차에 관여된 인력들은 실제 본인들의 업무사안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공평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impartiality)은 인권실현을 위해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판사 및 사법인력의 임명이 자격요격, 도덕적 책임감 및 권한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경우 사법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사법제도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들이 보호되지 못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들로는 증언청취 및 판결공포에 대한 권리, 평등한 수단, 무죄추정, 강제적 자기시인 금지, 기소내용을 고지 받을 권리, 변호를 준비할 적절한 시간 및 시설, 법률지원을 받을 권리, 목격자를 조사할 권리, 통역을 받을 권리, 항소권, 청소년 피의자의 권리, 법 규정 없이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적용금지 원칙, 법의 부적절한 시행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들을 들 수 있다.[77] 이러한 절차적 보장이 적절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패는 이러한 요소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77-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p. 38.

가. 단속단계의 부패행태

사건이 재판에 송치되기 전에 부패행위가 발생할 때 부패는 사법정의 실현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부패가 이루어진다. 특히 법 집행 단계에서 경찰이 한쪽 당사자를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기소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의 사실을 왜곡하려하는 경우이다.

부패한 경찰이 적절한 근거 혹은 영장 없이 개인을 체포하고 방면을 위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자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즉, 부패가 개입되면 개인의 자유와 안보권이 침해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단속 목적이 '비사회주의 현상'을 적발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안원들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임의로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별한 죄책감이나 처벌 없이 보안원들은 개인의 착복을 위한 뇌물수수의 수단으로 단속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파악되는 부패행위는 보안기관원이 단속 후 뇌물을 받고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차적으로 비사회주의 행위가 단속되더라도 뇌물을 주고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문건을 작성하지 않는 행태들이 파악되고 있다.

보안기관들의 '비사회주의' 단속은 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2인 이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적인 단속의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아예 문건을 작성하지 않고 뇌물을 수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단속이 규찰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하기 쉬우나, 검찰소, 재판소,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구역당 등 연합으로 구성된 '상무조직'에 의해 단속되면 뇌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78]

인민보안단속법 등에 근거하여 단속하는 '비사회주의 행위'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지역의 노동단련대에 보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속원들이 개인적으로 물품이나 현금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가는 처벌을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보안기관원들이 살아가는 방편으로 뇌물을 받기 위해 단속하며, 돈이 없으면 노동단련대에 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79] 특히 뇌물은 단속 즉시 주어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80]

또한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보안원들이 받는 돈이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인지 혹은 뇌물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급액수가 적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어 보안부에 보고되지만, 고액일 경우에는 기록되지 않고 뇌물로 유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81] 일부에서는 뇌물을 주고 확인서를 받았으며, 지급한 액수도 단속원의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증언도 있다.[82] 단속과정에서 보안기관원이 돈을 요구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한 예로 함북 무산에서 도강자를 단속한 경비대 군관이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83] 단속기관원에게 주는 뇌물의 종류도 기존에는 담배나 돈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약'(얼음)도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84] 그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78- NKHR2011000118; NKHR2011000020; NKHR2011000238.

79- NKHR2012000103; NKHR2012000116.

80- NKHR2012000132; NKHR2012000024; NKHR2012000034; NKHR2012000065; NKHR2011000230; NKHR2011000111; NKHR2012000090; NKHR2012000129.

81- NKHR2012000071.

82- NKHR2012000158; NKHR2011000219; NKHR2011000175.

83- NKHR2012000024.

84- NKHR2012000118.

한국에 통화한 경우와 같이 엄중한 사항은 단속원들이 임의로 뇌물을 받고 처벌을 면제해 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85]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액의 뇌물을 단속원에게 줌으로써, 남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계통화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86] 이러한 부패행태는 공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조사단계의 부패행태

다음으로 사건이 성립되어 조사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제받거나 형기를 단축하고자 시도하는 부패행위이다. 조사단계에서 뇌물을 주고 비판서를 작성한 후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87] 북한에서도 재판 이전, 특히 예심과정에서 예심원들이 돈을 받고 적용할 형기를 낮추어 주는 부패형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예심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의 경우 예심원이 탈북횟수 혹은 중국에서의 행적, 탈북의도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심지어 예심원은 뇌물을 받고 피의자의 체포시기 및 구금기간을 허위로 변경하기도 한다. 혹은 밀수·밀매의 경우에도 뇌물을 받은 예심원이 밀매매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피의자가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문건을 작성해주기도 한다. 개인 간의 분쟁 즉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뇌물로 인한 예심원의 문건조작이 특정당사

85- NKHR2012000139; NKHR2011000163; NKHR2012000106; NKHR2012000010.

86- NKHR2012000015. 2011년 3월 한국에 있는 언니와 연락하다 탐지대에게 발각되어 벌금 6만 원과 담배 2막대기를 주고, 이후 담당 보안원에게도 4만 원을 뇌물사업으로 지급하였다.

87- NKHR2011000197.

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 뇌물을 공여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건을 작성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권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 "그 사람이 7년 받았습니다 얘기해도, 신병 확인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7년에서 5년 내지 4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미 드러난 사건은 예심과정에서 형기를 줄여서 문건을 올리는 방식이고 그러면 동의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쌀이나 몇 가마니 주거나 돈을 좀 찔러주죠."(사례 3)

증언자는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동료 여성 수감자 000이 녹화물을 본 혐의로 같이 구금되어 있었다. 그런데 뇌물을 바쳐 실형이 아닌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되었다고 한다.[88] 또한 도강을 기도하다 발각되어 보안서에서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조사받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군대에 10만 원, 보안서에 50만 원을 주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89]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북한이탈주민 ○○○은 보위부 구류장에서 300만 원을 주면 문건 하나 남기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보위부장 동지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떤 뜻인지 알아들으며 바로 혹은 다음날 만날 수 있도록 호출이 온다고 한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간 사례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다.[90]

예심원들은 이와 같이 사건 조작 방식 이외에도 아예 사건을 송치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부모가 뇌물을 주자 피의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

88- NKHR2012000052.
89- NKHR2012000020.
90- NKHR2012000036.

서를 발급받아 조사과정에서 석방한 경우도 발견된다.[91]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당 창건일 등 주요 기념일에 특별배려 지침을 하달할 경우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92] 그러나 중앙당 검열 등 시기가 좋지 않거나 특별 단속의 행위에 연루될 경우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거나 덜기 위한 문건조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2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형태는 뇌물 공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립 여부 또는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된다는 점에서도 다른 개인의 안보권과 공평성의 원칙을 침해하게 된다.

다. 재판단계의 부패행태

재판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패행위는 우호적 판결과 보석 혹은 집행유예를 획득하기 위해 판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판사의 임명과정에서 뇌물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북한의 경우에는 판사배정 보다는 판결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중심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형기를 단축하기 위해 판사에게 뇌물을 바치는 부패행위이다.[93] 또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판사에게 돈을 주는 부패행위

91- NKHR2011000155.

92- 증언자는 강제송환되어 예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화 3년형을 예상하였으나, 2010년 당참건기념일에 각 보안서 별로 1명씩 배려를 주라는 지시에 의해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 6개월로 처리되었다. NKHR2011000186.

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 형법 제51조(집행유예 적용 조건과 기간)에서 집행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5년까지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 1. 3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 2. 3년 이상 5년까지 로동교화형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실제로 뇌물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언도받은 사례가 다수 파악되고 있다.[94] 2007년 증언자의 부인이 밀수건으로 인해 노동교화형 4년 6개월을 언도받고 교화소에 가야 했으나 뇌물을 주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95]

재판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고 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패행위 형태이다. 증언자는 2010년 CD-R 유포 행위로 후창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교화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판사와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어 자살을 기도하도록 각본을 짰고 결과적으로 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96] 또한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줌으로써, 예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들도 다수 파악된다.[97] 증언자는 녹화물문제로 2006년 혜산시 인민재판소에서 교화 3년을 언도 받았으나 시 보안서를 통해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

93- NKHR2011000244.

94- 증언자의 어머니는 강제송환 이후 2008년 재판결과 교화 5년형에 해당하였으나, 사전에 뇌물 200만원을 주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KHR2011000187.

95- NKHR2012000083.

96- NKHR2012000074.

97- NKHR2012000156.

변호사가 “나이가 어려 다시 고려해보자”고 변호하였고 20분 토론 이후 노동단련형 1년으로 감형되었다.[98]

증언자는 2009년 청진시 신암구역 재판소에서 도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 등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동단련형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소 검사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뇌물이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99] 이와 같이 재판과정에서의 뇌물공여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관련자들에게 골고루 지급하여야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의자는 재판 이후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기는 하지만, 이 경우 형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100]

그런데 북한에서는 재판소에서 정식으로 행하는 일반재판과 형사소송법 제286조(현지재판조직)에 따라 공개재판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재판에서 형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도 뇌물과 관련이 있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재판 대상자 중에는 돈이 많은 범죄자들이 있다. 돈을 받고 형기를 줄여 줄 수 있는데, 만일 공개재판에서 형을 줄여주면 인민들이 나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개재판에서 형을 부과하지 않고 후에 돈을 받고 형기를 줄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담당보안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이다.(사례 11)

이상에서 보듯이 주로 뇌물을 통한 부패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고 형기가 감축되는 결과를 낳지만 뇌물을 주지 못할 경우 불균등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한 법의 보호 권리, 특

98- NKHR2012000032.

99- NKHR2012000077.

100- NKHR2011000242; NKHR2011000244.

히 비차별의 원칙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공평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라. 형 집행단계에서의 부패행태

형 집행단계에서의 가장 보편적인 부패행태는 재판 이후 허약 등 질병을 이유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병보석으로 석방하거나[101] 혹은 모범적 수감을 근거로 형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형기단축의 경우 생활을 모범적으로 할 경우 해당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원의 자의적 판단이 게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형집행 면제는 형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북한 형법 제54조(형기단축 및 만기 전 석방)에서 형기를 단축하거나 만기전에 석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 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 줄 수 있다.
>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 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 할 수 있으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 할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과 별도로 북한 내에서는 인민보안단속법, 행정처벌법 등을 통해 법률상의 형벌이 아닌 노동단련, 무보수 노동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강제노동을 실시하는 구금

101- NKHR20120001555; NKHR20120001130; NKHR20110001944.

시설이 노동단련대이고 인민보안부 감찰과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노동단련대 수감 여부, 수감기간, 수감 후 수감기간 단축 등에 대해 뇌물이 오고갈 가능성이 높다.

증언자의 오빠가 무직으로 평북 피현군 노동단련대에 1개월 수감되었는데, 노동단련대 대장에게 뇌물을 주고 1주일만에 풀려났다고 한다.[102]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11월 남편이 한국에서 다른 이에게 전해주라고 보내준 돈을 넘겨준 혐의 및 휴대전화 사용(한국과 연락) 혐의로 양강도 집결소에 7일간 구금되었는데, 증언자는 중국돈 2,000위안을 뇌물로 주고 일찍 풀려났다.[103]

그러나 중앙검열 등으로 인해 뇌물을 제공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남편이 파철을 중국에 판 혐의로 노동교화형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병보석을 받기 위해 보안서에 돈 20만 원을 써보았으나, 당시 중앙당에서 검열이 내려와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병보석 받지도 못했다고 한다.[104]

또한 형 집행단계에서 뇌물을 줌으로써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동단련대의 수감자가 대열지도원에게 월 1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집에서 생활하다가 15일에 한 번 정도 노동단련대에 나가 얼굴을 비치는 것으로 6개월 형기를 마친 경우도 파악된다.[105] 다른 경우에는 뇌물을 주고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지 않는 대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노동단련대 생활을 마친 경우도 발견된다.[106] 뇌물을 주고 노동단련대에 나가지 않고 조기

102- NKHR2012000018.

103- NKHR2012000112.

104- NKHR2012000116.

105- NKHR2012000134. 뇌물 60만 원 중 30만 원은 대열 지도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30만 원은 단련대의 과제수행 및 식량구입으로 충당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퇴소한 경우에도 문건상으로는 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107]

2. 부패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

표현의 자유는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모든 종류의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 혹은 모든 종류의 매체를 통해 정보나 의견을 구하거나 받을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 정보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도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논평 16'은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의 존중권과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의 개입은 법률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방해가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개입이 국제인권규약의 목적에도 부합해야 하며 특정상황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입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관여를 허가하는 권한도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입에 대한 사전고지도 직접 밀봉된 상태로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당국은 정보 유통이 체제와 정권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려는 통제를 강화하

106- NKHR2012000046; NKHR2011000231.

107- NKHR2011000186.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 영상물 등을 통해 외부 정보에 접하는 비사회주의 행위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사회주의 행위의 단속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속권한을 가진 보안원 등 단속원은 단속을 활용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일반주민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단속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혹은 인권침해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북한 TV에 나오는 각 채널 편성에서도 뇌물행위가 수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통상 8시 뉴스를 고정적으로 방영하는데, 최고지도자가 TV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TV에 한 번 나가는 자체가 간부들이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TV에 나가기 위한 각 권력 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예를 들면 지방 당 책임자가 지방 생필품 공장을 건설하였는데, 이를 TV에 방영하여 지도자의 눈길을 끌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에 근무하는 특파 기자와 중앙에서 기자를 초빙해온다. 그래서 식량도 주고 돈도 주어 촬영시간을 길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찍었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실제 TV 방영시간에 몇 초 방영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편집부장한테 뇌물을 주고 TV에 조금이라도 오래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사례 7) 이러한 사례는 일반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방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 왜곡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 휴대전화 사용 단속과 부패행태

북한의 휴대전화(북한에서는 손전화)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중국의 휴대전화와 북한당국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북한의 휴대전화 등 2종류가 있다. 중국 휴대전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이나 심지어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밀수·밀매, 도강중개, 송금중개 등을 위해서 중국사업자와 통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휴대전화 사용은 북한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 북한 내 휴대전화는 외국 통화가 차단되기 때문에 외부연락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으나, 음악 혹은 영상물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108] 그러나 명백하게 휴대전화 사용단속은 유엔 자유권협약위원회가 규정한 기준과 원칙을 위반하는 사안이다. 탐지기를 소지한 단속원들에게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기는 압수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뇌물의 액수는 아래 <표 Ⅳ-1>과 같다.

표 Ⅳ-1 휴대전화 단속관련 뇌물사례

단속연도	단속지역	뇌물 금액	특이사항	증언번호
2010	무산	100만 원	-	NKHR2012000021
2007	무산	100만 원	-	NKHR2012000012
2009	혜산	70만 원	-	NKHR2012000022
2009	혜산	50만 원	중국돈 벌금 50만 원 별도 납부 - 영수증수령	NKHR2012000046

108- NKHR2012000102.

단속연도	단속지역	뇌물 금액	특이사항	증언번호
2011	혜산	100만 원	-	NKHR2012000060
2010	혜산	150만 원	-	NKHR2012000044
2011	혜산(함남 신천군 거주)	200만 원	남한돈	NKHR2012000004
2009	회령	중국돈 500위안	국가안전보위부소속 27국 단속	NKHR2011000175
2009	혜산	50만 원	중국돈 적발	NKHR2011000219
2010	온성	150만 원	-	NKHR2011000163

인신매매(도강중개), 한국 등과의 연락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와의 거래로 돈을 갖고 있는 층이므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전파감독국에서 벌금 처리한 후 보안원에게 넘기면 담당 보안원이 또 뇌물을 요구한다고 한다.[109] 그런데 '109상무' 등 그룹으로 단속할 경우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안원과 사전에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보안원들도 발각되면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일시적으로 잠적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 "사람들하고 관계가 친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는 뇌물로 인해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위

109- NKHR2012000043. 이러한 벌금 규정은 행정처벌법에서 발견되고 있다. 행정처벌법상 행정처벌 종류의 하나가 '벌금'이다. 이에 대해 행정처벌법 제19조(벌금적용대상과 방법)에서는 "벌금은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물질적 자극을 줄 목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벌금적용절차와 방법은 벌금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다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상무나 이런 사람을 내려 보내서 조사를 진행해요. 그런데 조사가 내려올 때 자기 안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발각되면 자기도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미리 정보를 줘서 회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동안에는 잠적해 있으라는 암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검열이 내려와도, 군 감찰에서 관할하게 돼 있어도 단속이 어려워요. 효과는 못 보지만 사회적인 기강을 잡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사례 3)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대해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중 뇌물과 벌금을 준 사례와 처벌 및 비처벌 유무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Ⅳ-2>에서와 같이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제받은 경우와 벌금을 부담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0년에는 벌금사례가 높았으나, 2011년과 2012년으로 갈수록 벌금납부보다 뇌물공여로 처벌을 피하고자한 사례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면접조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벌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동시에 단속원에게 별도로 뇌물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Ⅳ-2 휴대전화 사용관련 처벌 실태

(단위: 백분율((각 건수/응답건수)*100), 건)

면접 년도	면접자 총인원	응답 건수	비처벌				처벌				처벌 무응답 (건)	처벌 무응답 (%)
			뇌물 (건)	뇌물 (%)	기타 (건)	기타 (%)	벌금 (건)	벌금 (%)	기타 (건)	기타 (%)		
2010	151	75	10	13.33	2	2.67	16	21.33	26	34.67	21	28.00
2011	230	112	26	23.21	6	5.36	14	12.50	42	37.50	24	21.43
2012	172	93	30	32.26	6	6.45	10	10.75	26	27.96	21	22.58
합계	663	280	66	-	14	-	40	-	94	-	66	-

북한 휴대전화에 남한 노래나 영상물을 담아 두었다가 단속에 걸려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공개처형 현장 등에서 영상촬영을 금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지참을 불허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110] 2010년 6월 회령시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는 보위지도원을 현장에서 살해한 형제 2명을 공개처형하기도 하였다.[111]

나. 녹화물 시청 및 유포 관련 단속과 부패행태

중북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등 외부의 영상물들이 복사되어 유통되는 현상들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CD-R, USB 등을 볼 수 있는 중국산 전자제품들이 중고 혹은 저가로 대량 보급되면서, 외부영상물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접근이 이전보다 쉽게 되었다.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외국영상물보다 이해가 쉽다는 점에서, 남한영상물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훨씬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 드라마 등 영상물의 유통과 시청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비사회주의 그룹빠' 혹은 '특별상무조직' 등을 통해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속되면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외부영상물 단순시청자와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차이를 보이며, 대규모 유통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뇌물의 액수도 이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영상물 유통에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위안화 혹은 미국 달러 등 외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뇌물도 외화로 제공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도 외부영상물 관련 처벌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황해남도 신천과 같이 국경

110- NKHR2012000126.

111- 본 사건은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NKHR2012000168; NKHR2012000106; NKHR2012000159 등.

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중국 녹화물 시청의 경우에도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며, 남한영상물인 경우에는 시범적인 경우 공개처형에 처해지기도 한다.[112] 반면 청진에서는 음란물이 아닌 경우 남한영상물 시청 시 노동단련대에, 대량 유포자의 경우에는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113]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서 녹화물에 대해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중 뇌물과 벌금을 준 사례와 처벌 및 비처벌 유무는 다음과 같다.

표 Ⅳ-3 외부영상물 시청 및 유통 관련 처벌 실태

(단위: 백분율((각 건수/응답건수)*100), 건)

면접 년도	면접자 총인원	응답 건수	비처벌				처벌				처벌 무응답 (건)	처벌 무응답 (%)
			뇌물 (건)	뇌물 (%)	기타 (건)	기타 (%)	벌금 (건)	벌금 (%)	기타 (건)	기타 (%)		
2010	151	58	8	13.79	4	6.90	4	6.90	37	63.79	5	8.62
2011	230	227	21	9.25	4	1.76	2	0.88	135	59.47	65	28.63
2012	172	282	21	7.45	2	0.71	1	0.35	230	81.56	28	9.93
합계	663	567	50	-	10	-	7	-	402	-	98	-

위의 <표 Ⅳ-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와 비교할 때 외부영상물 시청 및 유포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2010년에 비해 전체 적발 건 중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제받은 경우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한영상물 유포가 확산되면서 남한 말씨나 옷차림을 따라하는 경우에 대한 거리단속도 강화되었듯이 북한당국이 남한영상물 유포를 주요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보다

112- NKHR2012000004.

113- NKHR2012000003.

강하게 단속·처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자매체들의 발달로 인해 단속원들이 전기를 차단하고 불시에 숙박검열 혹은 가택수색 등을 통해 외부영상물 시청을 적발하던 것이 더 이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SB를 사용함으로써, 불시단속에서도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휴대전화나 영상물 시청은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본인 자체의 처벌문제로 국한된다. 따라서 뇌물 제공 여부에 따라 처벌의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대부분 시민적·정치적 권리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와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을 저해한다. 아울러 단속원과 주민 모두 권리인식과 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부패와 이동 및 거주이전의 권리

유엔 자유권협약위원회 '일반논평 27'은 이동의 자유원칙(the Principle of liberty of movement)이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Art.12)에 대한 용인 가능한 제약이라도 이러한 용인이 이동의 자유 원칙을 무효화시켜서는 안되며, 다른 권리 보호 등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동의 자유는 국내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국가 내에서 강제유민상태(forced internal displacement)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범죄처벌의 형태로 가족단위의 강제추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될 수 있다.

자유로운 출국(외국여행)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중보건, 공중도덕,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권리의 제약이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국제인권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주요 요소들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비록 법률에 권리 제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들의 자의적인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기준과 처리범위를 자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들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할 원칙으로는 필요성 확인(the test of necessity) 및 비례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다. 즉 출입국 자유의 제약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혹은 균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특정개인이 '국가기밀'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하거나, 특별허가증 없이 개인의 국내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반면 국가안전상의 이유로 군사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거나, 특정지역에서 원주민이나 소수자들의 거주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의 정주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여행지를 지역당국에게 승인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제도와 이러한 문서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나 관행들에는 담당기관들에 대한 신청자들의 접근 어려움 및 필요문건에 대한 정보 부재 등의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

허가와 관련하여 고용주 혹은 가족구성원들의 보증증명서 요구, 여행경로 및 여행목적에 대한 상세한 언급, 허가증발급에 소요되는 고비용, 증명서 발급절차의 불합리한 지연 등도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자국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권리는 난민들의 자발적인 귀환(voluntary repatriation)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사회통제를 위해 여전히 여행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행증 제도가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계획경제에 따른 식량배급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왔다. 북한당국은 '려행질서' 유지차원에서 이동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행정처벌법 제167조(려행질서를 어긴 행위)에서 "려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하였거나 국경을 넘나든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 국가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근무지에 따라 배정하고 개인 간의 거래는 불법화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사실상 중앙배급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으면서 개인 간의 사적거래에 주택사용권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과 현실사이의 괴리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이동 및 거주 관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혹은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발급을 위해 증명서 담당기관원 및 단속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 또한 증명서 발급을 중개하는 개인들도 활동하고 있으며, 증명서가 역전이나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14]

114- NKHR2012000126.

가. 여행증 발급 관련 부패행태

북한은 여행증 제도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여행질서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증과 여행질서에 대한 제재는 업무와 질서를 단속하는 주체의 부패행위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여행질서와 이동은 경제난 이후 생존을 위한 유동이 주류라는 점에서 이동의 허가 유무는 생계, 특히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능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 행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증 발급과 관련된 인민위원회 2부가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선호부서가 되었다.(사례 3)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중 뇌물을 준 유무는 다음과 같다. 주목할 점은 여행증 발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비율이 2010년과 비교할 때 2011년과 2012년에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Ⅳ-4 여행증 발급관련 뇌물 실태

(단위: 백분율((각 건수/발급경험(유))*100), 건)

면접년도	면접자 총인원	응답건수	발급경험 (유)	비용발생		비용발생 외	
				건	%	건	%
2010	151	100	69	32	46.38	37	53.62
2011	230	114	90	63	70.00	27	30.00
2012	172	77	61	46	75.41	15	24.59
합계	663	291	220	141	-	79	-

일부는 여행증을 발급받으려면 어차피 관련부서에 뇌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행증 없이 기차 승무원과 단속원에게 돈을 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115] 특히 도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여행증 발급 비용이나 뇌물이 비슷하므로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으려 한다. 열차 보안원에게 공민증을 제출하고 내릴 때 벌금 1,500원을 내고 공민증을 받아 내린다고 한다.[116] 한 증언자는 청진으로 장사하러 기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차장에게 북한돈 500~2,000원 정도를 주면 기차에 탑승하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렇지만 차장이 단속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뇌물)을 내는데 최하 500원 이상을 내야 한다. 그런데 행색이 초라한 사람에게는 적게 받고, 옷 잘 입은 사람에게는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하고, 단속조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117]

이상에서 보듯이 여행증 발급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출장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소수만 여행증을 신청할 뿐 거의 여행증 없이 돈을 내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열차 보안원과 안면이 있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장사를 다닐 때는 보안원 등과 관계를 형성해 놓고자 한다.[118] 여행증 없이 적발되어 금액이 적을 경우 벌금으로 처리되어 보안부에 바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고용으로 단속실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며, 금액을 많이 낼 경우 기록하지 않고 보

115- 여행증 없이 이동하다 발각될 경우 사람 1명당 500원, 짐짝 1개당 500원(구폐)의 벌금을 냈다고 한다. NKHR2012000013; 여행증 없이 발각되어 2,000원(구폐)을 지불하였다. NKHR2012000023; 2011년 함북 무산에서 여행증이 없는 경우 보안원이 1인당 500원을 받았는데, 짐에 대한 뇌물은 보안원이 부르는 것이 값이다. NKHR2012000043; 무산에서 청진까지 여행증이 없어 기차 보안원에게 3,000~5,000원(2008년 기준)을 주었다. NKHR2012000051.

116- NKHR2012000021.

117- NKHR2012000128.

118- NKHR2012000012.

안원 개인이 뇌물로 받는다.[119] 이러한 벌금 규정은 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되어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상 단속한 자의 처리는 제56조에서 단속한 보안원이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해당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법을 어긴 자료를 심의하고 노동교양,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려행질서, 교통질서, 빈차운행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직접 벌금을 물릴수 있다"(제5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안원이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일부는 공식적 벌금으로 처리하여 국고에 넣지만 공식 문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벌금으로 걷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단속원 개인이 착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증 관련 뇌물의 규모는 일반지역, 국경연선지역, 평양 등 방문지에 대한 여행증 발급의 엄격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120] 예를 들어 내륙 거주자가 탈북의 가능성이 많은 국경지역 여행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121] 평양방문을 위한 경우에는 일반지역보다 많은 뇌물을 주어야 한다.[122] 이는 관련자들이 특수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까다로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평양은 특권 도시로서 특수여행증이 통용되므로 평양에 가기 위한 여행증은 보다 많은 액수를 필

119- NKHR2012000071.

120- 2011년 8월 량강도 백암군 → 평안북도 대관군 여행증 발급 시 2부 지도원에게 5,000원을 주었다. NKHR2012000040; 2011년 청진에서 길주까지 여행증을 정식 절차 없이 발급받기 위해 15,000원을 바쳤다. NKHR2012000052.

121- 증언자는 2011년 3월 강원도 천내군에서 탈북을 위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할 때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기차승무원과 보안원 등에게 1인당 1만 원을 주었다. NKHR2011000196.

122- 평양지역 여행증을 발급받으려면 1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2000009; 사리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양에 외할머니와 오빠가 거주하고 있어 뇌물 25,000원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았다. NKHR2012000072.

요로 한다. 특히 평양에 가기 위한 여행증은 특수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승인번호를 받고 가지 않는 경우를 활용하여 뇌물을 받고 주는 방식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어디 가겠다고 할 때 출장이냐 개인 용무냐 친인척 방문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받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여기서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여행증명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하러 지금 평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승인번호 발급받을 아무런 여건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일부 지도원들한테 달러를 줍니다. 그럼 승인번호를 받아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중 하나를 받아가지고 가면 무사통과 되는 거예요."(사례 3)

여행증 이외에도 기차표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일반주민들은 뇌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반인이 중개인이나 관련실무자에게 뇌물을 주고 출장여행증명서나 군부대가족출장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기도 한다.[123]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여행증제도와 함께 숙박등록 및 숙박검열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는 경우 북한주민들은 숙박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숙박검열도 야간에 별도의 허가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생활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보호 요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숙박등록[124] 및 숙박검열[125]과 관련하여서도 뇌물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숙박검열이 외부영상물 시청 등 다른 단속의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123- NKHR2012000118.

124- NKHR2012000134.

125- 숙박 미등록 발각 시 10,000원 정도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NKHR2012000009.

나. 여권 발급 관련 부패행태

북한사회에서 외국 근무 등을 위해 공무여권이 발급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며, 가장 일반적인 국외여행 허가는 중국에 친척을 두고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기 위한 여권, 단기 무역거래 등을 위한 국경통행증 발급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친척을 둔 북한주민은 친척의 초청장이 있으면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허가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권이나 국경통행증 발급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주민들은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장사를 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 친척이 있어 초청장을 받더라도 중국을 방문한 이후 기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여권을 발급받기 쉽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서 뇌물이 통용되고 있다.[126]

이와 같이 여권발급을 보증하는 기관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증언자는 여권(중국)을 발급받기 위해 보위부 외사과에 3년간 뇌물을 바쳤다. 2008년 시작하여 북한돈 90만 원과 미화 200달러를 바치고 2010년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127] 또한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한 증언자는 2007년 도강증을 발급받기 위해 경흥군 보위부 외사과에 신청하였는데, 4년 후인 2011년에야 도강증을 발급받았다. 이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도강증을 신청하였지만

126- 2008년 중국 방문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현금 200달러를 뇌물로 바쳤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2008년 당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방문했던 주민들 중 많은 사람이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경우 담당 보위지도원이 책벌이나 철직을 당하기도 한다. NKHR2012000003.

127- NKHR2012000103.

발급을 받기 위해 북한돈 100만 원을 뇌물로 바친 것으로 파악된다.[128]

>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중국에서 초청장을 받아요. 초청장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인민보안부에 가요. 인민보안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걸 도장을 찍어줘야 되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100불이예요. 도장을 받아서 보위부로 올라가야 되요. 보위부로 올라가면 거기서도 똑같은 절차를 해요. 근데 거기는 액수가 200불로 올라가요. 그러면 오케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외무성에 가서 여권을 신청해요. 그럼 또 100불이 들어가요. 그럼 벌써 들어간 돈이 400불이 되죠. 여권이 다 되가지고 나오면 찾아가라고 해서 가면 여권을 주는데 그냥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인민보안부하고 보위부에 다시 가야 되요. 여권이 나왔다고 신고를 다시 해야 되요. 그러면 그걸 다 기록을 한데요. 그러면 거기 한 번 갈 때마다 그냥 빈 손으로 못 간데요. 그래서 뭐 여권받아 가면 적어도 또 50불씩 줘야 된데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500불 되는 거예요."[129]

또 다른 뇌물의 형태는 중국 등 해외파견 근로자로 나가기 위한 뇌물이다.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인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상향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북한인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가기 위해 뇌물이 필요하다. 뇌물을 안 주면 북한에서 중국에 근로자로 파견될 수 없다. 근로자로 중국에 파견되기 위해 3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못 주면 후불제도 통용된다고 한다. 나중에 북한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된다. 다만 후불제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선불제는 50~100달러 정도 주면 되는데 후불제는 그 배가 된다.

128- NKHR2012000062.

129-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요즘 중국 노동시장에 중국인 노동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큰 도시로 가버리니까 중소도시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구해요. 지금 단동 같은 데는 북한사람을 쓰잖아요. 이제 허드렛일 하는 사람도 못 구해가지고 북한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써요. 중국사람은 하루 일하면 주는 돈이 150위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사람은 60위안만 주면 되요. 그런데 계산해 보세요. 60위안이면, 한 달 20일 잡았을 때, 일하는 게 1,200위안이거든요. 1,200위안이면 북한 가서 최소한 3~4개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사람들 눈에 불을 켜죠. 지금 서로 중국에 오려고 그래요."[130]

이와 같이 국외여행 허가를 위해 사실상 뇌물을 요청받고 있는 북한의 현실은 특정인에 불공정한 특권 부여, 개인적인 공적 서류(personal official document)에 대한 접근의 제약, 국가를 떠날 자유권에서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평등과 비차별권, 이동의 자유권의 침해로 규정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날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경비대를 피해 국경을 넘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최근 북한당국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력으로 국경을 무사하게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경경비대에 뇌물을 공여하고 국경을 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131] 또한 국경경비대와 탈북을 희망하는 개인 간의 뇌물수수를 연결하는 중개인들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도강 중개인들은 '인신매매죄'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130-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131- "국경 경비대들이 단속을 하면 '입에 돈 좀 넣어 달라는 거구나'하는 인식이 박혀서 검열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고이게 된다. 현재 북한에서는 뇌물 먹여서 말 안 듣는 것이 없다."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챙기고자 이에 관여하게 된다. 이들은 상당수가 중국과 밀수·밀매과정에서 거래하는 중국인을 두고 있으며,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내부로 송금하는 돈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단속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기관 사람들과 평소부터 뇌물 공여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도강중개는 2가지 차원에서 인권에 동시 영향력을 갖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해외 여행의 자유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시키는 간접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북한여성들은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강을 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는 부정적 효과를 갖게 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자발적인 가족권에 배치된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음란 화상채팅,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 상품화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된다.

생계를 위한 중국 방문과정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상당 액수의 뇌물이 들어가는데 중국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뇌물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친척을 방문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은 세관에서 모든 짐을 검사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하는 세관원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렇게 압수한 물건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착복한다. 뿐만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온다고 돈까지 뺏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위층이나 보위부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은 세관원에게 상당한 규모의 물건들을 뺏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세관원들도 그렇게 압수한 물건과 돈을 자신이 혼자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들에게 상납하게 된다. 이는 확실한 줄을 잡

고 승진할 수 있기 위해 상납하는 것이다. 북한은 줄을 잘 잡고 못 잡고에 따라서 자기의 직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 "가끔 문서마다 검사할 때마다 돈 뺏잖아요. 그 문서는 잡아 안 걸리는 사람 없기 때문에 차가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물건을 뺏어요. 가장 적게 뺏긴 사람이 한 번 잘못 통과할 때마다 10불씩 줬다고 해요. 그런데 검문소가 7개 있어서 70불 뺏겼다고 해요. 현재 북한에서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걸 최대한 활용하여 뇌물을 받는데, 자신들이 잘사는 동시에 이를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 받은 뇌물의 상당 액수를 다시 상납하게 되요."[132]

이러한 세관의 갈취는 이동의 자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동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실제 뇌물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였을 경우 더욱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뇌물이 없으면 실제 범죄가 작아도 큰 것처럼 취급을 당하게 된다.[133]

다. 주택거래 관련 부패행태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한 행정처리 중 하나의 뇌물 고리가 입사증과 같은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택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같은 시군지역의 경우 주택을 음성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적 금지와 음성적 거래라는 현상 속에서 공식적 행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뇌물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다.

132-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133- NKHR2012000116.

주택 교환(큰 집 ↔ 작은 집) 및 매매, 증축 등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내지게 된다. 또한 관련 절차를 어기는 경우 집을 회수 당할 수도 있다. 주택관리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경영과 관리원과 이야기하고 뇌물을 준 후 입사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진다. 주택지도원 및 주택관리원에게 뇌물을 주면 입사증 재발급 등의 행정처리가 순조롭게 처리된다.[134] 집을 증축하는 것도 불법이나, 설계도를 주택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이 필요하다.[135]

위에서 보듯이 집을 매매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주민들 사이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없어도 된다는 증언과 함께 퇴거 처리를 위해 뇌물이 필요하다는 증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136] 주택뿐만 아니라 보안서에도 뇌물을 줌으로써, 주거지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안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이동증이 필요하며, 발급 절차는 인민반장과 동사무소 사무장의 수표(서명)를 받은 후 해당 보안서에서 도장을 받아 승인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이후 이사가게 될 지역 인민반장에게 신고하고 새 거주지의 보안서에 등록하여야 한다.[137]

증언자에 의하면 김정일이 원산시를 평양 다음가는 도시로 가꾸고 시민증까지 발급하겠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134- NKHR2012000110.

135- NKHR2012000110.

136- 보안서에 5만 원 정도 '뇌물사업'을 하면 퇴거 처리까지 해준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2000010; 보안원과 주택부에 2007년 매매 당시 고양이 담배 2막대기(1막대기 당 15,000원 정도)를 고였다. NKHR2012000043.

137- NKHR2011000169.

원산시에서 장애인, 무직, 범죄자 및 노인을 추방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에서 돈을 번 사람이 원산에 살기 위해 돈을 준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위해 시보안서 주민등록과 지도원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원산에 거주하려면 가족 1,000달러, 개인 600~7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때 뇌물을 주고 원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추방당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활용한다고 한다.[138]

최근 건설된 주택의 배정에 있어서도 간부들의 뇌물, 비리현상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K지식인연대 정보센터에 보내온 현지 통신원의 정보에 따르면 함경북도 무산군 간부들의 뇌물 비리를 조사하는 중앙당검열이 시작되었다. 무산군에서는 '150일 전투'기간 읍지구와 남산노동자 구, 상봉노동자 구에 17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사업소들과 군내주민들의 노력동원으로 완성하였다. 하지만 살림집 중 상당수는 집이 절실히 필요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간부자녀들과 간부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정되었다. 이들은 배정된 주택을 다시 뒷거래로 외화벌이기관이나 돈 있는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 돈은 배정받은 사람과 배정해준 간부가 나눠 챙겼다. 주택을 배정받은 노동자들 중 일부는 살림이 어려워 돈 있는 상인(장사꾼)들에게 웃돈을 받고 집을 바꾸다 보니 현재 아파트단지의 30% 정도는 주택배정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배정에서 제외된 무산군 철제일용품공장의 공무작업반원이 중앙당에 신소편지를 올려보내 중앙당 검열이 시작되었다.[139]

138- NKHR2012000134.

139- NK지식인연대, "北, 간부들의 뇌물비리현상으로 몸살," 『NK지식인연대』, 2009년 11월 23일, <www.nkis.kr>.

4. 부패와 비차별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8'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이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차별권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와 연계되어 있다. 차등적인 처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등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제인권규약하에서 정당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북한 내에서 이러한 비차별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출신 성분(토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예전보다 성분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간부 등 권력엘리트와 통제기제로 가기 위해서는 성분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에 따라 정치권력이 경제자본의 축적과의 연관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으로 인한 장애를 제거하려는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 문건 상 문제 있는 부분을 없애려는 부패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증언자는 "돈이 함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된다, 즉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돈으로 손을 써서 성분문건 등을 정리해 놓는다는 것이다.[140] 약간의 결함은 돈을 주고 문건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141] 그런데 뇌물을 주어도 토대 등의 요인으로 승진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의 할아버지는 해방 당시 중농이었는데, 땅을 모두 빼앗겼다. 그런데 오빠가 청진의대를 졸업하여 도 보안국 의사로 가고자 하였으나 서류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140- NKHR2012000060.

141- NKHR2012000081.

일반병원으로 발령이 나서 과정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 원장직을 원해서 한국 돈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고였지만 결국 승진하지 못하였다.[142]

> "보안기관의 주민등록처에는 자기 담당 기관이 있어요. 리나 공장에 담당이 있어요. 혼자서 200여 명의 문건을 조회를 하거든요. 하는 와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가 조금 잘못된 것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잖아요. 그 때 뇌물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뽑아서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내용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다는 문건은 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삼촌의 문건인 청진에도 있어요. 그럼 청진에 있는 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자료교환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런 자료교환은 대체로 형식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기입을 못해요. 근데 입당이나 하는 정도는 본인의 문건만 보지, 저기 청진까지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부사업 한다 하면 청진까지 신원조회가 되는 거죠. 그 때 만약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때 내가 잘못 기입을 했었네? 하면 그냥 끝나고 말아요."(사례 3)

이와 같이 최근 문건조작을 많이 하는데, 주민등록과 보안원에서 돈을 바치면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사실을 삭제해주는 등 문건을 고쳐준다. 문건을 조작해주다가 걸려도 담당 보안원은 별 하나 정도 삭감되는 정도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143]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뇌물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일본 식민지 시대 순사경험이 있는 가족의 경우 관련활동 미해명 처리, 탈북자는 사망처리, 범법자 취소처리 등의 문건조작은 담당보안원에게 뇌물을 주고

142- NKHR2012000045.

143- NKHR2012000128.

해결할 수도 있다.[144] 중국 연고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차별이 심각하였으나, 현재는 뇌물만 주면 문건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145] 그러나 6·25 치안대, 월남자, 국군포로, 정치범 등 일부항목들은 삭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뇌물공여를 통해 성분문건을 조작하는 행태는 성분에 근거한 차별이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차별의 근거를 부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당기관, 사법기관 등에 대한 진입은 토대가 나쁜 사람들에게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분 문건조작이 인권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144- NKHR2011000134.

145- NKHR2012000039; NKHR2012000128.

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부패 실태

1. 부패와 근로권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직업의 선호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 북한에서 직장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직접적 요소와 기본적 여건의 조성이라는 간접적 요소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직접적 요소이다. 이는 직장 배치를 관장하고 있는 관련 일꾼에 대한 뇌물 등 부패행위를 통해 좋은 직장에 배치 받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적 여건의 조성이다. 이는 뇌물 등 부패행위를 통해 성분의 조작, 입당 등 좋은 직장을 배치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부패행위는 간접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가. 뇌물과 직장 배치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제70조)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희망과 재능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계획에 따라 직업이 배정되는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의 배치와 이동의 권한을 가진 일꾼들이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부패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경제난 이후 직업의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선호도의 변화는 직장 배치에 따른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국가가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소가 자율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노동자에게 배급을 주도록 전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

소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가동률의 상대적 차이와 이에 따른 배급역량의 상대적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배급량이 좋은 기업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업소가 가동이 되어 살기 좋은 기업소로 옮겨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소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좋은 직장에 배치 받으려는 주민의 노력과 배치권한을 행사하는 관료의 부패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북한은 노동국을 통해서 '나는 이 공장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 가고 싶습니다 해서 또 가는 것도 아닌거고. 노동국에서 파견장을 발급하는데 '나는 저 공장이 가고 싶다', '저 공장이 마음에 든다'하게 되면 그걸 노동국에다 사업을 하는 거죠. 아는 분을 내세워서 뇌물을 고여서 '나 파견장 그 쪽으로 좀 떼줘'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파견장 발급 받으려는 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몇 십만씩 살잖아요. 그런 걸로 먹고 살고 노동국 같은 경우에는."(사례 8)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은 채굴 계통에서 일하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석탄 등을 뇌물로 주었다고 한다.

> "이 기업소, 공장에는 전망이 없다. 다른데 좀 옮겨야 되겠다 하면 '시멘트 한차 달라', '석탄 한차 달라' 하거든요? 돈 달라 소리는 안하거든요. 석탄 한차면, 도시 사람이 일 년 땔감을 해결하거든요. 그렇게 큰 걸 요구해요. 한번만 요구하는게 아니예요. 두세 번 요구하거든요. 한 번 요구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비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받아먹어요. 책임비서가 하나 시켜달라고 하면 더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책임비서가 움직일 때는 달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천 달러 이상은 들어가야 되요."(사례 4)

또한 노동력의 배치 및 이동을 관장하는 관료는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관이나 개인의 권력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직장 배치 및 이동과 연계되는 부패행위는 일반주민 전체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차별적인 인권 결과를 낳게 된다. 돈이 있는 주민들은 보다 좋은 뇌물을 통해 보다 좋은 직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뇌물을 통해 좋은 직장에 배치받으면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또 다른 부패행위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의 상대적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권리 등 다양한 권리분야에 동시 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 직장 배치 및 이동과 동시에 북한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외화벌이 사업에 선발되는 것은 다른 일반 직장 배치 보다 개인적 부의 축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차원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등에 파견되기 위해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파견 근로자를 대폭 늘렸다고 한다. 무역 등을 통한 외화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을 메우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은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임금 착취 실태를 특집으로 보도했다. 북한-체코 합작 봉제공장을 경영한 김태산(60)씨의 증언을 인용하여 북한 근로자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받는 월급의 10%도 안 된다고 보도하였다. 이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150달러 정도인데 이 가운데 75~80달러는 무조건 북한에 송금돼 국고로 들어가고, 월 숙박비가 40달러 정도이고, 공수된 노동신문 구독료가 1달러,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국외 노동자 일동' 명목으로 바칠 꽃바구니 비용으로 2달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성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월 3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러시아에 파견된 벌목 근로자 역시 북한당국에 돈을 뜯기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 이처럼 근로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외국 근무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급료가 높은데다, 감시받는 부자유한 생활을 잘 참고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네 건설 공사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3년에 1천 달러 정도를 버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46]

이와 같이 외국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2가지 차원에서 뇌물행위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해외 파견 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뇌물이 수수된다. 그리고 위의 보도에서 보듯이 파견되어 부업을 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벌목공 선발과정에서도 뇌물이 수수된다고 한다. 벌목공 선발은 각 공장 기업소에서 수령에게 충실하며 사업과 당조직 생활, 청년동맹 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이며 맡겨진 생산과제 수행에 모범을 보인 당원들과 청년동맹원들을 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면접시험을 치를 때는 담당 일꾼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47]

직장 배치 및 이동과 관련되어 부패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직장이탈'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지하듯이 '8·3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공장에 일정 정도의 현금만 바치면 출근의 의무를 면제받는 '8·3 노동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8·3 노동자' 형태의 직장이탈은 1차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이 조직에 내는 현금이 그 조직에

146- 『연합뉴스』, 2012년 6월 25일.

147- 이서행,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의 한계," pp. 140~141.

소속된 노동자들의 사회권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직장이탈은 조직이익에 기여하는 결과를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 즉, 차별적 요소와 기업소 소속 노동자를 위한 사회권 신장이라는 특수한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내포하는 부패행위이다.

'8·3 노동자' 이외에도 병원 등 전문직종의 조직에서도 생계를 위한 직장이탈을 위해 병원 상급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의사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병원 내에서 의사들도 원장이나 기술부원장에게 뇌물을 주고 출근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적인 의료행위를 하여 돈을 버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사례 1)

>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출근부에 도장이나 찍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치료 나가지요. 개인적으로 아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 환자들이 딱 병원에 와서만 치료받는 게 아니고 집에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단골 환자들 관리하고 있죠. 그게 없으면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단골 환자들도 일단은 일반사람들인가 간부들인가에 따라서 그 선생님들이 달라져요."(사례 8)

일부 학교에서도 선생들이 교장 선생에게 돈을 주고 학교를 나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8·3 노동자'와 달리 뇌물수수자와 뇌물제공자 모두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만을 낳게 된다.

나. 뇌물과 입당: 직장 및 승진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직장 배치를 위한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뇌물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영역은 문건의 조작과 입당이 대표적이다.

첫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뇌물 등을 통해 문건을 조작하려는 부패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뇌물을 통한 경미한 수준의 문건조작 부패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분 자체를 변경할 정도의 문건조작 행위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패행위가 통제엘리트로 진출하는 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이고 핵심 요소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부 뇌물을 통한 문건조작은 통제엘리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건을 조작하려는 유혹과 이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부패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당원 여부는 북한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배정받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수령 중심의 절대 권력체계와 조선노동당 영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권력엘리트 등 선호하는 직장에 배치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입당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입당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국가 체제 아래서 입당은 북한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특히 부패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에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은 생존과 부의 축적과 직결되면서 뇌물을 주고 입당하려는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북한 내에는 “직업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 특히 보안원, 당간부, 농장 작업반에서 간부가 되면 생활이 좋아지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입당이라는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혹 때문에 여전히 뇌물을 바치고 입당하려는 부패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입당을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바친다.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주면 입당을 위한 자격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더라도 입당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토대가 좋지 않으면 토대가 좋은 사람에 비하여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148] 따라서 일부 문건조작은 입당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토대가 아주 나쁠 경우 뇌물을 주더라도 입당이 성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적대계층, 정치범 가족은 뇌물을 주더라도 입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149] 입당을 위해 제공하는 뇌물은 다양하다.

첫째, 북한돈으로 뇌물을 바치는 사례이다.
- 사례: 1백만 원 소요[150]

둘째, 달러로 뇌물을 바치는 사례이다.
- 사례: 2,000달러 소요(곽명일)

셋째, 현물로 뇌물을 바치는 사례이다.
- 사례: 오빠를 입당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고추 1톤 제공 ('고추당증'이라는 별칭)[151]

넷째, 여성의 경우 입당을 미끼로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사례 15, 사례 16)

입당을 매개로 한 부패행위 개입을 통해 가장 커다란 사적이익을

148- NKHR2012000040.
149- NKHR2012000041.
150- NKHR2012000004; NKHR2012000041.
151- NKHR2012000009.

취하는 일꾼은 당원 등록과장이라고 한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과장을 교체한다고 한다.

> "당원 등록 과장이 제일 잘 사는 케이스이죠. 그 사람들이 당원을 입당을 시키면서 평균 2,000달러씩 받죠. 이 2,000달러는 본인들이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당원 등록과장은 당 기관에서 3년 이상을 안 시켜요."(사례 3)

입당을 통해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핵심 성분이 아니면 간부로 승진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당과 법기관의 간부가 되면 직위를 활용하여 생활형편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의료혜택 등 부수적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간부가 되면 그만큼 직위를 활용하여 부패에 개입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당원이 된 북한주민들은 다음 단계로 승진을 위해 또 다시 부패행위에 연루된다. 입당 이후 북한주민들은 승진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바치고 있다. 다만, 보안일꾼, 검사, 판사, 당일꾼은 여전히 토대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간부 등용의 경우 토대 등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당과 법기관의 간부가 되기 위해서도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바친다고 한다.

> "무엇보다도 당에 들어가야만 간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부조건이 첫째, 대학을 나와야 되고, 둘째, 군대 나갔다 와야 되고 현장경험의 추천서가 좋아야 되요. 그런 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뇌물 들어가야 되잖아요."(사례 4)

그런데 행정일꾼으로의 승진은 뇌물로 가능하게 된다. 당이나 법기관, 군대의 간부가 아닌 행정일꾼의 경우 뇌물을 통해 간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강도 백암군 옥천농장 작업반장이 추방가족이었으나 뇌물사업으로 간부에 등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152]

> "어느 식료공장 지배인 하겠다. 급양관리 식당, 급양관리 소장 하겠다고 하면 간부과장이나 간부과에 뇌물을 넣으면 해결됐어요."(사례 5)

또한 뇌물은 직위의 유지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이는 직위를 활용한 부패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과 직위에 있기 위해서는 상납구조가 일상화되고 있다. '직위를 이용한 뇌물수수 → 직위 유지를 위한 뇌물의 상납'이라는 연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직위를 활용한 뇌물수수는 상납이라는 형태를 통해 직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승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직위와 관련된 뇌물은 사적이익의 추구와 동시에 직위의 유지 및 승진을 위한 상납 고리의 2가지 목적으로 부패의 사슬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인맥 형성은 평양의 고위층까지도 고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관 통관과정에서 물품을 갈취함으로써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사취한 이익은 직위 유지와 승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 "세관을 통과하게 되면 돈이든 물건이든 보통은 5~10% 뺏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상납돼요. 사람들이 얼마를 상납하느냐에 따라 진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줄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 줄을 잘 잡고 못 잡고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줄이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항상

152- NKHR2012000040.

> 평양의 고위층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거기에 어쨌든 간에 줄을 대려고, 자리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오는 사람이면 완전히 하인처럼 굴게 된데요."[153]

이상에서 보듯이 입당과 승진 및 직위 유지를 위한 부패행위는 뇌물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패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와 동기를 위한 부패행위는 일반주민 전체가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차별이라는 인권원칙에서 볼 때 소수 집단을 위해 다수 주민을 구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행위를 통해 해당 직위에 오를 경우 보다 심하게 부패행위에 개입하여 주민들을 수탈할 것이므로 주민들의 사회권을 저하시키는 원격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 부패와 노동착취

이상에서 살펴본 직장 배치 및 이동이라는 근로권은 향유해야 할 권리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근로권과 연관된 또 다른 영역으로서 강제노동(노동착취)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금지되어야 할 근로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제도적으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이 학생들에 대한 노력동원과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노력동원은 강제노동인 동시에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뇌물 제공 등을 통하여 노력동원에서 제외되는 현상들이 나

153-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타나고 있다. 부패행위를 통한 노력동원의 제외는 그렇지 못하는 학생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차별적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돈이나 현물을 내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력에 동원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해당 아동의 교육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교원들이 배급이 없어 뙤기밭을 운영하는데, 농사철에 학급 아이들을 불법으로 동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 금지라는 아동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154]

둘째,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다양한 형태의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노동단련대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적 영역의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단련대는 건설 동원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노동단련대를 통해 노동 수요를 충당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영역이 아니라 노동단련대 관리 지도원과 사적 영역이 결탁된 노력에 동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등 비공식적 건설 사업이 은밀하게 확산되면서 노동단련대 지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구금시설의 수감자들이 사적 건설장에 동원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2011년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대에서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선발하여 집을 허물거나 짓는 데 동원하였다고 한다.

154- 아동에 대한 노력동원에서 대해서는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12~113 참조.

"노동단련대도 얼마든지 뜯어 먹죠. 협동농장 작업반이나 공장 기업소 건설장 같은데서 무보수 노동을 해달라 하고 제의가 들어와요. 그럼 딴 사람 시키는 것보다 강제노동 시키는 게 낫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협동농장 가서 김매기 시키면,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쌀 몇 가마니씩 들어오고, 개, 돼지도 들어오고 하죠."(사례 3)

이렇게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155] 이는 노동을 통하여 교양을 한다는 북한 당국의 교정방침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유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부패와 식량권

부패가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 부패와 식량권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엔차원에서 부패가 식량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유엔 식량권특별보고관 지글러(Jean Ziegler)는 2001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식량권의 실행을 저해하는 7가지 핵심 경제적 장애의 하나로 부패를 들고 있다.[156] 그리고 1996년 '세계식량정상선언'(Declaration of the World Food Summit)에서는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원인의 하나로 부패를 언급하고 있다.

부패가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량권의 개념과 식량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량권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식량

155- NKHR2012000068.

156- 유엔문서 E/CN.4/2001/53 (7 February 2001), para 69.

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2항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를 구성하는 핵심 권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식량권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2'에 따르면 식량권의 핵심 구성 요소는 첫째, 양과 질에서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의미한다. 식량의 가용성이란 생산지로부터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토지와 천연자원의 소유와 사용에 관련된 부패행위는 식량의 가용성을 제약하고 식량권을 침해하게 된다.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토지 사용 허가를 부여하게 되면 이러한 부패행위는 불평등하고 차별적 방식으로 식량의 가용성을 낮게 된다. 또한 부패는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영양소, 칼로리, 단백질 등 적절한 식량과 식량안전의 수준을 위협하게 된다.

둘째, 적절한 식량권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접근성(accessibility)이다.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2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경제적으로 충당 가능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부패는 이러한 접근성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부패는 주로 사회프로그램을 저해함으로써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구성하는 특별 요소이다. 사회프로그램 종사자가 식량을 구입하고 배분하도록 책정된 자금 또는 식량자체를 횡령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식량을 암시장에 전용할 때 취약집단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식량에 접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패는 핵심자원을 사회적 지출로부터 전용하기 때문에 식량권의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157]

또한 유엔 식량권특별보고관은 국가가 관할권 내 주민의 식량권을

존중·보호·수행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부패투쟁이 주요 요소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부패는 식량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는 식량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평등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존중하고 제3자가 식량권의 향유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식량권을 보호하고 식량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식량권을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부패행위는 이러한 식량권에 대한 국가의 3가지 의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가. 부패행위와 식량의 가용성 및 접근성의 저하

식량권과 관련한 부패행위는 우선적으로 배급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배급과정에서 식량권에 미치는 부패행위는 주로 횡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횡령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인과관계와 간접적 인과관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직접적 인과관계로서 식량 배급 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은 식량권(가용성,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구체적 배급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확된 농산물을 당 등 관련 부서의 간부들에게 바치는 행위이다.

157- 이상의 내용은 Julio Bacio-Terracino, “Corruptio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pp. 19~20 참조.

"협동농장에서 햇곡식이랑 햇남새랑 채소랑 나올 때는 뇌물을 고이거든요. 군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근로단체비서, 부장, 경영위원장 등 당간부, 행정간부를 포함해서 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각 농장마다 쌀 같은 뇌물을 갖다 고여요. 관리위원장도 살아야 되니까요."(사례 5)

식량 수확 후 분배과정에서 식량을 가로채는 부패행위이다. 특히 협동농장에서 간부들이 담합하여 쌀과 같은 주곡을 횡령하는 부패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리당 비서나 관리위원장은 벼를 수확한 후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부기실 요원으로 하여금 계량을 속여 장부상에 없는 여유곡을 만들게 한다. 이들은 장부조작을 통하여 식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취하는 것이다.[158]

식량 수매과정에서 수매원과 협동농장 간부 사이의 담합과 흥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패행위이다. 식량 수매과정에서 식량수매원과 농장간부들 간의 부적절한 교환행위로서의 부패행위를 의미한다. "수매분을 줄여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매원에게 주고 간부들은 그만큼의 여유곡을 농장 살림살이나 간부 개인의 목적으로 착복하는 것이다."[159]

이러한 공모와 답합에 의한 식량에 대한 부적절한 교환행위는 양정국에서 식량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양정국 관리와 식량 수령기관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모와 담합은 예를 들어 김정일의 지시나 당의 결정에 따라 지방 단위 특정 기관의 기관장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양정국이 정책을 수행하는 특정 기관장과 결탁하여 배급 장부를 조작하여 식량을 빼돌리고 있다.

158- 김성철, 『북한관료부패 연구』, p. 47.

159-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 337.

"예를 들어 김정일 방침에 따른 건물 하나를 건설 하겠다 하면, 건설에 참여하는 100여 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량을 받아서 줘야하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100여 명이 먹어야 될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정국 국장한테 가서 뇌물을 바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냥은 안 줘요. 식량은 제한돼 있고 달라는 데는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 관계를 설명하면서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열 톤을 줄 테니 아홉 톤은 가져가고 한 톤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장부상으로 그 기관이 열 톤을 수령한 것으로 되고 … 나머지 한 톤은 양정국 국장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양정국 국장은 그 한 톤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사례 7)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정국 관리는 뇌물수수와 장부조작이라는 이중적 부패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양정국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이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개입하고 있다. 양정체계도 경제난으로 작동시스템이 변질되었다. 옛날 양정체계 아래에서는 양정국은 인구통계학적으로 숫자를 파악하고 정상적으로 배급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양정국은 절대적으로 적은 식량을 착출하고 공급하는 임무로 역할이 변화되었다. 양정국이 적은 양을 차출하여 배분하므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적은 양을 배분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관은 많기 때문에 양정국 국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뇌물이 매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정국 국장의 선호도가 높아졌다.(사례 7)

이외에도 식량이 빼돌려지는 다른 형태의 부패행위를 살펴보면 소속 기관의 관장 영역에 있는 식량, 석탄 등의 수급과정에서 관료 자신이 자금을 투자해서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 비공식적 시장의 판매행위는 관료적 지위를 활용한 비공식적 연결망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60]

160-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북한사회의 불평등체계의 변화와 주민의 사회

또한 당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개인식당의 확산도 식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개인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량을 관료와 개인식당의 주인이 결탁하여 빼돌리면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은 더욱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식량 수급과정에서의 횡령은 1차적으로 식량의 가용성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식량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차별과 경제적 접근성의 수준을 악화시키게 된다. 횡령을 통해 빼돌려진 식량만큼 높은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므로 북한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구금시설에서의 부패행위가 수감자들의 식량권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이 집결소에 식량을 배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업지를 할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업지 경작에 집결소 수감자들이 동원되는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은 집결소 운영을 위해 활용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결소를 관리하는 보안원들이 생산물을 많이 사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성이라는 기준에서 집결소 수감자들의 식량권은 저하되는 것이다.[161]

셋째, 간접적 인과관계로서 식량 구득에 할당될 수 있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은 식량권(가용성, 접근성)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구체적 부패해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식량 생산과정에서 비료나 사료 등을 빼돌림으로써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에 부정적 영

적 정체성의 재형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KBS 남북교류협력팀, 2005), p. 192;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p. 384.

161- NKHR2012000159.

향을 주는 행위를 들 수 있다. 협동농장의 간부가 농장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공목적의 비료나 사료를 개인의 텃밭과 가축에게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부패행위이다.[162]

또한 과자 등 추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패가 식량권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 "생산되는 공장에서 과자를 만든다 할 때, 국가표준에서는 150g이면 노동자들이 이걸 130g 내지 140g으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도 사실 150g이 진짜 나가는지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밀가루를 조절하고 사탕가루를 조절해서 130g 나오는 밀가루와 사탕가루를 만들어서 몰래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 지배인 이런 사람한테 다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처한 조건과 환경에 맞게 불법 행위로 살아가는 거죠."(사례 6)

식량권에 미치는 보다 원격적인 요인으로는 배분과정 왜곡을 들 수 있다. 국가물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이 착복한 물품을 암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점취하는 부패행위이다.(사례 15) 예를 들면, 북한의 일상생활용품은 '상업성 중앙도매소 → 각 도 출하도매소 → 지역별 지구도매소 → 시·군 상업관리소 → 일선 상점의 매대'를 통해 전달된다. 이런 유통과정에서 중간관료들의 물품 착복으로 인해 80% 정도가 유실된다.[163] 이와 같이 국가 물품 분배과정과 교역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횡령과 뇌물은 국가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북한주민의 식량권 등 생활 여건을 낮추는 원격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장마당 단속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원격적 요인으로

162- 김성철, 『북한관료부패 연구』, p. 50.

163- 서재진, "북한의 체제위기와 지배엘리트의 행위양식 변화,"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pp. 196~197.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 주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단속될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 장마당 단속과정에서 상품에 따라 벌금 금액의 차등이 있다.[164] 2011년 당시 청진의 장마당에서 주로 군대물품(신발 등), 금속, 한국물품(화장품 등) 등을 단속하였다고 한다.[165] 또한 중국돈과 북한돈을 교환해 주는 사람들을 단속한다고 한다.[166] 북한이탈주민 ○○○은 군대 동화(冬靴) 장사를 했는데, 한 켤레당 500원씩 벌금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내는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상당 액수는 단속원 개인이 착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말이 벌금이지 단속원이 착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벌금조서는 흉내만 낼 뿐 손도장도 찍지 않았다고 한다.[167] 돈을 내는 사람은 벌금으로 알고 내지만 순찰대는 뇌물로 처리하여 개인이 착복한다. 다만 순찰대도 과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을 보안서에 내고 나머지만 본인이 챙기고 있다.[168] 그런데 순찰대들의 생계 수단이 장마당 단속 시 받는 뇌물이므로 명절 때가 되면 장마당 단속이 심해진다.[169]

이러한 물품 단속과 함께 장마당 장사를 일정 기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더 많은 뇌물을 바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순찰대가 장마당을 단속할 때 '매탁중지'라는 것이 있는데, 짧게는 10일, 길게는 30일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164- NKHR2012000033.

165- NKHR2012000063.

166- NKHR2012000085.

167- NKHR2012000021.

168- NKHR2012000022.

169- NKHR2012000050.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경미한 사안의 경우 뇌물은 현물인데, 현물의 경우 주로 담배가 통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담배는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득을 취하게 된다.

한다. 그런데 뇌물 5,000원을 주면 봐준다고 한다.[170]

북한당국은 장마당을 허용하면서도 장사가 가능한 여성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뇌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혜산장마당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는 나이제한에 걸려 장사를 할 수 없었지만 관리원에게 뇌물로 중국돈 100위안을 주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뇌물을 주자 관리원들이 나이를 조작하여 장사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다.[171]

이와 같이 단속원에게 할당된 벌금의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벌금으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착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일반주민들의 생계, 특히 식량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마당에 의지하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식량의 구득에 할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단속과 뇌물은 북한주민들의 식량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격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 군 배급과정의 부패: 군인과 주민의 가용성 저하

일반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도 식량 배급과정에서 횡령 등 부패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군대 내 식량 배급과정에서의 부패행위는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식량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선군정치에 따라 군에 우선적으

170- NKHR2012000086.

171- NKHR2012000112.

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이러한 배급정책 자체가 주민들의 식량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대에 식량을 우선적으로 배급할 경우 일반주민들의 식량의 가용성과 접근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배급정책은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고 해서 군인들 대부분이 넉넉히 배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는 군량미 공급과정에서의 부패행위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군량미 분배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원군 양정사업소는 협동농장에서 수확물을 걷어 모두 군량미로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거하는 식량은 군량미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량표를 갖고 식량을 수령하러 와도 양정사업소의 수급지도원은 쌀이 없다. 아직 탈곡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쌀을 주지 않으려 한다.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1톤을 주었다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100~200kg을 제하고 받는 곳에 주려고 한다.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여 남긴 식량을 뒷탈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 장마당 등에서 처분하여 돈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사례 11)

둘째, 군대 내 분배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복무 지역, 군종 등에 따라 군 내부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172] 이와 같이 군대 내 식량에 대한 접근권의 차이는 식량 배급과정에서의 부패행위가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군인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제공하는 곳은 인민무

172-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284.

력부 산하 후방총국이다. 후방총국은 쌀, 부식 등 식료품까지 모든 물자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국가기구에는 당의 지도를 받는 정치국이 존재하듯이 후방총국 역시 정치국-참모부 체계로 운영된다. 군 부대 물자는 후방총국 경리장의 지시와 창고장의 출고조치로 각 도 공급소에 배분된다. 후방총국 경리장과 창고장은 배분 단계부터 물자들을 착복하는데, 이는 결국 총국 간부들의 뇌물로 소요된다. 또 '도 공급소(경리장) → 군단 또는 사단(경리장) → 중대(사관장) → 소대(부소대장) → 병사'에 이르는 분배과정에서도 단계마다 착복이 이뤄지고 있다. 총 5차례의 분배과정에서 착복이 이뤄지는 '먹이사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800g이 지급돼야 할 식량이 550~600g만 공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강냉이로 배급되고 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 군 간부와 상급자들은 식량 배급과정에서 횡령과 뇌물행위에 개입함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173] 이와 같이 후방총국이 중심이 되는 배분과정에서 정량에 미달하는 분배라는 부패행위는 군인들의 식량가용성을 줄어들게 함으써 군인들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군대 내 식량의 횡령행위는 사적이익의 추구와 동시에 부대 운영이라는 조직적 이익이 결합되는 형태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군에는 양식, 식량을 다루는 사관장이 군관들 속에서는 제일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관장을 어떻게 잘 구슬리는가에 따라 사관장으로부터 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대장이나 사단장 등 고급군관들은 휘발유가 전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대후방부나 사단후방부에서 쌀을 내다 팔아서 휘발유를 사서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식량을 배분하는 군인들

173- 김소열·조종익, "배 곯는 북한군: '후방총국' 부패사슬 대해부," 『데일리NK』, 2011년 4월 25일.

로부터 식량이 빼돌려지고 연대장이나 사단장 등의 군부대 운용의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서 식량의 가용성은 떨어지게 된다.

> "공급이 안돼요. 차는 굴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팔 거라는 게 쌀밖에 없어요. 콩기름 나오는 것도 다 안나오지. 쌀은 그런대로 먹이라고 나오니까 그 쌀을 내다 시장에 다 팔고 돈을 받아서 다시 휘발유 사서 차에다 넣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나오는 쌀 자체가 고급군관들 차 휘발유로 대체되는 이게 상당한 양이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 양이라는 게 800g이지만 실지 하루 먹는 양은 아마 한 500g이나 560g 정도. 밥 보게 되면 이게 그릇이다 하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군인들이 말하는 폭탄밥, 폭탄밥 하는 게 밥그릇이 원래 규정대로 하면 이만큼 올라와야 하는데 폭탄 맞으면 이렇게 푹 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폭탄밥 먹는다는 게 밥이 움푹 들어간 밥이라고 폭탄밥이라고."[174]

이와 같이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량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북한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북한당국도 횡령 등 군대 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군관 대상 강연자료를 통해 군대 내 식량 관련 부패행위를 살펴볼 수 있다. 2001년 11월 군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자료에서 "량식물자탐오랑비현상을 없애고 공급되는 물자들을 전량 그대로 군인들에게 급식"하도록 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동 강연자료에서 식량을 둘러싼 부패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량식물자'를 다른 용도에 망탕 소비하는 것(연유, 건설자재, 석탄과 바꿈질하는 현상)

둘째, 군인들의 '량식물자'를 사취하는 것('량식물자'를 가지고 출장여비나 술, 담배를 마련하는 현상, 잡곡을 내고 1:1로 흰쌀과 바꾸어

174-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55~56.

먹는 현상, 식권을 내지 않고 공짜 식사를 하는 현상[175] 등 이러한 식량을 둘러싼 부패행위에 대해 김정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지금 일부 군인들 속에서는 군수물자를 망탕 다루거나 량식과 피복물자를 사회에 가지고 나가 바꿈질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인민군대에서 이런 현상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군인생활문제를 풀 수 없으며 국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죠."[176]

특히 김정일은 소규모 단위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군량미 횡령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4년 대대 이하 단위의 식량유용과 관련하여 "대대이하 단위들에서는 군관들과 사관들이 <소왕> 노릇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량식물자들에 손을 많이 댄다고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대대이하 단위의 군관들과 사관들이 군인들의 량식물자에 절대로 손대지 않도록 장악통제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177] 북한 내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김정일의 지적을 통해 소규모 부대의 군관, 사관들이 자행하는 군량미 유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군대 내 군량미 유용 및 횡령은 식량에 대한 가용

175- "일군들은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군관강연자료(요강)』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p. 3~4;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pp. 56~57에서 재인용.

176-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39;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p. 62에서 재인용.

177-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93(2004)년 2월 24일 조선인민군 제131 군부대지휘부와 직속공병중대, 땅크종합훈련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p. 11;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p. 64에서 재인용.

성이라는 측면에서 군인들의 식량권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부패행위로 인한 군인들의 식량권 침해는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즉 군인들은 자신들의 식량 가용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를 보충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일반주민의 식량을 절취함으로써 군대 내 부패행위는 일반주민의 식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례 14)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은 강원도에 복무할 때 한끼에 100~150g 밖에 주지 않아 배가 무척 고팠고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들 몰래 군영 밖으로 나가 옥수수를 훔치거나 가정집에 들어가 쌀을 도둑질해 배를 채웠다고 한다. 이와 같이 허기진 군인들이 민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178] 이와 같이 군대 내 식량 횡령의 결과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이 침해되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데 북한의 『학습제강』에서는 이러한 대민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2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군에 의한 농작물 침해 행위이다. 특히 군인들이 야외훈련을 나가 식량이 부족해 인근 민가의 농작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

> "만일 군인들 속에서 인민들의 밭에 들어가 강냉이 한 이삭을 따오는 현상이 나타났을때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면 래일은 그들이 어떤 망탕짓을 저지를지 모르죠."[179]

178-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12』, pp. 284~285.

179- "혁명적 군풍과 명령지휘체계를 세워 군사규률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3』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20;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p. 67에서 재인용.

둘째, 생활조건이 어렵다는 구실로 주민들의 식량이나 가축을 도적질 하는 행위이다.[180] 이와 같이 군에 배급되는 식량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부패행위가 선군정치와 맞물려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부패와 교육권

교육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이라는 4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13'에서 교육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용성으로서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접근성으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내용이 겹친다. 첫 번째는 비차별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차별 없이 법률상·사실상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물리적 접근성인데,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가 가능해야 하며, 현대적 기술을 통하여 교육 시설이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위치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교육은 경제적으로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초등교육은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반면,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수용성으로 학생 혹은 학부모가 교과과정 및 교수법 등 교육

180-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pp. 68~70.

의 형태와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적응성으로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권도 당사국에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실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실행차원의 의무는 촉진할 의무와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권은 사회적 차원과 자유의 차원이라는 2가지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차원이란 사회권규약 13조 1항에 규정된 목적을 지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부패는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된다. 교육부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차원의 부패행태로는 자금의 횡령, 불법 등록비, 잦은 결석, 시험사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교육부문의 부패행위는 가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횡령 등 부패행위는 학교 건물,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 훈련받은 교사, 교육 자료 등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의 가용성과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교육부문에서의 부패행위는 학교와 교실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거나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패는 차별을 야기한다. 아동들이 비공식인 지불을 하도록 요구받을 때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은 뇌물을 지불한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부패행위가 교육에 대한 접근의 차별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지 뇌물을 지불한 이후 수업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때, 공식 수업 시간 이후 교사들이 필수 교과과정을 가르치면서 사적 등록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때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부패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돈의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부패행위는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부문에서의 부패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교육자료의 구매, 식사, 학교 건물 건축 등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원 충원과정에서 뇌물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수준 낮은 교사가 채용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둘째, 교육권은 자유의 측면을 갖는다. 이는 아동들 혹은 이들 부모가 자신의 교육적,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충족하는 교육제도를 선택할 개별적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자신들의 교육제도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차원의 교육권도 부패행위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해야 할 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없거나 뇌물을 제공할 의지가 없을 경우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된다.[181]

가. 뇌물과 입학

교육권과 관련한 북한 부패행위는 횡령도 포함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과제에서는 뇌물이라는 부패행위를 중심으로 북한부패와 교육권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에서 현재 교육권과 관련하여 가장 성행하고 있는 부패는 뇌물을

181- E/C.12/1999/10,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Julio Bacio-Terracino, "Corruptio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pp. 27~30.

통한 대학입학행위이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북한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면접조사에 응하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대학 입학은 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력이 없어도 돈이 공부한다"고 말할 정도로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뇌물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182]

뇌물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이 오고가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수준과 연줄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뇌물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달러를 주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딸을 청진예술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2009년 예술학교 간부과장에게 뇌물로 100달러를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200달러를 바쳐야 하는데, 자신의 모교이므로 적은 금액으로 뇌물을 주고 입학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183]

둘째, 북한돈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과목별로 뇌물을 주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혜산의 과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1과목당 25~30만 원 정도 대학교원에게 돈을 제공하면 시험에 통과될 수 있었다. 대학진학 시 10~15과목 시험을 보므로 총 450~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184]

셋째, 현물 혹은 가축을 뇌물로 주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시험을 칠 경우 '고양이 담배'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공부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185]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는 2010년 통돼지 한 마리를 뇌물로 바치고

182-NKHR2012000051.
183-NKHR2012000003.
184-NKHR2012000040.
185-NKHR2012000051.

황해남도 신천군 간호대에 입학하였다고 증언하였다.[186]

그리고 평양의 종합대학은 지방대학 입학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액수의 뇌물이 필요하다. 중앙의 종합대학은 1,000~3,000달러, 도 대학은 300달러 정도를 시험담당 교수 혹은 학장에게 바쳐야 한다고 한다. (김영예) 이와 같이 대학 입학과정에서 뇌물이 성행하고 있는데, 토대와 전공이 뇌물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즉, 토대가 나쁘면 뇌물이 보다 많이 들고 대학과 전공에 따라 뇌물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탈북 당시 컴퓨터학과와 법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187]

그리고 다른 권리분야의 부패행위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과정에서의 부패행위에서도 사적이익과 함께 대학 운영이라는 조직적 이익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대학이 이번에 신입생을 100명 받는다고 해요. 대학에도 꾸려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대학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받자고 해서 컴퓨터를 받는다거나 돈을 받는다든가 하는 거죠. 당 조직하고 행정 조직 쪽에서 합법적으로 토의하죠. 그리고 김일성대 총장하고 책임비서가 있는데, 총장하고 책임비서는 또 자기 '뽄트'가 있는 거예요. 책임비서가 총장한테 이번에 한 10명 '뽄트'를 가지십시오 하면 총장은 이 뽄트를 나눠주고 돈을 받는 거고, 책임비서도 돈을 받는 거고. 이런 일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사례 6)

북한에서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와 군 제대 후 대학에 진학하는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186-NKHR2012000004.

187-NKHR2012000046.

그런데 군을 제대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개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대 부대 단위로 대학입학을 위한 인원이 할당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통하여 배정된 입학정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할당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188]

이렇게 뇌물을 주고 입학할 경우 대학 입시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모두 뇌물을 주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일반대학은 대학학장, 대학 교무부 지도원 등에게 300달러 정도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189] 그리고 대학을 추천해 주는 담당자 1명, 대학 당위원회 책임비서, 대학 간부과(인사과) 과장 1명, 담당 인사지도원 1명, 담당 학부장 1명에게 뇌물을 나누어 바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190]

>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군당교육부에서 힘이 있지요. 그리고 교육을 책임진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대학입학 할당 학생들, 그걸 '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개 도라면 군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군에는 대학생 몇 명, 사범대 학생 몇 명 추천하라 하는 입학 그런 분배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군당교육부에서는 그걸 올라가서 받아 오거든요. 그러면 군당교육부에서도 더 많은 학생을 할당 받으려고 위에다가 좀 고이고 그렇게 해서 받아오지요. 시험치고 담임선생들은 거기서 교육부 사람하고 학부모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게 다 뇌물작전이니까요. 시험을 아무리 잘 쳤다고 해서 그냥 나오면 그건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당교육부 사람이라든가 교육부에 아는 사람을 학부모가 만나게 해주는 거죠. 만남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은 빠지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있었는데 특산물이 꿀이었어요. 뭐 20kg씩 이렇게 해서 뇌물사업을 하더라고요."(사례 10)

188- 이서행,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의 한계," p. 140.
189- NKHR2012000041.
190- 이서행,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의 한계," p. 14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입학과 관련된 부패행위는 뇌물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뇌물을 통한 대학입학이라는 부패행위는 우선적으로 평등과 차별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차별과 경제적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뇌물이 통용되는 경우 실력이 있더라도 뇌물을 제공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하는 학생은 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또한 이러한 뇌물행위는 자유차원의 교육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뇌물로 인해 학교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뇌물행위는 대학입학에서 성분(토대)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학에서 성행하고 있는 뇌물행위는 성분에 기반을 둔 차별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나. 부패와 학교생활의 차별적 대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무상의무교육이지만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다양한 부담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국가가 실행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이로 인해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물적 부담을 요구하면서 무상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교육권 침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내라는 돈과 물자를 내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교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 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하층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들이 애처로워 자식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려고 한다. 그런데 계속되는 부담에 지친 부모들은 결국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191] 이와 같이 사적이익이 아닌 조직이익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부담을 요구면서 재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극단적 상황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가 침해되는 부정적 영향을 낳게 된다. 이렇게 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 접근권의 저해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돈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현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 가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봐달라고 뇌물사업을 하기도 한다. 교원들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교원이 원하는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선생이 아이를 차별대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192] 이와 같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담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에 차별적 대우를 낳게 된다. 특히 뇌물은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의 부여 등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북한이라는 계급 사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열성자 임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가 선생들에게 뇌물을 주면 열성자나 소년단 간부 추천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 "선생들도 담임을 해야지만 살아가거든요. 아무래도 선생님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부모들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담임을 맡으면 잘 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간 없이 담임선생님은

191-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13~118.
192- NKHR2012000116.

> 그런 학생들 열성자시켜 줘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도 살아야 하니까. 그런 애들 또 열성자시켜 주고, 학급 반장이라든가 분단 위원장이라든가 소년단에 애들을 내세워 주게 되죠. 그런 걸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모신세 좀 지죠 뭐. 애들 잘 봐달라거나 공부를 잘 시켜준다거나 혹은 열성자로 좀 해달라거나 하는 이유로 선생에게 주는 거죠."(사례 10)

또한 차별적 대우는 부족한 교재 등의 분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과서가 부족하므로 국어, 수학 등 기본 과목 교과서를 타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학부모들은 선생님에게 사업해서 교과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적 대우의 원인에 대해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뇌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193]

> "교과서도 부족해가지고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교과서 줄 때는 머리 깨지죠.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대체로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선생들이 교과서가 10부 나왔다면 5부는 뚝 떼 가지고 묻어놓고 학교에 이만큼 나왔는데 하면서 줄 사람들 주고 팔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학급을 위해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했으니까 그런 부모들한테 주지요. 그거 안 해줬다가 큰일나요. 안 해주면 학부모들 삐친다니까요. 그렇게 이 바지 했는데 교과서도 못 해주는가라고."(사례 10)

이와 같이 학교 운영에 대한 부담과 교원에 대한 뇌물은 학교생활에서 차별적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 결과는 교육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뇌물이 미치는 차별적 결과는 교육기회의 저하와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교원이 생계와 관련된 부패행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도 경제난으로 생활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교

193- NKHR2012000116.

원이라는 직책을 활용하여 생활난을 타개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교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으로 교원(교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들의 교원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담에는 교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도 포함되고 있다. 특히 교원의 생일에도 돈을 걷게 된다. 학급 반장의 부모가 위원장이 되어 교원 생일에 학부모로부터 돈을 걷거나 교원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94] 이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 부패와 학생의 노력동원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북한당국은 강제노동 자체를 위배하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이러한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유린도 부패행위로 인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과 무관하게 학생들의 노력동원이 있었지만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교육 대신 노동을 시키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동원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 선생님들이 그 부모의 아이를 노동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휘발유를 보낸다던가, 쌀을 보낸다던가, 부식물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몰래 돈을 주든가 하면 아이들을 노력동원에서 면제하여 집으로 가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력에 동원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194-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 112.

"저는 뭐를 자꾸 내라고 하니까 열 받아서 아이를 소학교에도 보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전하고는 다르게 부담을 해야 하고 매일 모내기 등 일 시키고 청소시키고 불필요한 것만 너무 많잖아요."[195]

이와 같이 뇌물의 부담 능력 여부는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유린에 대한 차별적 적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노력동원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노력동원 과정에서 학생들의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도 파악되고 있다. 즉 뇌물을 받고 노력을 면제해주게 되면 노력에 동원되는 아이들이 노력동원에서 면제되는 아이의 몫까지 목표량을 달성해야 한다. 이 때 노력동원에서 면제되는 학부모들이 노력에 동원되는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경제난 이전에는 동원되는 농촌에서 먹는 것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를 노력을 면제받는 학부모로부터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농촌동원에 안 내보내려고 해요. 기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꺾고 해야 되는데 그 숱한 노력을 어디서 보충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 맡기는데 힘들지요. 예전에는 농촌에 나가면 농촌에서 밥을 먹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촌에서 주는 쌀 가지고 애들 먹는 것을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 재간 없이 농촌동원 나갈 때 밥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해요.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학생들 농촌동원 데리고 나갈 때 아예 규정해 놨어요. 다 농촌동원 나가자 했는데 그래도 못 나가는 애들은 농촌동원 나가는 애들이 못 나가는 걔네들 몫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는 애들한테서 쌀 2바가지나 밀가루라든가 내라고 했거든요. 먹이지를 못 하면 애

195- 이상의 내용은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p. 112~113 참조.

들이 배고픈데 힘들죠. 다 도망쳐요. 도망치면 또 복잡하죠. 모내기 동원 성과를 못내니까. 그런데 군당교육부에서 지도 나와 담임선생한테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사례 10)

이는 뇌물이라는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교원이 직권을 활용하여 노력을 면제해주고 그 대가로 노력에 동원되는 학생들의 식량권을 해결하는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노력동원은 아니지만 교원의 생계를 위해 학생들이 노력에 동원되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교원들에게 배급대신 지급되는 땅의 경작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 교원들의 경우에도 배급을 주지 못하므로 농촌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땅을 받아 식량을 해결하는 비배관리제(이중관리제)가 활용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이를 '이중관리제'라고 하는데 땅을 떼어 주고 여기서 소출한 곡식을 배급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장들은 학교에 가까운 좋은 땅을 배정받으려고 뇌물을 제공하게 된다. 이 땅을 학교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선생별로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배정된 땅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원들이 직권을 활용해 자신들의 식량권을 위해 학생들을 노력에 동원하고 있고 이러한 부패행위가 학생들의 교육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땅은 배급에 한해서 주거든요. 배급으로 환산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얼마 안 돼요. 교장선생님들이 어느 날 작물을 심으러 간다 하면 거기 가서 저희 땅을 나눠주거든요. 저희는 공동으로 다 했는데 어떤 중학교는 땅을 나눠주거든요. 선생들한테 그렇게 땅을 나눠주면 선생님들은 학급 애를 데리고 가죠. 대여섯 명이 가자하면 농장에 데리고 심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중관리제를 받는데, 많이 받죠. 교장선생님들이. 뭐 그렇다고 교원들이 꿍꿍거리는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이 나서서 합니다. 또 자기 욕심 차리죠. 교장은 땅을 더 많이 받지요."(사례 10)

그런데 강제노동을 시키는 목적이 개인적 이익과 조직적 이익이 결합되는 형태도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높은 반 아이들에게 이삭줍기를 시킨다고 한다. 아이들이 많다보니 모으면 낱알을 10kg 정도 줍는데 절구질 하면 6kg 정도 쌀이 생기게 된다. 유치원 교양원은 3kg는 밥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먹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다고 한다.[196] 그렇지만 개인적 이익이든 조직적 이익이든 학생들의 노력 동원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부패와 건강권

사회권규약 제12조 1항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조건과 함께 국가의 가용자원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4'에 따르면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만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유의 측면에서의 건강권에는 성적 자유 및 생식적 자유 등 자신의 건강 및 신체를 통제할 권리 및 고문, 합의하지 않은 치료 및 실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건강권에는 사람들에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건강 보호제도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196-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 112.

또한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4'에 따르면 건강권은 식량권의 구성 요소인 가용성과 접근성과 함께 수용성과 질을 포괄하는 상호 연관된 4가지 요소(AAAQ)로 구성된다.

첫째, 건강권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가용성(Availability)을 들 수 있다. 이는 보건 및 의료 시설, 물품과 서비스, 프로그램이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는 보건 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직접적으로 보건시설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단속기관, 보건관리, 제약산업에 뇌물로 사용되면 가용성의 측면에서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보건부문에서의 부패행위로 인해 보건 물품과 시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건강권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접근성(Accessibility)을 들 수 있다. 이는 보건 시설, 물품과 서비스는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중첩되는 4가지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비차별인데,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소외된 집단(취약집단 혹은 주변화된 집단)에 대해 어떤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부문 부패는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특정 지역과 집단의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시골에 거주하는 가난한 주민들은 도시의 부유한 주민과 비교하여 보다 대기기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다 빈번하게 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다. 보건부문 부패는 보건 관리와 전문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수입에 따라 환자를 다르게 치료하게 만들 경우 직접적으로 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두 번째 차원은 물리적 접근성(physical access)으로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소수민족과 토착민,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취약집단 혹은 주변화된 집단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부문 부패는 특정 집단과 공동체에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정책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패가 개입되면 병원은 실질적으로 병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 건립될 수 있다. 즉 부패행위가 개입되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건강센터나 병원이 건립될 수 있다. 부패로 인해 병원시설이 적절한 지역에 건립되지 못하면 시골지역은 물리적으로 병원시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 번째 차원은 경제적 접근성(economic access)으로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패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접근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시 경제적 수준에서 보건부문의 부패는 보건서비스에 지출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직자가 기부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약에 대해서도 제약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들은 비공식 지불을 요구함으로써 건강 관리서비스를 보다 비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환자의 경제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네 번째 차원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인데,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정보와 아이디어에 접근하여 입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보건부문은 정보접근의 불균형적 성격이 강한 부문이기 때문에 부패에 취약할 수 있다. 보건부문 종사자는 환자와 비교할 때 진단이나 치료와 같은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부패는 환자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보건서비스나 특정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수용성(Acceptability)인데,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의료윤리를 존중해야 하며, 개인, 소수자, 민족 및 공동체의 문화를 존중하는 등 문화적으로 적절하여야 하며, 비밀 유지 존중 및 관련 당사자의 보건 지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 전문인들은 환자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의료 전문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수용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보건의 질(Quality) 문제로서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적절하여야 하며 양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패는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속원이 엄격하게 점검하지 않도록 뇌물을 받거나, 병원직원이 보다 저렴하며 효능이 떨어지는 약을 구매하여 수익금을 횡령할 때 보건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행위는 이러한 4가지 요소(AAAQ)의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부패는 효율성, 책무성, 참여,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부패에 의해 보건부문이 영향을 받게 되면 보건부문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횡령은 가용성, 접근성, 질에 동시에 개입할 잠재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197]

보건부문에서의 부패는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적 자원관리 수준에서 발생하는 부패, 의약품공급의 관리 수준, 보건종사자와 환자와의 관계

197- E/C.12/2000/4,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Brigit Toebes, "The Impact of Acts of Corruption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Health," (2007), pp. 4~6.

수준이라는 3가지 수준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또한 보건부문에서의 부패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단속원과 의료전문인에 대한 뇌물, 의약품 관련 재판에 관한 정보의 조작, 의약품과 공급품의 전용, 조달과정에서의 부패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의료장비와 공급품에 대한 불투명한 조달을 통해 병원에서 현금 빼돌리기, 유령 고용인, 과도한 건설 비용, 부풀려진 병원 가격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야 할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가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부패와 유아사망율 간의 상관성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 IMF가 71개 국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패지표가 높은 국가들은 보다 높은 유아사망율을 기록하고 있다.[198]

북한의 경우에도 가용성, 접근성(차별), 수용성, 보건의 질이라는 4가지 차원에서 부패가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의약품공급의 관리 수준, 보건종사자와 환자와의 관계 수준이라는 2가지 차원의 부패행위에 중점을 두고 부패가 북한주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의료인과 환자관계 수준의 부패

(1) '생계'와 의료인의 부패

북한당국은 형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상치료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의 절대적 부족과 경제난에 따른 의사

198- Julio Bacio-Terracino, "Corruptio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pp. 23~27.

등 의료인의 생계난으로 인해 사실상 무상치료제가 기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관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요인은 의사 등 의료인의 생계난이다. 즉, 경제난으로 인해 의사도 배급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부패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병원에 갈 때 현금(현물)을 가져가는 것은 '풍토'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사와 환자관계수준에서 뇌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199] 병원에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데 뇌물을 주어야 보다 성의 있게 진료하고 치료도 잘해준다고 한다.[200]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환자가 뇌물을 주지 못하는 경우 불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을 차별적으로 침해당하게 된다.

> "사회주의 사회에서 의사도 정부가 생활을 위해 배급을 주었어요. 환자들한테서 따로 개별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다 뇌물이고, 뇌물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그걸 많이 제재하고 있지요. 지금 북한 상태가 정부에서부터 식량이나 월급을 주는 게 마비됐잖아요. 그 정책이 마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나 간호원들은 환자한테 매달려 사는 건 당연한 일이 됐고, 환자들도 일단 입원하게 되면 뇌물을 주죠."(사례 8)

특히 수술을 필요로 하는 중환자의 경우 뇌물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심각하게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수술하는 경우 의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식사 대접 등은 하층 주민의 경우 수술비용과 함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하면 수술을 받게 되면 환자 측에서는 마취과 의사, 수술 집도 의사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199- NKHR2012000050.
200- NKHR2012000138.

우선 식사 대접을 하게 된다.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오기도 하지만 잘 사는 환자의 경우 식당에서 식사대접을 한다. 그리고 식사 이외에 틈틈이 담배를 주게 된다.(사례 8) 극단적인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뇌물행위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 "도병원에 수술을 받기 위해 가게 되면 우선 최하가 담배 한 보루를 주어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작게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돈으로 갚아야죠.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제2경제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도 병원 갈 열차차비도 없고 거기 갔어도 줄 돈이 없는 사람은 수술을 받지 못해요. 어차피 거기다가 고일자기 자본이 안 되니까 가기 자체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죠."(사례 1)

이상에서 보듯이 무상치료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실행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의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일반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즉, 의사와 환자관계 수준에서 뇌물은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특히 뇌물을 주는 특정 환자에게 특별대우를 함으로써 의료의 질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뇌물수수 행위는 무상치료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접근차원에서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건강권을 저해하게 된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관계 수준에서 사적이익과 함께 병원운영이라는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패행위도 파악되고 있다. 뇌물은 의사 개인적 이익이 주된 동기이지만 병원 운영 상 필요라는 조직적 이익이 결합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하면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항생제를 맞고 실밥도 풀어야 하고 치료를 잘 받

아야 한다. 그런데 의사선생들도 병원과 상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므로 환자들에게 호소하게 된다.

> "우리 과에서 이런 걸 하라는 데 좀 도와주시오라고 부탁하면 입원해 있는 환자는 마음이 우러나든 우러나지 않든간에 선생님이 부탁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입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할 때까지 가지가지 부담이 많지요."(사례 8)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허위 진단서 발급도 사적이익과 함께 진료과의 운영이라는 조직적 이익이 결합된 대표적 부패행위이다.

> "과장선생님도 그런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현금이 과에 들어오잖아요. 과장선생님도 과를 운영하셔야 하잖아요. 청소도구 하나를 사도 그렇고 과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일정 기간 쓰죠. 우리 과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2개월 짜리, 6개월 짜리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석탄 한 두 톤씩 해주시고. 그렇게 좀 심하지요. 개인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그거를 받아서 과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이지요. 그래서 환자가 많은 과가 있잖아요. 환자가 많은 과가 대부분 그 과 자체가 잘 살거든요."(사례 8)

중앙에 있는 병원에서도 사적 이득과 병원운영이라는 조직적 이득이 결합되는 부패행위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평양산원의 경우에도 산원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이외에 추가로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지방에서 돈이 많은 산모들이 평양산원에서 출산하고 싶을 때 뇌물과 연줄이 동원되고 평양산원은 이것을 운영에 활용하게 된다.(사례 8)

의료인과 환자관계 수준에서 치료와 무관하게 '생계'를 매개로 각자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부패행위로서 허위 진단서 발급을 들 수 있다. 의사들은 생계유지와 부의 축적차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부패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은 보통의 주민들이 병원의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의 조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 남성들은 기업소 등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병원의 진단서가 활용되고 있다. 보통 직장에 나가는 것을 피하고 장사를 나가기 위한 방편이나 근로능력 상실 판정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한다.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로 진단서를 떼서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력상실판단'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자가 되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자유롭게 장사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직장을 통한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 하는 것이다.(사례 1) 또한 학생들이 노력동원에서 면제되기 위한 방편으로 진단서가 활용되기도 한다.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허위로 기록해야 하므로 의사들은 뇌물을 요구하게 된다.

>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단서가 이제는 상품화 돼서 막 팔고 사고하지요. 그걸 되게 심하게 단속하고 그래요. 그렇게 요구되는 분들은 조금 많이 뇌물을 고이고 진단서 기일에 따라서 값을 일정하게 2만 원 정도로 해주면 그만한 기일짜리 진단서를 해드리고 그렇죠."(사례 8)

진단서에도 단기, 중기, 장기 등 기한이 정해져 있다. 외래진단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3일씩 두 번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1달 이상의 진단서의 발급이 필요하면 일단 입원을 해야 한다. 입원 후 입원 기록을 조작하여 진단서를 떼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달 짜리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진료과의 과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입원한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없는데, 서류상으로 회진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 과장선생님과 관계가 나쁘면 진단서를 조작할 수 없다. 또한 의사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므로 과장과 병원 기술부원장의 묵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기 진단서의 경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된다. 이와 같이 진단서에 기재되는 발급기간의 장단에 따라 뇌물 액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 "입원수속을 일단 해놔요. 서류상으로 입원수속을 해놓으면, 담당의사는 과장의 수표를 받아야 되고 과장 수표에서 기술부원장 수표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환자는 병원에서 관리하니까. 그 단계를 다 거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사례 8)

(2) 부패와 연줄의 형성

북한에서도 연줄을 형성하여 진료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려는 부패행위가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진료소, 인민병원, 도병원, 중앙병원 등 의료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3차, 4차 의료기관의 경우 연줄에 의해 의료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연줄이 없는 경우 연줄을 형성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상 도병원에 직행할 경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행위를 사례로 들 수 있다.

> "원래 북한도 병원 가는 것이 3단계로 걸쳐져 있어요. 진료소 단계, 자기 구역병원 단계, 그 다음에 대학병원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안면이 있으면 큰 병원에 먼저 가지요.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설비나 이런 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단 큰 병원에 먼저 가지요. 큰 병원에 먼저 와서 면목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면 현금으로 주고 인사하기는 그렇잖아요. 대부분 남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담배를 주죠. 큰 병원에 갈 때는 좋은 담배를 사가지고 가죠. 그래서 나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검진을 받고 싶다 하게 되면

> 그 선생님이 필요한 해당 과에 데리고 다니면서 일체 다 도와주시죠. 도와주시고 병을 다 진료하는 과정에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할 때는 같이 다니면서 하고. 그 선생님들한테는 따로 또 인사차림을 하죠. 처음에는 인사니까 한 갑을 주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 대해주시고 그러면 담배 한 보루나 현금을 주게 되죠."(사례 8)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양호한 3차, 4차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주민의 물리적 접근권이 제약을 받는 것은 뇌물과 인맥이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줄을 대서 뇌물을 주거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의사보다 좀 더 강한 사람한테 부탁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그러한 연줄이 없기 때문에 3, 4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돈 없는 사람들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힘들어요. 병원 절차도 까다롭고, 빽(인맥)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 받기도 힘들어요."[201]

보다 양질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와 환자관계 수준에서 뇌물수수를 매개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연줄을 형성하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가 애를 낳고 싶다 하게 되면 담당 의사선생님하고 짜죠. 후송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양산원에 후송하는 이유를 쓰자면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양수가 많아서 이상증상이 있어서 평양으로 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지요."(사례 8)

---

[201]-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p. 139~140.

그리고 돈을 주고 병원에 연줄을 형성하게 되면 진료 순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접수 순서와 상관 없이 현금이나 현물의 제공 여부에 따라 진료 순서가 결정된다고 한다. 시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현금과 담배를 찔러 주면 늦게 왔어도 바로 진료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음파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돈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순서를 가로채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도 초음파를 받기 위해 진료소, 시병원을 거쳐 도병원까지 갔었는데 돈을 주고 접수와 상관 없이 먼저 초음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 "병원일꾼의 친인척 등 안면이 있으면 접수와 상관없이 먼저 초음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담당의사에게 현금이나 물질을 제공하면 접수와 상관 없이 먼저 초음파를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초음파를 받을 수 있었어요."[202]

나. 의약품관리 수준의 부패

(1) 의약품공급 과정상 횡령

경제난으로 북한의 제약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의 부족 상황은 부패 개입 여지를 증대시키고 있다.

인민위원회 보건국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보건국 일꾼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있다. 보건국이 의약품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202-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p. 143~144.

하기 때문이다. 대북지원 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대북지원 의약품이 들어오면 우선 군부, 각 건설 돌격대 등에 배분하고 일정량을 각 병원들에게 할당한다. 그런데 보건국장은 이해관계가 큰 병원은 많이 할당하고 이해관계가 적은 병원에는 적게 할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건강권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 차별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사례 7)

그리고 의약품공급을 담당하는 일꾼들은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의약품을 횡령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배급권한을 가진 의약품공급소가 그러한 권한을 악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는 하급단위로 하여금 서류를 조작하게 하고 배급을 관장하는 곳에서 의약품을 사취하고 있다. 즉, 의약품공급소에서 관장하는 병원으로 하여금 배급하지 않았으면서도 배급받은 것으로 장부를 올려 보내라고 하거나 배급한 것보다 많은 양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올려 보내라고 요구한다. 병원에서는 적은 분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받기 위해 의약품공급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지 않을 수 없다.

> "페니실린이 100대 왔어요. 공급소면 공급소대로 각 병원에 배정하는게 임무예요. 만약에 병원에 30대씩 배정한다 하면 자기네도 먹어야 하거든요. 그럼 10대를 떼고 20대만 넣거든요.(우리 병원에) 그러면 서류상에 나타나야 하잖아요. 아무개 병원장, 아무개 약국장, 너네 30개 배정되었는데 내가 10개 떼었다. 너네 서류정리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죠. 서류를 조작해주고 10개를 떼이지만 20개라도 받아올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소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해먹는거죠."(사례 1)

이러한 의약품공급 과정의 횡령행위는 하부단위에서 의약품의 가용성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을 더 받기 위해 상납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황해북도 황주군이다 하면 황주에는 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을 받으러 도 의약품관리소에 올라갈 때에는 쌀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가죠. 일단 좋은 약을 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약을 따로 더 주죠." (사례 8)

이렇게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지역에 의약품을 차등적으로 배분하게 되면 지역별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병원 수준에서도 의약품의 횡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약국장은 개인적 사취를 위해 자신이 몰래 직접 의약품을 빼돌리기도 한다. 그리고 의약품을 실제로 투약해야 하는 내과, 외과 등의 의사들과 은밀하게 거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병원에서도 약국장과 진료과들의 의사 사이에 뇌물수수행위가 진행되는 것이다.(사례 1)

> "우리 병원 자체도 의약품관리과가 있잖아요. 의약품관리과에서 내가 그런 약을 타려면 과장님이 자신의 과에서 필요한 뭐를 부탁하면 해줘야 되요. 그래야 그 과장선생님이 저한테 그 약을 주니까. 진료과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의약품관리과에서 약이 없다고 안 주면 끝이예요. 의약품관리과에서는 무언가를 받고 주려고 해요."(사례 8)

이와 같이 병원 내에서 의사들도 의약품관리과와 긴밀한 관계를 가

져야 한다. 투약 기록을 작성하여 약을 신청하더라도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쉽게 약을 주려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고가의 의약품인 경우 병원 내에서 의약품관리과와 그 의약품을 처방하는 진료과가 결탁하여 약을 빼돌리는 부패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 "비싸고 좋은 약들이 한 두 개씩 올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장부에 기입을 안 하는 거죠. 일단 해도, 의약품관리과에서는 어느 선생이 처방을 해서 나간 걸로 돼야 되잖아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한테 투약된 걸로 돼야지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의약품관리과에서도 과장선생이 그런 고가 약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기 친분관계에 있는 선생님하고 짜고 이런 처방전을 하나 넣어라 하면 그 선생님은 그 처방전을 하나 넣지요. 그럼 이 선생님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따로 빼돌리고 나중에 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약에 대해서는 과장선생님이 해주죠."(사례 8)

이러한 부패행위는 병원차원에서 가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가용성 저하는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2) 투약상의 의료인 부패

의약품공급 과정상의 부패행위는 의사와 환자관계 수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의사들도 부족한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장마당에서 팔거나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약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203] 특히 의사들이 개인약국에서 좋은 약과 중요한 약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환자에게 고가로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

203-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 131.

"선생이 처방전을 떼 가지고 환자들이 사오고, 내가 뭐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는 없잖아요. 그걸 선생은 가지고 있잖아요. 팔 목적으로. 장사를 목적으로. 선생들이 다 약장사를 하거든요. 싸게 받아서 환자들한테 팔 때 가격을 붙여서 팔거든요. 가족 중에서 필요한 약들을 자체적으로 사올 때는 가짜약이 많아요.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사면 진짜 약을 살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약이 10만 원 어치다 그러면 환자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 15만 원 주고 10만 원은 약을 사고, 나머지 돈은 선생님 생활에 보태 쓰라고 주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의 가격도 사실은 의사들이 남겨서 파는 거예요."(사례 8)

병원에 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개인약국과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이들 약국으로부터 돈을 받아 살아간다. 사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약국의 경우 의사가 결탁되어 있는데, 의사들이 어디 가서 약을 사오라고 이야기해준다. 일종의 리베이트라고 할 수 있다.

"진단서를 떼주고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내통이 되어있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이런 약이 필요하다 하면 좀 눈치 있는 환자들은 선생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어디서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파는 곳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 무슨 색으로 칠한 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오세요.'라고 알려줘요."(사례 8)

"수술 끝난 다음에 항생제 필요한데 그게 의사는 어느 집에서 사라고 얘기해요. 자기랑 통하는 장사꾼이거든요. 그럼 장사꾼은 자기 약 팔아주니까, 의사한테 꼬박꼬박 돈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들은 먹고 살죠."(사례 4)

병원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무상치료제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접

근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는 의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결정권을 가진 의사에게 뇌물을 주면 무상의 범위, 제공받는 의료서비스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뇌물은 제공 여부와 제공 수준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차별과 경제적 접근이라는 기준에서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3) 의약품공급상의 부패와 조직 운영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약품관리소도 부족한 의약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사취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품관리소도 국가에서 조직 운영을 위한 재정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어 관리소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의약품관리소는 의약품배분 권한을 활용하여 하부단위로부터 운영자금을 상납받고 있다.

> "의약품관리소도 현금이나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게 없고 관리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단 단위들에서, 우리 관리소에서 이번에 뭘 하는데 너희들이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소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매달 가서 약을 타와야 되니까 거기서 뭘 부탁하든지 간에 꼭 해줘야 돼요. 그걸 해주려면, 그 자금을 마련하자면 또 환자들한테 가고, 환자들이 그걸 모아서 주면, 그게 그 자금이, 한마디로 지금 북한이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죠."(사례 8)

이와 같이 의약품 분배권을 가진 기관에서 하부단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사적 이득과 함께 조직 운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하부단위 병원의 경우 의약품을

더 많이 타오기 위해 환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수수하는 연쇄 고리가 형성된다. 하부단위 병원의 경우 '개인 착복 + 운영자금 + 상급기관으로부터 의약품 수령을 위한 뇌물' 등을 위해 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환자 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진료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공급기관에서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의약품을 차등적으로 배정한다는 점에서 병원별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물리적 접근성의 차등을 낳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의약품도 개인 착복과 운영자금을 위해 빼돌려지고 있다.

> "유엔에서 영양제를 많이 주잖아요. 이런 약들이 다 유통되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활용하죠. 그건 100% 다 평양 보건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유엔에서 약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거기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약을 절반 팔아야 되요. 전국에 퍼지는 약이 유엔에서 받은 약들이 퍼지는 거죠. 좋은 약들이. 거기서 20%는 간부들이 달라하면 주고. 30%가 도에 배당되고. 약이 암만 많이 줘도 환자들한테는 단 한 개도 갈 수가 없죠." (사례 8)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의약품이 빼돌려질 수 있는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의 지원 사실에 대해 일반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다 수월하게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부패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패행위가 개입되면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가용성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건강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실행 의무 또한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지역과 병원 수

준에서도 가용성과 접근성의 차별이 초래되고 개인 환자 수준에서는 경제적·물리적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약품관리 수준은 아니지만 도 인민위원회 보건국은 국가적으로 할당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상납하도록 산하 병원들에 배당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 "도인민위원회 중앙에서 뭐가 떨어지잖아요. 중앙에서 야, 이만한 과제를 해라라고 하면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도내의 크고 작은 병원들에게 할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 중앙에서 이런 게 떨어졌다.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좀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덩치가 크면 덩치 큰 만큼 하고 작으면 작은 만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병원 자체는 자금이 없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할당하면 선생님들은 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부탁하고, 환자들은 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 모아주고, 모아주면 의사 몫 떼고 또 요만큼만 내고.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그 돈이 다 밑에 백성들한테서 나오는 돈이죠."(사례 8)

이와 같이 도 인민위원회 운영자금은 환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전체 주민들의 경제적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의사에게 제공하는 뇌물 여부 및 액수에 따라 진료 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직권 남용과 의약품 우선 배정

절대적으로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간부들에 대한 특혜와 이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의약품공급상의 부패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의약품은 당 혹은 다른 기관의 간부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부패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원되는 양질의 의약품인 경우 이러한 부패행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약품이 공급이 되니까 이게 또 골아픈 거예요. 무슨 보위부 사람이 와서 좀 가져가야겠다. 보안부 사람 와서 가져가야겠다. 무슨 지배인이 와서 가져가야겠다. 말 못하고 다 줘야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야말로 지원물자들은 다 간부용이예요. 간부용으로 다 나가죠."(사례 1)

그리고 병원 내에 간부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진료과'가 있는데, 이들 진료과에 우선적으로 부족한 의약품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간부들은 자신의 직위를 활용하여 의약품공급소에서 직접 약을 배정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 "의약품에서 볼 때 유엔에서나 북한에 의약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국가에서 받으면 각 도별로 의약품관리소에 그 양이 떨어져요. 그 약을 원래 환자들한테 써야 되는데 간부들을 위해서 의약품이 나가죠. 진료과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 진료과 대상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일단 간부가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약을 다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의약품이 엄연하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간부들도 다 알고 있으므로 직접 의약품관리소에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약, 무슨 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그 약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간부한테 다 투약이 되는 거죠. 전화 한 통이면 무슨 약, 무슨 약. 입원했다 그러면 의약품관리소 직원들도 그 간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때는 뇌물이죠, 그게."(사례 8)

의약품관리소 일꾼들도 의약품을 빼돌려 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간부들한테 주게 되면 나중에 보다 큰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줄관계 형성을 위해 간부들에게 의약품을 빼돌려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약품관리소와 당기관, 법기관 간부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실제로 일반주민들은 성능이 좋은 약 자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용성이 저하되고 일반주민들의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Ⅵ.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평가

1.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효과

북한 내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부패는 1차적으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투명성이 약화될 경우 규칙, 규범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칙과 규범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화의 수준도 비례하여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기형적으로 작동하면서 부패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적이익뿐만 아니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패행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패를 통하여 사적이익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이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패는 '바람직한 거너번스'가 아닌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고착화시키게 된다. 부패로 인해 규칙과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를 수행할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북한주민의 인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그림 Ⅱ-2>에서 보듯이 현재 북한에도 '부패 → 부절적한 거버넌스 → 인권에 대한 부정적 효과 → 부패 현상 심화'라는 3각의 악순환 관계가 구조화되고 있다.

부패가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고착화시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북한당국의 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부패는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재정부족과 연계되면서 실행의 의무를 저해하고 있다. 물론 북한당국은 부족한 재원을 핵심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실행의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패는 이러한 '실행의 의무' 측면에서 북한당국의 의무를 보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량과 의약품의 경우 엘리트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북한당국이 '실행의 의무'를 정책차원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에게 할당된 식량과 의약품조차 분배과정에서 횡령 등 부패행위가 개입되면 재원이 더욱 부족해져 실행의 의무가 보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패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원칙이 북한주민에게 적용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평등과 비차별 원칙은 수령유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엘리트 중심의 정책 운영이 1차적 위배 요인이다. 이와 같이 체제 유지라는 정책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위배는 엘리트와 일반주민 사이의 평등과 차별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부패는 2가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부패는 '엘리트와 일반주민 사이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2차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낳는 부패행위 유형은 주로 '횡령'과 '직권남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횡령의 예를 들면 식량 배급과정에서 담당 일꾼이 식량을 빼돌리게 되면 엘리트와 일반주민 사이의 식량권의 차별은 심화된다. 또한 직권남용의 예를 들면 힘 있는 간부들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양질의 의약품을 요구하는 부패행위가 개입될 경우 엘리트와 일반주민 사이의 건강권 상의 차별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부패는 '일반주민들 사이의 차별'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부패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면서 일반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면서 일정 정도 빈부의 격차가 발

생하고 있다. 그런데 부패는 빈부격차와 결합되면서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주민들 사이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낳는 부패행위 유형은 '뇌물수수'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뇌물 여부에 따라 개별 북한주민의 권리의 향유 여부가 결정되며, 이것이 다른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뇌물을 공여할 수 있는 능력 여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권리차원에서 차별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행위 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경우 뇌물공여 여부는 사건조사단계, 재판단계, 집행단계에서 차별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뇌물수수행위는 이동의 자유, 직장 배치 및 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낳게 된다. 특히 뇌물수수 행위는 의사와 환자관계 수준에서 일반주민 사이의 건강권의 차별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가 일반주민들 사이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분야에서도 파악되고 있다. 부패행위가 개입되면 처벌의 면제, 형벌의 감면, 형기의 단축, 면회와 보석, 대사(사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에 개입할 수 없는 주민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면 북한당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 남한영상물 시청에 대해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있는바, 적발될 경우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와 연관된 처벌 여부와 수준 조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북한의 국내법률 조항 자체가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패행위에 따른 처벌 면제와 처벌 수위 조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사실상 법률상으로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 자체가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하는 정보접근권 차단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은밀하게 정보에 접근하려는 행위는 권리를 찾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적발되어 처벌에 직면할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행위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정보접근 통제를 완화시키는 일부 긍정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유동이 증대하면서 북한당국의 단속을 피한 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의 위험과 더불어 뇌물 공여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확산된다면 이 경우 부패는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에 기여하는 원근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패는 가용성, 접근성, 질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북한주민들의 사회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에서는 사회권을 형성하는 주요 권리들의 구성 요소로서 가용성, 접근성, 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권 남용, 특히 횡령행위는 일반주민들의 사회권 신장에 배정되어야 할 재원의 가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량과 의약품 분배과정에서 횡령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북한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재원은 감소하게 된다. 횡령 등 북한 내 부패행위는 교육권, 특히 식량권과 건강권 분야에서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의 식량

권, 건강권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북한당국의 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횡령 등 부패행위로 인한 가용성 저하는 교육권, 식량권, 건강권의 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접근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전반적인 사회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가용성과 경제적 접근성의 저하는 전반적으로 일반주민의 사회권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취약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의 사회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취약집단의 사회권 질이 보다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패와 인권침해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직접적 침해, 간접적 침해, 원격적 침해라는 부패와 인권침해의 3가지 인과관계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하나의 부패행위가 연쇄적으로 다른 인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대 내 횡령이라는 부패행위는 군인들의 식량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인 동시에 이렇게 식량권을 침해당한 군인들이 민간인들의 식량을 절도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이 침해되는 간접적 요인으로써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는 우선적으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부패의 동기, 통제기제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 억압이라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부패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부패가 인권을 개선하는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통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일

부 권리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민들은 사회 단속이 강화되어 중간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탈북을 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여행증 제도가 여전히 공식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물론 비차별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동의 자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통제를 완화시키는 간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동 통제 완화는 비공식 유통경제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식량권에도 일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가 비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과 같이 통제 사회에서는 부패가 북한주민의 권리에 간접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러한 부패행위에 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취약집단의 경우 이러한 부패행위는 차별을 낳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행증이나 주택매매과정에서 부패행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를 완화하는 긍정적 요소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뇌물수수'라는 부패행위를 통해 사적이익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제도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기업소와 기관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간부들은 뇌물을 통해 기관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개입하고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뇌물수수라는 부패행위는

그 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식량권의 가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는 일부 구성원들의 식량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구금시설에서 뇌물과 횡령이라는 부패행위는 복합적 효과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결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부업지를 배정하고 있다. 이 경우 노력에 동원되는 것은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유린 결과를 낳지만 수감자들의 식량권을 충당하는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결소 지도원이 식량을 사취하는 현상으로 인해 수감자들의 전반적인 식량 가용성은 저하된다. 그런데 노동단련대의 경우 노력동원이 부정적 효과만을 초래하는 형태도 파악되고 있다. 즉, 사적인 건설과 노력에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을 동원하고 노동단련대 지도원이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경우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유린의 결과만 초래할 뿐 수감자들의 다른 분야 권리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동의 자유와 처벌의 면제는 자유권에 대한 통제를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서 볼 때 부패는 분명히 일반 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 복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불균형적 복합형태'라는 것은 부패가 부정적·긍정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상황을 의미한다.

부패행위가 일정 정도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

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적 속성에 따라 긍정적 영향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체제 구축과정에서 사회와 주민에 대한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통제에 따른 영향을 무력화시키거나 완화시키려는 비용(뇌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당국도 수시로 검열 형태로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중앙의 검열이나 그루빠, 상무와 같은 집단 단속 조직의 경우 단속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고 그에 따른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의 검열에 따른 도 단위, 시군 단위 조직들의 상납은 연쇄적으로 북한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부패가 북한사회의 '자발적인 자유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204] 이와 같이 부패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사회권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뇌물에 대한 인식과 인권인식과의 상관성 평가

부패는 시장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을 지탱하는 핵심 기조인 집단주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관료와 주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패행위가 불법적인 사적 행위로 나타나는 만큼 사회주의의 본질인 집단주의를 저해하는 작용을 하며 이것은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이 잠식해 들어가고

204- 안드레이 란코프, "제도화된 북 부정부패: 그 기막힌 '두개의 얼굴,"『데일리NK』, 2008년 1월 9일.

있음을 의미한다.[205]

부패행위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연관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전 북한사회는 뇌물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뇌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부패에 대해 부정적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뇌물을 당연(응당)한 것으로 인식해요. 뇌물을 줘야 해결되기 때문이예요. 이를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뇌물이 나쁘다고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병원에서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데 뇌물을 주어야 병을 잘 보아주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206]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뇌물을 공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실상황과 연결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돈을 주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하기 위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하부단위 통제엘리트의 경우에도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과 부의 축적을 위해 부패행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통제와 처벌을 면하거나 신속한 일처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205- 이서행,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의 한계," pp. 149~150.
206- NKHR2012000138.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뇌물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기보다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비록 주민과 관료들 간의 비공식적 관계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제공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뇌물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207]

결과적으로 일반주민의 편의생활과 관련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 즉 주민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은 이를 응당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관료는 권위행사에 따른 당연한 대가로 간주한다.[208] 이와 같이 뇌물수수 행위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사적이익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 조사과정에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뇌물에 대해 일상적인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09] 이는 뇌물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업과 같은 행위로 북한주민에게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뇌물에 대한 인식과 인권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인권인식을 자각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원칙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뇌물을 주고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할 경우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을 자각하기는 어렵게 된다.

> "북한주민들은 뇌물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들만 불편해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210]

207- 김성철, 『북한관료부패 연구』, p. 46.
208- NKHR2012000116.
209- NKHR2012000010.

이와 같이 뇌물을 통해 자기만 편하게 생활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심화되어도 인권인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부패로 인해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저해당하고 있다. 또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가 자행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권력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싹틀 여지는 낮아지게 된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자각인식이 싹틀 여지가 봉쇄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 집행과정의 부당성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법치를 확립해나가는 데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패행위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패행위를 통한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패에 따른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주민의 권리 인식이 맹아단계라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주민의 인권인식 조사를 통해 보면 인권인식은 맹아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11] 따라서 '부패행위 확산 →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 → 인권인식의 형성에 대한 긍정적 기여'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10- NKHR2012000128.

211-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이금순 외,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0) 참조.

Ⅶ. 결론

현재 북한 내에는 부패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직·간접적, 원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는 본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이동의 자유와 처벌의 면제는 자유권에 대한 통제를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서 볼 때 부패는 분명히 일반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가용성, 접근성, 질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부패는 북한주민의 사회권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우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 복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부패행위가 인권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데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패행위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법치를 증진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하여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인권정책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기형적 계획경제와 통제기제 작동 속에서 자체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패에 대해 부정적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뇌물에 대한 인식과 인권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인권인식을 자각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뇌물을 주고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할 경우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을 자각하기는 어렵게 된다. 부패행위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패행위를 통한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

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패는 거버넌스, 법치, 인권 인식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인권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부패가 개선활동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패와 인권을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해나가야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분야에서 뇌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부패 현상이 거버넌스, 법치, 인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 내 부패가 북한주민의 구체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 상관관계, 간접적 상관관계, 원격적 상관관계라는 3가지 인과관계를 적용하여 파악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북인권정책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불균형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복합적 효과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부패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패에 따른 개인주의적 성향이 인권인식의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패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인식이 싹트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을 함양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부패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패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 부패로 인해 형성된 이기적 사고와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권인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부패가 개혁·개방과 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 부패는 열악한 거버넌스 수준을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혁·개방 유도를 넘어 부패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경제 교류협력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토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개발협력 추진과정에서 참여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대북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참여, 비차별, 책무성 등의 규범이 대북정책에 반영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부패가 접근성, 책임성, 가용성, 적응성 등 기준에서 사회권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북한 취약계층들의 교육권 및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각종 관행과 제도를 시정해나가도록 촉구해나가야 한다. 인권과 부패를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하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나가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북한당국은 법률 및 제도적 차원에서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들에 제시된 기준을 감안하여 사회주의헌법상에 명시된 기본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저해하는 제도들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행의 자유를 규제하는 여행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출입국 관련 허가제도도 확대되어야 하며 절차도 간소화되어야 한다. 외부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처벌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원칙들을 감안하여 법률에 명시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 및 영상매체 단속을 위해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되는 불시검열 등도 심각한 권리침해이다. 식량난 이후 만연된 부패행위가 뇌물을 주는 측이나 혹은 뇌물을 받는 측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의적인 개인권 침해의 제도 보완과 함께, 뇌물의 공여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성철.『북한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수암 외.『북한인권백서 20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_____.『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김영윤.『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김영종.『부패학-원인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박순성·홍민 엮음.『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박중훈 외.『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9.

박형중.『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_____.『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해남, 2002.

_____.『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박형중 외.『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11.

백완기.『행정학』. 서울: 박영사, 1996.

사회과학출판사 편.『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이교덕 외.『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이금순 외.『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전수일.『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9.

조정아 외.『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한국국제협력단.『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 2008.

Banfield, Edwar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Boersma, Martine and Hans Nelen (eds.). *Corruption & Human Righ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ntwerp; Portland, OR: Intersentia, 2010.

Bourdieu, Pierre.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Friedrich, Carl J. *The Pathology of Politics: Violence, Betrayed, Corruption, Secrecy and Propaganda*. New York: Harper & Row, 1972.

Gambetta, Diego. *Sicilian Mafia: The Business of Private Prote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Integrating Human Rights in Anti-Corruption Agenda: Challenges,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2010.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2009.

Lovell, Stephen, Alena V. Ledeneva and Andrei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Negotiating Reciprocity from the Middle Age to the 1990s.*

Toye, John. *Dilemmas of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7.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1.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ited Nations, 2004.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Governance, Corruption, and Conflict*. A Study Guide Series on Peace and Conflict, 2010.

World Bank.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A Contribution to the Policy Debat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0.

2. 논문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수은북한경제』. 봄호(한국수출입은행), 2008.

김영종. "북한의 정치부패와 인권."『북한연구』. 통권 20호(대륙연구소), 1995.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통일연구원), 2008.

_____. "북한의 관료체제 '변형'과 '일상의 정치'."『현대북한연구』. 제10권 제2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07.

박완신. "북한 관료의 역기능적 행태 분석: 부패요인을 중심으로."『한국부패학회보』. 제8권 1호(한국부패학회), 2003.

박찬웅. "시장과 배태: 경제적 거래의 사회적 배태성."『한국사회학』. 제44집 5호(한국사회학회), 2010.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통일연구원), 2009.

_____.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 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북한연구학회), 2009.

_____.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통일연구원), 2011.

박형중 외.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오름, 2003.

사공영호.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한국경제연구원), 2010.12.

서재진. “북한의 체제위기와 지배엘리트의 행위양식 변화.”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양문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통일연구원), 2006.

_____.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이서행.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의 한계.” 『한국부패학회보』. 제10권 1호(한국부패학회), 2005.

이정철. “북한 구획 경제의 한계와 가격 제도 개혁.” 『통일경제』. 2010년 겨울호(현대경제연구원), 2010.

차문석.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인민의 생활.”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토론회, 2007.

채원호 외.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한국행정학회), 2006.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북한사회의 불평등체계의 변화와 주민의 사회적 정체성의 재형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KBS 남북교류협력팀, 2005.

_____. “북한의 시장 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한반도포커스』. 7·8월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_____.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신가산제적 사인독재 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1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11.

현웅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주요기능.”『정치법률연구』. 제4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홍 민. “범죄의 사회적 구성과 주민 생계윤리.” 조정아 외.『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_____. “북한 시장 일상생활연구-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박순성·홍민 편.『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_____.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한국개발연구원), 2012.

_____.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현대북한연구』. 제9권 제3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_____.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통일연구원), 2006.

Bacio-Terracino, Julio. “Corruptio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January, 2008.

Colclough, Christopher. “Structuralism verus Neo-Liberalism: An Introdution.” *States or Market? Neo-Liberalism and the Development Policy Debate*. Oxford: Clarendon Press, 1991.

Heidenheimer, Arnold J. “Terms, Concepts, and Definitions: An Introduction,” Arnold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New Brunswick, NJ: Transactions Books, 1993.

Klaveren, Jacob van. “The Concept of Corruption,” in Arnold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New Brunswick, NJ: Transactions Books, 1993.

Mauro, Paolo. “Why Worry About Corruption?.” *Economics Issues* 6. IMF, 1997.

Nye, Joseph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XI, 2. June 1967.

Toebes, Brigit. “The Impact of Acts of Corruption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Health.” 2007.

“일군들은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군관강연자료(요강)』.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93(2004)년 2월 24일 조선인민군 제131 군부대지휘부와 직속공병중대, 땅크종합훈련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혁명적 군풍과 명령지휘체계를 세워 군사규률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학습제강(군관, 장령용) 3』.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3. 기타자료

『데일리NK』. 2008년 1월 9일, 2011년 4월 25일.

『연합뉴스』. 2012년 6월 25일.

『조선일보』. 2012년 8월 20일.

『NK지식인연대』. 2009년 11월 23일.

유엔문서. E/CN.4/2001/53. 7 February 2001.

_____. E/C.12/1999/10.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_____. E/C.12/2000/4.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실태조사 대상자 심층인터뷰, 2011~2012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5월 29일, 2012년 6월 29일.

홍 민. 『화폐개혁 전후 북한의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 동학: 후계 정치지형과 시장 권력과의 상호관계 및 변화구도』.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6.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8.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1.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Wikipedia, Political Corruption,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al_corruption>. 검색일: 2012.7.12.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Ⅰ)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Ⅰ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Ⅱ)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Ⅱ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논총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13,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 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그리고 한국의 정책적 고려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2-02

www.kinu.or.kr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 이금순 · 김국신 · 홍 민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93340
9 788984 796669
ISBN 978-89-8479-666-9